

연구보고 95-10

技術라운드(TR)의 展開와 法的 對應

1995. 12

共同研究者: 文俊朝(首席研究員)
崔星根(先任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發 刊 辭

우리 나라는 국가경제규모의 증대와 더불어 대외적으로 거센 시장 개방압력을 받아 왔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그러한 현상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기업들은 무엇보다도 교역조건과 시장개방시기 등을 조정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이 미칠 영향과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 및 “아태경제협력(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에 관한 입법동향을 주시하여 왔다.

한편 최근 통상문제로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서비스시장의 개방, 원산지표시, 노동 및 환경의 통일된 규제, 지적재산권의 강화, 통상 분쟁의 해결절차 등 많은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술정책은 POST-UR의 주요 5분야 중의 하나로서, 향후 국제규범의 확산과정에서 논의될 예상의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기술라운드(TR : Technology Round)라는 용어가 국제통상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라운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야로서 최근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고, 또한 향후 UR이후의 새로운 라운드의 하나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술규범의 제정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의미하는 기술라운드는 공식용어는 아니며, 현재까지 TR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본격적인 라운드가 진행되고 있거나 그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면에서 기술라운드는 과학기술활동에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선진국들의

움직임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기술라운드의 향후 전망과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한다는 전제하에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의 통상교섭의 접근방법, 국제기술이전과 법적 제문제,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의 하나로서의 TRIPs협정, 환경기술과 국제통상, 지역적 통상 및 양국간 통상, 기술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우리 나라가 취하여야 할 국제통상관련 기술입법정책의 방향까지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가 아직 그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아니한 기술라운드에 대하여 조망을 하여야 한다는 한계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국제통상을 담당하는 관계자와 그 분야의 연구자들 그리고 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의 작성에 관여한 연구원의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1995.12.

韓國法制研究院
院長 白南辰

目 次

第1章 序 論	15
I. 技術라운드(TR)의 概念定義	15
II. 技術라운드의 趣旨와 性格	16
III. 技術라운드의 主要 內容과 展望	17
1. UR과 技術라운드	17
1) 技術開發에 대한 政府補助金(Subsidy) 問題	18
2) 知的財産權(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Rs) 問題	19
2. OECD의 新國際技術規範과 技術라운드	21
1) 概 要	21
2) 政府의 R & D 支援政策(support policy) 問題	22
3) R & D 活動과 技術서비스市場의 開放 問題	22
4) R & D 活動의 國際化·世界化 問題	23
5) 科學技術人力の 自由移動(mobility) 問題	23
6) 技術活動의 國際的 安全性 및 保安性 問題	24
第2章 通商交渉 및 技術移轉의 動向	27
I. UR安結以後의 通商交渉의 接近方法	27
1. 自由貿易主義, 保護貿易主義 및 地域主義	27
2. 多國間 交渉, 兩國間 交渉 및 一方的 制裁를 수반하는 交渉	28
1) 多國間 交渉(Multilateralism)	29

2) 兩國間 交渉(Bilateralism)	30
3) 一方的 制裁를 수반하는 交渉(Unilateralism)	30
4) 上記 交渉方法에 대한 評價	31
II. 技術 等에 대한 法的 取扱과 國際技術移轉의 動向	32
1. 技術·發明 및 노하우에 대한 法的 保護	32
2. 國際技術移轉의 動向	35
3. 아시아 開發途上國의 擡頭와 國際技術移轉	37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43
I. 序 說	43
II. OECD의 國際技術規範	45
1. 科學技術政策의 調和	46
2. 政府의 技術開發支援政策	47
3. 研究開發事業에 대한 接近	47
4. 科學技術人力の 自由移動 保障	48
5. 科學技術의 世界化에 따른 對備	48
III. R & D 補助金 分野	49
1. 概 要	49
2. 補助金 및 相計措置에 관한 UR協定の 內容	51
1) UR協定에서의 補助金(Subsidy)의 定義	51
2) 特定性(specificity)	53
3) 禁止된 補助金(Prohibited Subsidies)	54
4) 提訴可能한 補助金(Actionable Subsidies)	55
5) 提訴不可 補助金(Non-Actionable Subsidies)	56
3. UR協定の 補助金과 그 適用	57

1) UR協定の 補助金	57
2) 補助金 關聯規定의 解釋	58
4. 先進國의 R & D 補助金	61
1) 美國	61
2) 日本	62
3) 프랑스	63
4) 獨逸	64
5. 우리 나라의 R & D 補助金	64
6. 向後 對策	68
IV. 知的財産權 分野	69
1. 概要	69
1) 意義	69
2) WIPO管轄 國際規範과의 關係	70
3) UR協商過程에서의 知的財産權 問題	72
4) TRIPs協定の 特徵	78
2. TRIPs協定の 基本原則	80
3. 著作權 및 著作隣接權	81
1) 關聯規定과 意義	81
2) 著作權의 意義	88
3) 著作權 保護에 관한 一般原則	89
4) 現行 國內法	90
5) 著作權 및 著作隣接權의 內容	93
6) 通商紛爭의 새로운 要因으로서의 著作隣接權	107
4. 우리 나라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108
1) 우리 나라에 미치는 影響	108
2) 우리의 對應方案	109
V. 技術障壁問題	110

1. 概要	110
2. TBT協定文의 主要內容	112
1) 技術規定 및 標準	112
2) 技術規定 및 標準의 採擇	113
3) 技術規定 및 標準의 適用	113
4) 認證制度	114
5) 情報 및 技術支援	114
6) 開發途上國 優待條項	114
7) 紛爭解決	115
3. UR協商 妥結以後 달라진 것	115
1) PPMs의 認定	115
2) 商品에 대한 公正慣行規約의 新設	115
3) 資料提供時의 使用言語	116
4) 體制의 改編 및 強化	116
4. TBT協定에 의한 義務와 權利	116
1) 義務事項(WTO協定에 가입한 國家間에만 適用)	116
2) 權利事項	117
5. 우리나라의 TBT協定 運營現況 및 向後 運營計劃	118
1) 우리나라의 TBT協定 運營現況	118
2) 工業振興廳의 TBT關聯 活動	119
3) 向後 運營計劃	121
6. 技術標準으로의 國際的 흐름	122
VI. 知的財産權에 관한 通商紛爭의 解決	125
1. WIPO體制下에서의 紛爭解決	125
2. UR協定上의 紛爭解決	127
VII. 向後 對策	128

第4章 環境技術과 國際通商	133
I. Rio環境會議와 環境技術開發 및 利用의 活性化	133
II. 環境技術의 概念	135
1. Rio環境會議에서의 概念	135
2. 우리 나라 法令上の 概念	135
III. 知的財産權法에 의한 環境技術의 保護	136
1. 特許法 等에 의한 環境技術關聯 發明의 促進	136
2. 環境技術關聯 發明에 관한 優先審査	137
IV. 環境技術利用의 活性化	138
1. 環境技術利用의 活性化를 위한 前提條件	138
2. 環境技術情報에의 接近 擴大	139
1) 環境技術情報의 重要性	139
2) 環境技術情報網의 必要性	140
3) 環境技術利用 强制의 必要性	142
V. 强制實施許與制度의 援用	144
1. 우리 나라의 强制實施許與制度	144
2. 英美의 强制實施許與制度	145
3. 强制實施許與制度에 대한 代案	146
VI. 向後 對策	148
 第5章 地域的 通商協定과 兩國間	
通商에서의 知的財産權	153
I.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에서의 知的財産權	153
1. 北美自由貿易協定の 法的 意味	153

2. 北美自由貿易協定の 內容上の 特徵	154
3. NAFTA協定の 知的財産權 關聯規定	155
1) 意義	155
2) 國際條約(제1701조)	155
3) 內國民待遇(제1703조)	156
4) 著作權 保護	156
5) 商標, 意匠	156
6) 特許(제1709조)	157
7) 集積回路의 디자인(제1710조)	157
8) 營業秘密(제1711조)	157
9) 權利行使(제1714조)	158
4. NAFTA와 관련된 주요 爭點과 對應方案	158
1) 著作權	158
2) 商標와 特許	160
3) 原產地表示	161
4) 營業秘密保護	161
5. 對應方案	161
II. 亞太經濟協力(APEC)에서의 知的財産權	163
1. 問題의 提起	163
2. 豫想되는 協商課題	164
1) 意義	164
2) 知的財産權의 存續期間	165
3) 紛爭의 豫防과 解決	165
4) 遡及保護	165
III. 兩國間 通商問題로서의 知的財産權	166
1. 美國 通商法에서의 知的財産權	166

2. 美國 關稅法에서의 知的財産權	167
3. 美國 知的財産權의 域外的 適用	169
1) 域外的 效力에 관한 特許法 規定	169
2) 域外的 適用에 관한 判例	171
第6章 結 論	179
附錄: 主要 國家의 技術關聯法	185
I. 美 國	185
科學技術政策組織優先法	185
II. 英 國	203
1965年 科學技術法(1965 The Science and Technology Act)	203
III. 프랑스	209
技術研究開發基本方向및計劃에관한法律	209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	
IV. 日 本	219
1. 高度技術工業集積地域開發促進法	219
2. 新技術開發事業團法	224
3. 基盤技術研究圓滑化法	234
4. 中小企業技術開發促進臨時措置法	244

第1章

序 論

第1章 序 論

I. 技術라운드(TR)의 概念定義

기술라운드는 POST-UR의 주요 5분야 중의 하나로서, 향후 국제규범의 확산과정에서 논의될 예상의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술라운드 즉, TR이라는 용어는 국제기술규범의 제정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의미하는 Technology Round의 약자로서 아직 공식화된 용어는 아니며, 현시점에 TR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본격적인 라운드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TR은 과학기술활동에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선진국들의 움직임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TR의 어원을 보면, UR의 뒤를 잇는 뉴 라운드 즉, GATT체제로부터는 제9차, WTO체제로는 제1차가 될 다자간협상이 개시된다는 전제하에 그 라운드의 공식명칭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단순히 협상의제를 따서 기술라운드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는 환경라운드(Green Round : GR), 노동라운드(Blue Round : BR) 또는 경쟁라운드(Competition Round : CR) 등도 마찬가지로 의미와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보다 廣義의 TR은 국제기술환경의 변화과정에서 기술선진국들이 전개할 기술보호주의, 기술개발규제, 기술시장침투 등의 다양한 기술공세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주체도 정부차원의 다자간협상 뿐만 아니라 양국간(bilateral)의 협상 및 기업들간의 기술분쟁까지를 포함한다.

II. 技術라운드의 趣旨와 性格

기술라운드의 취지는 매우 간단하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를 국제시장에 팔기 위해서는, 첫째, 선진국들이 요구하는 기준이나 방식에 의해 만들어야 하고, 둘째, 정부의 재정적 또는 기술적 도움 없이 만들어야 하고, 셋째, 만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 하겠다면 그 기술은 완전히 개방하여야 하고, 넷째, 연구개발도 상품시장과 같이 외국업체에 문호를 열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다섯째, 독자적인 기술이 없으면 로얄티를 내고 사와야지 외국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러한 기술라운드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UR이 기본적으로 포지티브-섬(positive-sum) 게임을 추구하는데 반해 기술라운드는 기술력에서 앞선 선진국들이 득을 취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후발국들에게 그 만큼 손해 돌아가는 엄격한 제로섬 경기규칙인 것이다. UR의 경우에도, 다른 부문은 모두 자유화와 개방화의 원칙이 적용되었지만 유독 기술분야만은 지적재산권 또는 표준화의 구실하에 관리화 또는 독점화의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둘째, 무역과의 연계이다. 이는 기술문제를 무역문제와 연계시켜 풀다는 논리로서 기술은 무형의 자산으로 규제가 용이하지 않고 국내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무역과 연계시켜야만 외부로 노출이 되고 또한 국내문제를 국제문제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의 추진방식도 항상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를 정점으로 하여 논의와 의사결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셋째, 국가간 관행의 수렴이다. OECD 신규범의 논의에는 관행(practices)과 수렴(convergence)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Ⅲ. 技術라운드의 趣旨와 性格

데, 이는 특정 의제와 관련하여 국가들의 원칙이나 제도 즉, 관행이 다르므로 이를 보편타당한 기준에 의해 표준화하여 수립하자는 것이다.

넷째, 기술활동의 확대해석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은 최종제품에 국한되는 개념이었으나 기술라운드의 논의는 기술의 범위를 완제품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process)과 생산방식(production methods)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기술시장의 범위도 기존의 제품기술시장 뿐만 아니라 기술서비스시장도 포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Ⅲ. 技術라운드의 主要 內容과 展望

TR의 가장 대표적인 움직임은 UR의 다자간 협상 가운데 과학기술활동과 관련된 부분과 OECD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신국제규범(New Rules of the Game) 가운데 과학기술분야라고 할 수 있다. OECD의 논의가 궁극적으로 GATT(앞으로는 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현실화되어온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들 두 가지의 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1. UR과 技術라운드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의미의 TR은 UR규정의 기술분야가 구체적으로 파급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UR의 기술분야는 기존의 GATT규범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라는 점에서 UR규정이 그 자체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향후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어 갈 것이기 때문

第1章 序論

이다.

둘째, 현재의 UR규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하게 정의되어 있어 앞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애매한 UR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UR규정에서 기술문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야는 크게 정부보조금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그리고 기술장벽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1) 技術開發에 대한 政府補助金(Subsidy) 問題

본질적으로 정부보조금은 각국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보조금이 특정산업이나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집중될 경우 공정한 경쟁질서가 왜곡될 수 있으며 더구나 그 사용경로나 방식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경우 국제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UR협정에서는 기술분야의 정부보조금을 이른바 '특정성(specificity)'의 기준에 따라 (1) 허용(non-actionable) 보조금, (2) 상계조치가가능(actionable) 보조금 그리고 (3) 금지(prohibited) 보조금으로 나누고 있다.

보조금분야에 있어 논의의 핵심은, 민간기업의 기술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일단 특정성이 있다면 이러한 기술지원이 곧 무역상의 특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는 지원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활동을 크게 기초연구, 산업연구 및 개발활동으로 나누고,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전면허용, 산업연구(industrial research)의 경우는 총 연구비의 75%까지, 개발활동(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ies)의 경우는 5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Ⅲ. 技術라운드의 趣旨와 性格

여기에서 산업연구라 함은 기초연구의 응용과정을 가리키고, 경쟁 전 개발활동은 대량생산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공정계획, 청사진 제작, 시제품 제작 등을 의미한다. 즉, 전자는 아직 '연구(Research)' 단계이고 후자는 이미 '개발(Development)' 단계로 넘어간 경우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향후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으며, 더욱이 엄격한 방향으로의 규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첫째, 규정의 포괄성과 애매성으로 실제 분쟁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결이 쉽지 않으므로 보다 명시적이고 규제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고, 둘째, 위의 허용기준이 국가경쟁력의 회복을 위하여 각종 산업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측의 필요에 의하여 상당히 완화된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나 미국의 입장이 바뀔 경우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재조정될 여지가 있다.

2) 知的財産權(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Rs) 問題

지적재산권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배경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은 특허나 상표권과 같은 사업재산이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최근 전자 및 정보기술의 발달로 소프트웨어분야가 부각되고 생명공학이나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이 등장하면서 그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둘째, 많은 기업들이 기술적인 노하우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유지함으로써 비공식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문제가 부각되었다.

셋째, 기술선진국들이 기술후진국들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무임 승차론(free-riding)'이 대두되었다.

第1章 序論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UR의 전문기관인 WIPO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국제협약들이 체결되어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대부분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시키는 이른바 속지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수단이 결여되어 있고 신기술분야에 대한 보호수준과 범위가 크게 미흡하여 이 문제가 UR의 정식의제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특히 미국은 무역적자의 확대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즉,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주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기술적 사항이라는 사고방식부터 자국의 무역수지 및 국제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무역상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하였던 것이다. UR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이 분야가 농산물이나 서비스와 함께 미국이 절대적인 국제경쟁력상의 우위를 점한 분야라고 판단하여 매우 적극적 자세로 협상을 주도하였다.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협상으로 불린 UR의 지적재산권 협상은 선진국그룹과 개도국그룹으로 양분되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임으로써 난항을 거듭하다가 결국 타결시한에 쫓겨 기존의 국제협약을 토대로 보호수준을 강화시키는 이른바 '국제협약 플러스방식'으로 절충하는 선에서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분야는 기술선진국이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데다 속성상 법적·제도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규범의 적용이 가장 용이한 점을 감안할 때 POST-UR의 핵심의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지적재산권은 상품 및 서비스와 더불어 WTO의 주요 3분야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2. OECD의 新國際技術規範과 技術라운드

1) 概要

장기적이고 본격적인 의미의 기술라운드는 OECD의 논의 즉, 신국제규범(New Rules of the Game)에 바탕을 두고 있다. OECD의 논의는 이미 UR에서 타결된 부분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주제들을 담고 있어 향후 기술라운드가 현실화된다면,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은 UR에서 미흡했던 점과 UR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주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신국제규범은 국제경제의 제문제들을 망라한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OECD는 기술경제프로그램(TEP)이라는 방대한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991년 각료회의에서는 다음의 7개 부문을 새로운 규범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즉, (1) 기초과학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 문제, (2) 기술확산정책 문제, (3) 인력개발 문제, (4) 민간부문의 R & D 지원과 과학기술에 대한 국제적 접근성 문제, (5)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국제적 이해에 관한 문제, (6)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 문제 및 (7)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문제가 그것이다.

OECD규범은 그 자체로서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OECD에서의 논의도 특정주체의 규범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데 있으므로, 신국제규범이 OECD내에서 언제 어떠한 형태로 규범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물음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오히려 OECD의 논의에 대하여 WTO나 다른 국제기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

第1章 序論

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OECD의 논의 가운데 기술라운드와 관련하여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부분을 살펴본다.

2) 政府의 R & D 支援政策(support policy) 問題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은 이미 UR협상에서 다루어졌으나 그 기준이 허술하고 범위도 보조금에만 제한되어 있어 OECD에서의 폭넓은 논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산업체, 연구기관 및 대학의 과학기술 R & D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는 그 수준과 범위에 있어 국가간에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R & D의 성과는 공공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사유자산으로 간주하여 민간부분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위주로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명료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국제적인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또한 기업의 지원을 받아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수행하는 R&D활동의 경우, 학문적 개방성과 재정적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지적재산권도 해당기업에 독점적으로 부여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 R & D 活動과 技術서비스市場의 開放 問題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consortia)의 경우, 국가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은 물론 프로젝트 참여에의 국제적 개방을 명시한 규범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연구에서 제외된 그룹이 R & D성과를 공유하거나 구조적 불이익을 효과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R&D시장의 개방과도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연구 개발법'이라는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연구개발도 하나의 국제시장으로 변할 가능성은 크며 그 경우 기술선진국들의 개방압력이 고조될 것이다.

4) R & D 活動의 國際化 · 世界化 問題

국제화·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다국적기업들(MNEs)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해외기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경우, 진출기업들은 그들이 해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해당지역이나 국가의 경제발전과 기술력의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이에 상응하여 각국 정부는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에서 그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연구환경 및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5) 科學技術人力의 自由移動(mobility) 問題

과학기술인력의 교육과 국내외이동은 산업경쟁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국가간의 교육내용과 제도의 차이는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해외 연구활동을 위한 출입국 및 거주조건, 예를 들어, 연구기자재의 관세문제나 배우자의 취업문제 등에 대한 규제는 국제노동시장의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범의 제정은 각국의 제도적, 문화적 관행이나 국민정서와 상충될 소지가 크다.

6) 技術活動의 國際的 安全性 및 保安性 問題

첨단과학의 경우 그 개발과 확산과정에서 국제적인 외부불경제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예컨대, 기술적 또는 재정적 규모로 보아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그 속성상 국제적인 자료의 수집과 공동연구가 요구되는 거대과학의 경우, 연구활동의 주도권 문제라든가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정을 둘러싸고 국가간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우주나 해양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일부 국가가 모든 지배력을 독점한다면 이는 다른 나라들에게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생명과학도 그것이 인간생활과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파괴적 효과라든가 국제무역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특별한 관리와 감시를 필요로 하다. 따라서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보안성이나 안전성의 측면에서 국제적인 규범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第2章

通商交渉 및 技術移轉의 動向

第2章 通商交渉 및 技術移轉의 動向

I. UR妥結以後의 通商交渉의 接近方法

1. 自由貿易主義, 保護貿易主義 및 地域主義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의 각국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96년은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지 2년째가 되는 해로 WTO체제의 정착과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의 무역정책의 주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지역주의의 세 가지이다. 이러한 세 가지 무역정책의 조류가 뒤섞여 서로 세력을 경합하면서 각국의 국익이 얽힌 복잡한 무역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향후 TR에 관한 논의도 이하에서 언급하는 접근방법들에 의하여 진행될 것이다.

UR의 타결에 의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은 일응 자유무역주의의 전진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것에 의하여 반드시 보호무역주의와 지역주의의 세력이 약화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UR의 타결로 자유무역주의가 우세를 나타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후의 각국의 움직임을 보면, 아직 타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분야도 많다.

보호주의의 움직임은 프랑스가 UR타결 직후에 유보안전인 음향·영상의 시장개방문제에서 이미 텔레비전방송시간의 반이상을 EU의 역내 프로그램으로 채운다는 종래의 규정에 더하여 새로이 라디오음악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랑스어 음악의 비율을 4할이상으로 하

第2章 通商交渉 및 技術移轉의 動向

도록 의무화하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아직 그 뿌리가 깊고 금후 환경문제·노동자의 권리 등의 문제가 무역교섭의 무대에서 대두된다면 보호주의의 절호의 구실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지역주의에 대하여는 1994년 1월 1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인구 3억7천만 및 GDP 6조8천억 달러)이 발효함과 동시에 구주경제지역(EEA, 인구 3억7천만 및 GDP 7조5천억 달러)도 발족하고, 더욱이 동아시아에서는 ASEAN 자유무역지역(AFTA)의 공통효과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 CEPT)가 일부 시행되는 등 그 움직임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가 자유무역의 이정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보호주의의 아성이 될 것인가는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다. 세계는 21세기를 맞는 현시점에서 진정한 자유무역체제의 구축여부를 가름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¹⁾

2. 多國間 交渉, 兩國間 交渉 및 一方的 制裁를 수반하는 交渉

UR의 합의사항은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데, UR에서 유보된 분야 즉, ① 음향·영상, 해운서비스(미국과 EU간에 계속 협의), ② 금융서비스(미국이 일본 및 개발도상국과 계속 교섭) 및 ③ 민간항공기·정부조달(전기통신) 및 다국간철강협정 등의 분야에 대하여는 교섭을 계속하게 된다. 더욱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UR에서 일응 타결된 분야에 대해서도 자유화와 시장개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국간에 교섭하는 움직임이 보여진다.

예를 들어, 미국은 UR교섭의 타결후 목재, 동 및 증류주의 관세

1) 新堀 聰, ウルグアイラウンド後の世界の貿易體制と貿易政策, 三嶺書房, 1994.7, 59~60面.

I. UR妥結以後의 通商交渉의 接近方法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EU의 통상 담당위원도 일본에 증류주에 대하여 양해내용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은 1994년 1월 11일 브뤼셀에서 구주위원회의 둘 위원장과 회담하면서 “UR이후에도 주요 각국의 시장접근은 가일층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을 거론하였고 둘 위원장도 동의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한편 WTO발족후의 다국간 무역교섭은 UR의 장기화에 대한 반성을 거울삼아 종래의 라운드교섭과는 달리 각각의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행하여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WTO에 대한 미국과 구주의 생각은 크게 다르다. 즉, 미국은 WTO를 통상법을 강행하고 미국의 수출자를 위하여 시장에 대한 접근의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EU는 WTO를 슈퍼301조로 대표되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경향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관점도 이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의 차이는 1995년 1월에 발족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유효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UR이후의 각국간의 구체적인 무역교섭은 사실상 3가지 접근방법으로 이어질 것이다. 3가지 접근방법이란 다국간 교섭, 2국간 교섭 및 일방적 제제를 수반하는 교섭이다.

1) 多國間 交渉(Multilateralism)

이는 종래 GATT의 교섭방식이며 1995년 1월에 발족한 WTO의 교섭방식이기도 하다. 관계자 전원이 참가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관계자가 다수이므로 환경문제와 같은 금후의 난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접근방법인가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우선 선진국의 그룹인 OECD에서 논의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2) 兩國間 交渉(Bilateralism)

이는 무역의 자유화·시장개방으로 향하여 양국간에 논의하는 것이며, 그 결론이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따라 교섭에 참가하지 아니한 제3국에도 적용되는 한 자유무역주의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다국간 교섭이 있기 때문에 양국간 교섭에는 응하지 아니한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교섭의 결과에 만족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가 일방적인 제재를 행한다면 문제가 있다.

클린턴정권은 1993년 후반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을 약화시켰다. 이는 호소가와 내각에 시간을 주어 경기과열을 식히고 구조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정치개혁법안의 회의통과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함과 동시에 미국 정부 자신이 NAFTA 및 UR에 주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금후에는 일본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UR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금융·보험서비스 분야의 교섭은 1996년 1월까지 계속될 것이지만, 미국은 다시 그 시점까지 일본측으로부터 호혜적인 양보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미국시장에의 접근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3) 一方的 制裁를 수반하는 交渉(Unilateralism)

이는 2국간 교섭의 일종이지만 미국의 슈퍼 301조와 같이 교섭의 결과가 불만족스런 경우에는 상대국의 무역관행이 불공정하다고 일방적으로 인정한 다음 제재조치를 취하는 협박을 수반한 교섭이다. 상대국이 불공정한 관행에 의하여 시장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제재가 보복을 불러 무역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최근 유럽에서도 프랑스가 미국의 슈퍼

I. UR妥結以後의 通商交渉의 接近方法

301조와 같은 성격의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슈퍼 301조는 1990년에 실효하였지만 클린턴대통령은 선거운동중에 그 부활을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형식의 부활은 통상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데 미국정부는 1994년 3월 법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Executive Order)을 더하여 이를 부활시켰다. 이에 대하여는 조만간 재개될 미일경제협약과 같은 2국간 교섭에서의 위력효과를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장래 WTO의 분쟁처리절차가 유효하게 기능하게 된다면 슈퍼 301조의 필요성은 약해질 것이지만, WTO의 분쟁처리에서 미국이 승리한 경우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UR의 합의(분쟁처리절차 주석 제23조제1항)에는 GATT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회원국은 동 주석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간접적인 표현이면서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금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통상대표부는 UR의 성립에 의하여 슈퍼301조의 운용에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하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4) 上記 交渉方法에 대한 評價

위의 세 가지 교섭방법중 (3)은 논외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봉쇄하는가가 금후의 과제이다. 그리고 각국은 (1)을 주류로 하더라도 (2)를 적절히 배합하면서 세계적인 자유무역체제를 보다 완전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UR타결 이후의 세계에서는 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및 지역주의의 3가지의 조류가 다국간 교섭, 양국간 교섭 및 일방적 제재를 수반하는 교섭의 3가지의 교섭방식과 복잡하게 조합하면서 주도권을 겨룰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대의명분으로 말하면, 표면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가

우세하지만, 보호무역주의는 집요하게 산업의 생사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의의 동향과도 맞물려 결과는 반드시 낙관할 수 없다.

II. 技術 等에 대한 法的 取扱과 國際 技術移轉의 動向

1. 技術·發明 및 노하우에 대한 法的 保護

TR에 관한 본격적인 고찰에 앞서 기술 등에 관한 개념정의와 이에 대한 법적 취급 그리고 국제기술이전의 동향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이란 광의의 의미로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 또는 그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로의 기술에는 법기술, 경영기술, 부기술, 광고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나름대로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한편 국제기술이전의 경우 문제되고 있는 기술은 통상 산업상 특히 공업상 이용가능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을 말한다.²⁾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것 또는 그 창작된 사상을 말하며 고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노하우란 발명을 포함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정보를 말한다. 노하우란 본래 '단독으로 또는 결합하여 공업목적에 부합하는 기술을 완성하거나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식과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국제상업회의소 ; ICC)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용어의 보급과 함께 경영상의 정보를 포함하여 그것을 보유함으로써 경쟁자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지식 내지 경

2) 滿田重昭, "國際技術移轉と法", 現代經濟法講座 7, 1993.7, 149~150面.

II. 技術 等에 대한 法的 取扱과 國際技術移轉의 動向

협 기타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여 기술상의 정보로서 특허권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이전 또는 실시허락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기술에 대한 법적 보호의 형식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다. 발명에 대하여는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으로서 공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신규성) 종래의 기술수준을 실질적으로 상회하는(진보성) 경우,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지배권이 부여된다. 그리고 타인이 양해없이 그 발명을 이용한 때는 특허권의 침해가 인정되어 제재를 받게 된다.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타인에게 이전(양도)하거나 특허발명의 이용을 타인에게 허락(실시허락 또는 라이선스)할 수 있다.

노하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위이므로 대가를 받고 이전할 수도 있고 계약에 의하여 그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 다만,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제도가 존재하는 반면 노하우의 보유자에게는 배타적·독점적인 이용권은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밀로 보유하지 않으면 노하우의 경영상의 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노하우의 양도계약이나 실시허락(라이선스)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노하우의 보유자에게는 특허권자와 같은 절대적 독점권은 주어지지 않으나, 비밀로서 보유하고 일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제한적인 법적 보호가 인정된다.

이른바 영업비밀보호의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1991년 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10조 내지 제14조 참조). 그러나 이 규정이 없어도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계약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정하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구제의 방법도 강구될 수 있다. 특허권의 객체로 되어 있든

노하우인 채로 영업비밀로서 유지되고 있든, 기술이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기업이 생산활동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생산활동 주체의 신용을 표창하는 상호, 서비스표 기타 영업표시에 대하여 또는 상표, 포장 기타 상품표시에 대하여 부여한 상호권, 상표권, 부정경쟁금지·예방청구권 등의 법적 보호는 서비스의 제공,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이용하는 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간접적으로 공헌한다. 본래 시장경제는 이른바 독점적 경쟁을 통하여 발전하는 것이며, 각 생산주체는 자기가 생산하여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생산주체의 그것과 차별화하여 신용을 축적하는 것으로서 경쟁하기 때문이다.³⁾ 또한 상품생산을 위한 기술에 있어서는 상품의 형태 그 자체가 기술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경우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 의장권 또는 저작권으로 일정한 보호를 받는다.

전술한 각종 지적재산권 내지는 법적 보호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선진국에서 존재하는 보호이며, 대개의 경우 형사적 처벌을 병행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도 상당수의 입법례를 발견할 수 있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입법은 선진국, 특히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1980년대에 급히 정비된 것으로 어느 정도까지 실효적인가에 대한 확증은 없다.

일국내에서는 경제거래에 관한 법률제도, 통화·금융제도가 동일하고 자본과 노동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으며 기업활동의 계획과 수행이 용이하므로, 이른바 국민경제가 그 영역내에서 순환하여 확대재생산 및 자본축적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경쟁적인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호황기에 확대된 생산능력에 대한 수요가 불황기에는 부

3) Wolfgang Fikentscher, *Wirtschaftsrecht*, BandII, Munchen, 1983, S.193~194. See Pretener, *Industrial Property and Related Trade Policy in Less-Developed Countries*, *Economic Appraisal of Legal Concepts*, 21 IIC 787, 1990.

II. 技術 等에 대한 法的 取扱과 國際技術移轉의 動向

족하게 되므로 국외의 시장을 개척하지 아니할 수 없고, 국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천연자원이나 농산물을 국외로부터 수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국민경제를 통합하는 세계경제가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은 무역외에 국외투자, 국제기술이전, 국제적인 노동력 이동 등에 의하여 매개된다. 영업의 자유 및 경영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에서의 생산단위는 원칙적으로 사기업이며, 이들 사기업은 자기책임하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법형식상의 문제를 별론으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지배하여 생산에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기업이다. 기술이전은 주로 사기업간 또는 사기업내의 기술이전이며, 이것은 국내 기술이전도 국제기술이전도 마찬가지이다.

2. 國際技術移轉의 動向

국제기술이전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그 시간이나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곤란하고 단편적인 통계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기술격차의 시간적 변화나 기술라이센스거래를 수반한 기술무역수지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그 방향이나 규모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기술격차를 추측하는 기준으로는 제품이나 공정의 물리적·화학적인 기능이나 생산성, 기술혁신의 건수 또는 특허의 출원 내지는 취득의 건수, R&D 투자액, 기술무역수지·직접투자·제품수출점유율 등의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기술무역수지에 있어서는 모방 등의 비시장형기술이전은 물론 크로스라이센스나 기술협력과 같은 기술료를 지급하지 않는 기술이전, 하이테크기기의 수출에 의한 기술이전 등 기술 자체에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기술이전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과 세계의

기술무역액에 포함되는 종류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2차세계대전후 기술이전의 동향으로서 특징적인 점은 ① 미국에서 기술이전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 ② 기술이전의 대부분이 선진국간에 행하여 졌다는 점, ③ 기업내 기술이전으로서 행하여진 경우가 많다는 점등 세 가지이다.

개발도상국의 기술이전은 선진국의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 이는 연구개발지출총액이 중남미, 호주, 아시아제국 및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북미, 구주, CIS 및 일부 동남아시아와 비교하여 거의 한결같이 매우 소액인 점,⁴⁾ 과학자·기술자의 개발도상국 분포비율이 현저하게 적은 점, 해외에 출연한 특허건수가 미미한 수준이었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기술이전을 거의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역의 경우만이 문제된다.

선진국간의 기술격차는 20세기초부터 존재한 기술에 대하여는 구미간의 격차가 적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었고, 제2차세계대전이후에 생겨난 특수플라스틱, 컴퓨터, 반도체와 같은 고도의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는 미국이 우위에 있었으며, 기술격차에 관한 1970년의 OECD보고서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술수준의 대부분이 구주제국의 기술수준을 상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1960년대에 비하여 미국의 기술력 및 기술개발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서독과 일본이 급속하게 향상하였으며 특히 일본이 프랑스와 영국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이 1981년 UN 과학기술백서의 분석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전반적인 우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전반기에 미국정부는 강력한 미국을 목표로 연구투자를 확대하였지만 그것은 국방연구에 치우친 투자였다.

4) UNESCO, 文化統計年鑑, 1984, 626면 참조.

II. 技術 等에 대한 法的 取扱과 國際技術移轉의 動向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은 경쟁력향상을 중점과제로 하여 위탁연구, 민간과의 공동연구 및 그 성과의 산업계로의 이전, 민간 기술에 대한 연방정부의 직접원조 등의 시책을 진행하였다. 1990년 1월에 발표된 부시정권의 연두교서에서도 '경쟁력 있는 미국을 목표로 한 투자'를 강조한 바 있다.⁵⁾

3. 아시아 開發途上國의 擡頭와 國際技術移轉

국제기술이전이 직접 통상문제에 있어서 쟁점으로 대두된 것은 선진국간의 기술이전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문제였다.

개발도상국의 대다수는 제2차세계대전 이전까지 식민지로서宗主국에 일차산품을 공급하고 공업제품을 수입하는 종속적 지위에 있었다. 1950년대의 거의 모든 개발경제학이론은 일차산품의 수출에 의한 경제발전의 역행에 대하여 부정적이었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이론을 수용하여 수입대체적 공업화전략을 수립하였다. 개발경제학이론의 근거로는 균형성장이론과 불균형성장이론이 있지만 전자가 후자에 합치되는 형태로 결론이 내려졌다. 초기단계에서 개발도상국은 국내시장활성을 위하여 경공업제품의 생산에 주력하였고, 대개의 경우 국내의 노동력이 풍부하였고 기술이나 자본을 선진국에서 비교적 쉽게 원조받는 정도에서 만족하였다.

그러나 수입대체공업화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시장의 협소, 공업화를 위한 투입재수입의 증가에 의한 국제수지의 악화, 확대재 생산을 위한 중화학공업화의 강력한 추진으로 인한 자금부족 등의 난점이 드러났다. 더욱이 공업화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임금, 저금리, 환시가의 과대평가를 비롯하여 유치된 다국적기업의 생산기

5) UN 1990年度 科學技術白書, 65면 참조.

술이 자본집약적이어서 충분한 고용기회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및 보호정책에서 생겨난 기득권이 생산성이나 비용개선의 노력을 저해하는 정치적 부패로 인하여 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수입대체공업화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러나 신흥공업국(NIEs), 특히 그 중에서 누적채무에 어려움이 있는 중남미제국이나 주로 관광 및 노동자로부터의 해외송금에 의존하는 일부 유럽국가를 제외한 이른바 아시아 NIEs, 즉, 한국, 대만, 싱가포르 및 홍콩은 1960년대에 방향전환하여 시장자유화정책, 수출촉진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여 수출지향형공업화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제국의 수출지향형공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전술한 NIEs제국과 더불어 ADEs(다이내믹·아시아제국)이라는 총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산업구조 고도화의 진전으로 아시아NIEs제국의 경제중심이 제1차산업으로부터 제2차산업을 경유하여 제3차산업으로 순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토지 및 고임의 노동력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제조업이 ASEAN제국이나 중국대륙으로 진출하는 등 제조업이 퇴조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국제금융센터나 주변지역의 자회사를 통괄하는 지역본부의 설치 등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서비스산업의 부상이 현저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과 대만에서도 공업화에 의한 소득수준의 향상에 부응하여 제3차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치열한 국제경쟁중에 생겨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시아 NIEs는 노동집약형산업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부품조립산업중심의 경제에서 기술집약형·고부가가치형산업중심의 경제로 탈피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선진국에서의 기술도입을 가속화함을 물론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세제상의 우대조치는 이미 한국 등에서 채용하고 있는 외에

II. 技術 等に 對한 法的 取扱과 國際技術移轉의 動向

해외에서의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우대조치도 강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ASEAN에로의 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본 및 아시아 NIEs제국 등으로부터 직접투자의 증가가 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ASEAN투자는 당초에는 태국에 많은 투자를 하였지만, 하부구조에서의 병목현상, 노동비용이나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의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베트남 등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I. 序說

최근 세계의 무역질서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1994년 GATT총회에서의 UR협상 타결을 들 수 있다. UR협상의 타결에 의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각국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상협상의 파생적인 문제로서 세계 각국은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환경보전 및 공해방지를 위한 환경라운드(GR : Green Round)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근로조건을 다루는 노동라운드(BR : Blue Round)와 범세계적 경쟁제도의 확립을 위한 경쟁라운드(CR : Competition Round), 과학기술활동을 산업·경제정책과 연계·통합하여 다루기 위한 기술라운드(TR : Technology Round)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요컨대, 국제경제질서는 경제활동전반에 걸쳐 엄격한 규제와 제약이 과해지는 관리적 세계경제체제로 옮겨가고 있다.

이중에서도 TR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후반 OECD를 중심으로 국제기술규범을 제정하려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UR에서 제시된 기술개발규범이나 GR로 가시화되고 있는 환경기술관련규범 등에서 보여주듯이 국제기술규범을 제정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제무역은 "상품"의 단순 이동에서 고도기술분야의 자본과 인력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동시 이동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발전하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국제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앞선 기술력을 국제통상과 연계시킴으로써 개발도상국을 견제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TR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술개발에 대한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이 국가간 교역체계를 크게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정한 무역의 확보차원하기 위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이 선진국에서 축적된 과학기술의 무임승차에서 이루어졌다는 인식 하에 선진국은 UR에서 먼저 지적재산권 문제를 쌍무 및 다자간 협정의 주요 의제로 제기하고 있다.⁶⁾

1994년 UR협정문중에서 기술관련정책과 관련 있는 부문으로는 보조금, 지적재산권 및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으로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WTO설치후 과학기술규범 관련된 개념과 행동규정이 결정되고, OECD의 과학기술규범제정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면, 그러한 분야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⁷⁾

국가 경쟁력이 기술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그 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TR이 진행될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5~10년내에 TR이 진행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성격과 목적은 UR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UR은 나라마다 분야별로 득과 실이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규범형성한다는 전제하에 있

6) 박현우 "새로운 국제이슈 TR과 우리 경제의 대응", 에너지관리, 1995.9. 81면.

7) 김준규, "UR 지적재산권협정과 우리의 대책(下)", 특허정보, 1995.1. 83면.

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TR은 기술력이 뒤떨어진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술도입에 따른 비용이 상승하고, 주변 기술이전에 따른 핵심 기술에 대한 의존으로 기술력이 앞서는 선진국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이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UR에 나타나 있는 TR의 의제들을 검토하여 보면 지적재산권, R & D보조금, 기술관련 규정들로 대표되고 있는 바, 이하에서 세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TR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1991년에 마련된 OECD 국제기술규범을 기초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최근의 UR협정문에서 나타난 기술관련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TR의 전개방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II. OECD의 國際技術規範

기술 라운드(TR)란 기술 및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자간 협상을 말한다. 즉 개별국가의 기술개발정책이 다른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쳐 국가상호간 무역마찰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국제기술규범을 설정하기 위한 국가간의 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되고 있고, GR로 가시화되고 있는 환경기술관련 규범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OECD 국제기술규범의 목적은 상품과 서비스부분의 교역에 관한 원칙, 즉 GATT의 원칙인 무차별원칙, 상호주의원칙, 투명성 원칙 등과 동일한 취지에서 기술과 투자를 포함하는 다자간 규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기술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은 국제기술규범제정을 통하여 기술자체의 권리강화,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지원의 공정성확보 등을 위한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다. 1991년 OECD각료회의에서 기술경제프로그램(TEP : Technology and Economy Program) 연구에서 시작하여 그 결과 7개부문의 과학기술규범을 제시하고, 향후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규범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는⁸⁾ 사실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의 과학기술규범은 산업기술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소위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무역의 마찰을 초래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기술규범 설정분야는 GATT의 원칙인 자유화원칙과 내국인 대우정신에 입각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1) 기초연구에 공공부문의 지원, (2) 기술확산정책, (3) 인력개발, (4) 민간 R & D지원 및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외국의 접근, (5) 국내정책관행의 국제적 조화, (6) 과학기술에 관한 국제협약, (7) 개발도상국을 위한 과학기술지원 등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⁹⁾

1. 科學技術政策의 調和

개별국가의 과학기술정책 및 체제에 따라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무임승차 효과 등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국가는 정책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국가간 과학기술관계에서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책의 국가적인 조화를 위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경우 무임승차의 효과나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실제로 적용할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8) 박현우, 전계논문, 81면.

9) 김영우, "UR, GR, TR 전개의 특성과 동태적 대응전략", 과학기술정책 동향, 1994.7. 8~9면.

2. 政府의 技術開發支援政策

기초연구를 제외한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해당산업에 대한 여타의 지원과 마찬가지로 국제무역에 있어서 왜곡을 초래하고 분쟁의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규범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 산업, 경쟁전단계 기술 등에 대한 국별 분류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통일된 정의와 분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별지원의 구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접근에 차이가 있으므로(미국 : 대학중심-접근용이, 일본 : 기업중심-접근장애), 경우에 따라 구조 조정(structural impediment initiative : SII) 등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사전작업으로 OECD는 회원국의 지원제도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실시, 1992년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조사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지원의 시장왜곡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것은 기술개발지원의 대상범위가 선진국의 판단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시장과급왜곡효과의 설정에도 자의성이 개재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3. 研究開發事業에 대한 接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의 외국인 기업 및 외국의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 차별 없는 참여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각국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전략기술, 핵심기술의 분류기준, 외국기업의 참여허용여부, 지원수단 등을 조사하여 새로운 규범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4. 科學技術人力の 自由移動 保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과학기술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및 거주를 방해하는 국내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5. 科學技術의 世界化에 따른 對備

기업활동의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연구개발활동의 세계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활동은 진출기업 뿐만 아니라 현지국가의 경제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진출기업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동등한 연구개발환경 및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시점에서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 등이 아직도 완전히 파악될 수 없는 단계이므로 이에 대하여 OECD는 계속 연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그 주요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정보시스템의 보안
- S/W관련 지적소유권
- 자동화 생산체제와 관련된 지적소유권
- 세계화가 크게 진전되어 있는 산업(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정부지원
- 기술표준(특히 정보통신분야)
- 정부지원, 기업흡수, 합병 등에 따른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규범
- 제3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관련 환경정책 및 분쟁해소

- 생명공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연구, 실험, 상업화 등에 있어서 code of good conducts)

문제는 우리 나라가 OECD에 가입하게 될 때는 TR이 논의의 과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쌍무협상 또는 다자간협상의 차원에서 이행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활동의 전면적인 재점검, 재구축작업이 본격화 되어야 할 것이다.

III. R & D 補助金 分野

1. 概要

1991년 OECD는 신국제기술규범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연구개발(R & D)보조금을 규제하고자 권고를 구체화하려고 한 바 있다. 공정한 국제무역을 위하여는 가격경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의 연구개발보조금은 마땅히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UR협상 초기에는 R & D 보조금에 대한 선진국들의 자세가 매우 완강하여 총기술개발비용중 기초연구에는 50%까지, 응용연구개발의 경우 25%까지만을 허용되는 정부 R & D 보조금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UR협상 타결이 임박한 시점에 미국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로 인하여 초기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수준으로 규정하였다.¹⁰⁾

10) 미국 과학기술계는 UR초기에 논의된 둔켈초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첫째, 보조금지원의 비율을 25%, 50%로 제한한 조항은 현재 미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고도기술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Program), 기술재투자프로젝트(Technology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연구개발보조금 규정은 OECD각료회의에서 제시된 사항의 일부이며, 그 내용은 매우 완화되어 산업기반기술연구(Industrial Research)의 경우에는 75%, 경쟁전 개발활동(Pre-Competitive Development)의 경우에는 5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UR보조금협정에서는 연구개발보조금을 허용보조금으로 인정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당초의 안보다 매우 완화된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즉 미국, EC와 같은 기술선진국들도 산업기술지원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연구개발허용보조금에 상품화 이전(경쟁전) 개발을 포함시키고 지원 비율도 상향조정하게 된 것이다.¹¹⁾ 그리고 정부의 지원활동에 대해

Reinvestment Project), SEMATECH, 클린카 이니셔티브(Clean Car Initiative), 연방정부로부터의 기술이전 프로그램 등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비율이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응용기술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둔켈 초안이 수정없이 통과된다면 그 지원비율은 25%로 낮추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자본력은 취약하지만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지원비율이 25%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매칭펀드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의 프로그램 참여가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둘째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GATT의 보조금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다른 나라들 보다 법적인 측면에서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한 미국의 민간업체들이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게 한다.

셋째 미국의 보조금지원은 민간에 대한 직접적인 그랜트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정도 및 그 과정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다. 따라서 세금 감면이나 기타 투명치 않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럽이나 일본보다 액수제한 규정에 쉽게 저촉될 것이다.

넷째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이라는 구분은 구태의연한 것이고 그 구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GATT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개별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성격을 둘러싸고 그것이 기초기술에 속하는지 아니면 응용기술에 속하는 지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섯째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보호되어 왔던 국방부분도 더 이상 보호되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민군겸용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지원도 GATT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11) 박현우, 전계논문, 84면.

보조금위원회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산업기술기반연구란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개량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응용연구 및 목적기초연구를 뜻하고 있으며, 경쟁전 단계의 개발활동은 개발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시제품의 제조, 제품공정 및 서비스의 새로운 개발을 위한 계획청사진, 파일럿 생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제품 및 제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개발의 대부분은 R & D 보조금이 허용되지 않는 분야가 된다. 따라서 R & D 보조금을 금지 내지는 제한하는 TR이 새로운 국제기술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어 각국의 국내연구개발에 대해 국제적으로 간섭 및 규제가 가능하게 된다면 기술입국을 지향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¹²⁾

2. 補助金 및 相計措置에 관한 UR協定の 內容¹³⁾

UR타결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지원 및 과학기술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UR협정문의 관련 각 조항과 그 배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UR협정에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UR協定에서의 補助金(Subsidy)의 定義

정부나 공공단체에 의한 다음과 재정적인 지원이 있는 경우, 즉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이전(무상양여금, grant), 자금대출(loans),

12) 손찬현, "기술경쟁시대의 도래와 기술라운드(TR)", 월간무역, 1994. 4., 35면.

13) 송종국, 이명진, 우루과이협정타결과 기술혁신지원제도의 개선방향,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4., 20면 이하.

지분참여(equity infusion)나 잠재적인 자금이전 또는 채무부담의 가능성(대출보증, loan guarantees)이 있는 지원, 면제된 정부의 수입(조세감면 등의 재정적인 인센티브), 정부가 일반 사회간접시설 이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구매하는 행위와 정부가 자금공여기관 및 민간기구에 상기 3가지의 기능을 위임 또는 감독하며, 그 기관의 활동이 정부의 활동과 다르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GATT 1994일반협정 제16장의 견지에서 소득 또는 가격의 지원이 있는 경우와 상기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주어진 경우이다. 또한 상기 정의된 보조금이 제2조의 특정성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정 제2부의 금지보조금, 제3부의 제소(상계)가능 보조금, 제5부의 상계조치에 적용된다.

이상에서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내려져 있지만 보조금의 범위에 대해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UR협상과정에서 나타난 각국의 주장을 살펴보면 명확한 근거를 알 수 있다. EC, 캐나다, 일본 등 많은 협상 참여국이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직접적인 자금의 이전과 간접적인 세입의 포기가 보조금의 조치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데 반해,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수혜자에게 혜택이 귀속되는 모든 정부의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¹⁴⁾

이러한 미국의 주장이 UR 협정의 보조금정의에 그대로 반영되어 정부의 자금공여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민간기관에게 정부의 통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감독 또는 위임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14) 법무부, UR협정의 법적 고찰(상), 1994 참조.

2) 特定性(specificity)

특정성의 개념도 미국의 입장과 EC, 캐나다, 일본의 견해에 차이가 있다. EC, 일본, 캐나다를 비롯한 협상참여국은 보조금이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고 특정한 기업이나 경제부문에 대해서만 주어진다라는 특정성 기준이 보조금을 조치가능 여부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미국은 캐보트사건의 판결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상계관세법에서¹⁵⁾ 관할 당국이 정부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특정기업 또는 산업에 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수혜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정부의 조치를 모두 조치가능한 보조금이라는 일반적인 정의와 더불어 특정성이 상계가능성에 대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¹⁶⁾

UR협상과정에서의 둔켈초안 및 최종협정에서도 특정성을 조치가능보조금의 구별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보조금이 기업이나 산업에 대하여 특정되어있다는 것은 보조금 공여당국이나 관련 법률이 보조금 지급을 특정기업에 한해 명백히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와¹⁷⁾ 기타 제한된 수의 특정기업에 대한 보조금프로그램, 보조금을 특정기업에서 전적으로 사용하거나 많은 비율을 사용하는 경우, 당국의 재량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말한다. 그리고 지정된 지역에서 제한된 기업에게 부여되는 보조금도 특정성이 있다. 단, 일반적

15) 19 U.S.C. §1677(5)(B).

16) 송종국, 이명진, 전게서, 29면.

17) 다만, 보조금의 수혜대상과 규모를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과 조건을 구비하고 법령, 규정, 기타 공식문서에 명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여기에서 객관성이란 경제적이고 적용에 있어 공평한 것, 예를 들면 고용자의 수나 기업의 규모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으로 적용가능한 세율의 결정이나 변경은 특정성에서 제외된다.

3) 禁止된 補助金(Prohibited Subsidies)

금지보조금을 규정한 이유는 국제교역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러한 금지보조금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가 보조금협약에서의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 되었다. 미국은 기술한 바와 같이 금지보조금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입장이었고, 기타 국가들은 좁히려는 입장이었다. 미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농업 수출국들은 예시목록을 확대하여 일차산품과 비일차산품사이의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일본과 북유럽국가는 예시목록이 한정적이고 망라적이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산물협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그 자체 또는 다른 요건들의 하나로서 수출성과와 관련된 다음의 경우는 금지된다.

- ① 정부가 수출성과에 대해 기업이나 산업에 주는 직접 보조금
- ② 수출장려금 형태의 외환현금보유
- ③ 국내선적보다 유리한 수출선적의 국내운송화물료
- ④ 국내생산보다 유리하게 수출상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수입품 또는 국내생산재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 ⑤ 수출과 관련하여 기업의 직접세나 사회보장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감면, 환급 또는 유예하는 것
- ⑥ 국내 소비용생산 이상으로 수출 또는 수출성과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직접세 과표산정에서의 특별공제허용
- ⑦ 국내 소비용 동종품목이상으로 수출상품의 생산 또는 유통과 관련한 간접세의 공제나 환급

Ⅲ. R & D 補助金 分野

- ⑧ 국내 소비용 동종품목이상으로 수출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공제환급유예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됨)
- ⑨ 수출물품생산에 투입된 수입재에 부과된 수입과징금 이상의 환급
- ⑩ 정부(또는 정부관할의 기관)의 수출신용보증제도 또는 보험, 생산비증가에 대비함 보험 및 보증제도, 환리스크보증제도의 요율이 장기운용비용이나 손실보전에 부족한 경우
- ⑪ 실제의 조달비용보다 낮은 정부의 수출 신용공여
- ⑫ GATT 1994년 제16장에 의한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는 공공계정으로부터의 기타수출
수입제품대신에 국내생산제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도 금지의 대상이 된다.

4) 提訴可能한 補助金(Actionable Subsidies)

무역영향이란 상기 UR보조금에 속하는 보조금의 사용협정 체약국의 국내산업에 손해를 주거나 직·간접적으로 협정체약국에 돌아갈 혜택을 없애거나 손상시키는 경우와 협정체약국들의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심각한 침해란 한제품의 총가격 보조가(최근 12개월간 물품 판매가액)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업의 운용비용의 손실을 보전하는 보조금(장기적 해결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비정기적 일회성 보조는 제외함)과 직접적인 정부 채무의 면제나 그 상환을 위한 보조금이 해당한다.

기타로는 다른 협정체약국으로부터 수입을 대체 또는 방해하는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보조금, 제3의 시장에서 타협정 체약국의 수출을 대체 또는 방해하는 보조금(이는 매우 민감한 내용으로 피보조물의 시장 점유율의 증가, 보조금이 없는 경우 감소하였을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을 불변하게 하거나 느린 속도로 감소하는 경우 포함), 다른 협정체약국의 제품가격과 비교하여 피보조물품이 동일시장에서 현저한 가격절하를 초래하거나 가격인상억제나 가격하락 또는 판매감소를 초래하는 보조금과 피보조일차산품 또는 상품의 지난 3년간의 평균 세계시장 점유율에 비해서 시장점유율이 보조금지급기간 동안 지속적인 추세로 나타나는 경우의 보조금을 들 수 있다.

심각한 침해의 예외로는 이의제기 협정체약국으로부터 제3의 시장으로의 수출 또는 수입의 금지나 제약, 수입국이 비상업적인 이유에 따라 이의 제기협정 체약국에서 다른 협정체약국으로 수입전환, 제품의 가격, 품질, 수량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재해, 파업, 운송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협상국의 수출에 대한 침해, 이의 제기협정 체약국에 대한 수출제한, 이의제기 협정체약국에 대한 자발적인 수출의 감축과 수입국의 표준과 규제의 요건 형성의 실패를 들고 있다.

5) 提訴不可 補助金(Non-Actionable Subsidies)

제소불가보조금이란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과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75% 이하의 산업연구(industrial research), 50%이하의 경쟁전 개발활동(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ies : 산업연구결과의 새롭고 개선 및 개량된 제품, 공정, 용역에 대한 계획, 청사진, 고안화)에 대한 개별프로젝트의 비용과 비용은 인적비용, 실험기자재, 장비, 대비 및 건물비용,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구입, 연

구간접비용, 기타 연구활동비용을 들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대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기초연구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협정체약국내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으로서 지역개발의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에 따르며 경제적·행정적 구분이 되는 연속된 지역으로 3년간 전국 평균치에서 GDP가 85%미만 또는 실업률이 110%이상인 경우와 환경규제를 위한 일회적·비반복적 설비 보조금, 적응비용의 20이하의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이상의 UR협정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조항에서의 보조금, 특정성, 제소가능보조금, 제소불가보조금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다. 제소가능보조금이나 금지보조금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이 있고 동시에 제소가능 및 금지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연구개발보조금과 같이 특정성이 있어도 허용되는 보조금도 있다.

3. UR協定の 補助金과 그 適用

1) UR協定の 補助金

UR협정문에서 연구개발 보조금에 대한 허용보조금은 이미 언급하였다. 이 조항은 WTO설립 협정발효이후 18개월 이전에 회원국의 경험과 다른 국제기구의 연구에 따라 규정의 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어 규정의 수정과 보다 상세한 규정의 추가하여야 본 규정의 적용에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된다.

본 조항의 핵심내용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 중에서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에 의한 고등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 대한 보조는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위한 산업연구인 경우 전체 보조금비용에서 75%, 산업연구결과의 새로운 개선 및 개량된 제품·공정,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용역에 대한 계획, 청사진, 고안 등 경쟁전 개발활동(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ies)은 프로젝트비용의 50%이내에서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모두 허용하고 있다. 또한 협정체약국 내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으로서 지역개발의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에 따르고 경제·행정적 구분이 되는 연속된 지역에 대한 보조금은 허용하고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보조금의 범위와 허용·금지·조치가능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국가별로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최근 제기하고 있는 UR협정의 보조금관련 논의는 계속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2) 補助金 關聯規定의 解釋

(1) 公共機關

보조금의 정의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자금조성에 기여한 자금공여기관, 상기 3가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의 위임 또는 감독을 수행하도록 한 민간기관 및 그 기관의 활동이 정부의 활동과 다르지 않는 경우를 포괄한다는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정부의 지시나 감독 또는 위임이 있을 경우 사적인 자금원에 의한 사적 보조금도 보조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한다면 정부의 어떠한 개입도 존재하지 않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본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정부투자기관(한국통신, 한국전력) 등이 특정연구개발사업이나 통신기술개발진흥기금 등 각종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진흥기금에 출연할 경우 정부의 보조금으로 보아야 할

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로 보아야 할지 그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즉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주식지분 소유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에서 제공한 사적보조금의 운용에 정부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가 보조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할 것이다.

과학기술진흥법 제9조 2항에서 규정한 과학기술처장관의 권고사항 즉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사업중 첨단과학기술의 응용정도가 매우 높고, 산업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뚜렷한 사업의 계획 수립자나 시행자 그리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 사업소요예산 또는 매출예정액에 적정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에 관련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보조금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연한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관련기금에서 보조금 지급은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경우 보조금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본 조항의 연구개발보조금이란 보조금협약 제2장의 보조금 정의 중에서 무상양여나 출연에 해당하며 특정성이 있어도 일정조건만 충족시키면 허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물론 정부의 보조금이 본 조항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회원국들이 그러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는 보조금을 회원국이 제공할 수 있으나, 제공된 보조금에 대한 제약여부(금지 또는 조치가능)여부는 UR 협정의 각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2) 研究開發費用

연구개발비용이란 개별프로젝트 베이스의 총비용을 기준으로 하

며, 비용은 연구활동에 고용된 인력비용, 실험기자재·장비·대지 및 건물비용,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소유권 구입비용, 연구활동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간접비용, 기타 연구활동비용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산업연구와 경쟁전 개발활동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상기한 비용의 총액이 두 범주의 허용한계의 단순산술평균을 넘어서는 안됨을 명시하고 있어 우리 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즉, 특정연구개발사업이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과제가 연구개발의 여러 단계를 포괄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 허용비율을 산정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총보조금액의 개념도 매회계연도의 보조금만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프로젝트가 여러해 동안 지속될 경우 프로젝트의 존속기간동안 발생된 총지출비용과 보조금을 근거로 지원비율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 장기간의 연구목표를 지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계획시에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연구활동이란 기업과 계약에 의한 것을 말한다. 단 상업적·산업적인 목적 외에 단순한 과학적 기술적인 지식의 창조와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를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정부의 보조금지급이 모두 허용된다 할 것이다.

산업연구란 새로운 제품, 공정, 서비스의 개발이나 기존의 제품, 공정, 서비스의 현저한 개선에 유용할 것이라는 목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 계획된 조사나 중요한 연구를 말한다.

또한 경쟁전 개발활동이란 상업적 용도가 아닌 prototype을 포함하여 산업연구결과를 판매나 사용목적으로 제품, 공정 및 서비스를 새롭게 수정 및 개선하는 계획·설계 또는 도안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품, 공정, 서비스 대안의 개념적 공식, 디자인과 산업적 응용이나 상업적 개발로 전환되거나 사용될 수 없는 시험적 계획(pilot project)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의할 부분은 허용된 연구개발활동의 범위이다. 미국의 보조금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의 설정과 허용보조금에 대한 축소를 UR 협정과정에서 주장하다가 최종타결직전에 완화시켰다. 이는 연구개발 보조금의 허용비율확대를 통하여 미국의 현행지원제도 유지의 목적과 다른 국가의 보조금을 위에서 정의한 산업연구와 경쟁전개발활동으로 국한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의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내용을 상품화단계나 그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4. 先進國의 R & D 補助金¹⁸⁾

1) 美 國

미국의 연방정부는 산업경쟁력의 고도화를 위해 각종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수립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들의 정책목적과 수단은 다음과 같다. 미국 정부가 OECD에 통보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총 48개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부문은 투자지출부문이고,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 수단은 조세감면을 통한 특별혜택이다.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무상 잉여금(grants)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이 조세금융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재정지출을 통한 연구비의 직접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은 연구개발지출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Incremental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Tax Credit)에서 전략방위주도 프

18) 송중국, "선진국의 R&D 및 기술혁신제도", 과학기술정책동향, 1995. 1. 4면.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로그램(Strategic Defense Initiative(SDI))에 이르기까지 10여 개에 이르고 있다.

1986년에서 1989년까지 미국의 정부보조금 중에서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관련 정부보조금이 전체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30%까지 늘어났다.

1992년에는 고도기술프로그램(ATP)에 대한 정부지원보조금액과 민간연구개발기금의 부담비율을 보면 정부가 46%, 민간이 54%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프로젝트에서는 그 차이가 있다.¹⁹⁾ 따라서 ATP프로그램을 프로젝트별로 볼 때는 산업연구로 가정하더라도 UR협정의 연구개발보조금 상한인 75%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ATP프로그램 자체로는 UR협정의 연구개발보조금상한을 초과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프로젝트별로 본다면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2) 日 本

일본은 미국과 달리 정보통신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 민간이 지출하는 연구비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세제상의 제도로는 1967년에 제정한 증가시험연구비 등의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시험연구비가 과거의 최고수준을 넘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세액

19) Ultra-High Density Magnetic Recording Heads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5년간 정부가 46%, 민간이 54%를 부담하고 High Fidelity Digital Image Compression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26개월 동안 정부가 24%, 민간이 76%를 부담한다. 또한 A Three-Dimensional Database for Visualization of Human Physiology 프로젝트도 연구기간 3년동안 정부가 약 24%, 민간이 76%를 부담하고 있다.

공제해 주고 있다. 그리고 기부금 공제, 학술연구법인의 자산에 대한 비과세조치 및 광공업기술연구조합의 시험연구용기기장치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경감조치를 들 수 있다.

일본의 연구개발보조금은 주로 대체 에너지 개발연구,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에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의 연구개발촉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조세감면과 제조업연구개발비용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이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일본의 보조금 지원 중 가장 큰 부문은 연구개발과 중소기업지원, 그리고 수출지원보증이다. 지원수단으로는 연구개발의 경우 조세지원, 수출보증,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금융대출 및 무상양여이다.

3) 프랑스

프랑스의 금융지원제도로는 보조금, 특혜금융과 산업현대화기금, 자본참여 및 신용보증 등이 있다. 그 중 기술개발을 위한 보조금지원으로 연구기관이나 기술전문가에게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를 의뢰한 기업에게 주는 기술혁신 프리미엄과 생산공정에서 관련된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기술혁신보조금이 있다.

조세감면지원제도는 과거 2년동안 R & D 실질지출액(소비자물가로 조정)과 당해연도의 R & D 지출차액의 5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조세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감면상한액은 기업당 한해에 FF40,000,000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R & D지출이 감소된 기업은 그 상당액 만큼의 감면받은 조세를 환급해야 한다. 조세감면액이 조세액보다 많거나 당해연도에 적자가 난 경우에는 다음 3년동안 해당 조세감면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프랑스의 주된 보조금 지출분야는 산업분야별 지원보조금 프로그램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40%로 내외이든 것이 1989년에는 분야별로 지원보조금이 14%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수단으로는 수출의 경우 수출보증이 주된 수단이고, 과학기술과 관련하여서는 무상양여와 조세제도를 통한 혜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獨 逸

독일은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 보조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보조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 지역개발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정부지원 보조금중 수출보조금의 경우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수출보증지원을 가장 주된 수단으로 하고 있고, 지역개발에서는 조세제도를 통한 특혜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연구개발분야에 있어서는 무상양여와 조세지원제도를 들 수 있다.

5. 우리 나라의 R&D 補助金

우리 나라는 선도기술개발사업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부담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1>참조).

〈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정부부담비율²⁰⁾

선도기술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과제명	비율(%)	과제명	비율(%)
차세대반도체기반기술	46.8	공통애로기술 및 요소 기술개발	57
고선명TV연구	41.1	첨단산업기술개발	20
신의약·신농약연구	50.5	중소기업기술지원	74
첨단생산시스템연구	51.5	국제공동기술개발	100
첨단소재연구	58.2	대일의존핵심기술개발	52
차세대자동차연구	48.8	기술개발기획평가	100
신기능생물소재연구	51.7		
환경공학연구	70.4		
신에너지연구	72.8		
차세대원자로연구	19.2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10.4		

- 표설명 : 1) 선도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총연구 기간동안의 총연구비 투자계획을 근거로 산출한 부담비율(고선명TV 90~93년 실적치)
 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경우 87년에서 92년사이의 연구 실적치에 대한 비율

선도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정부부담 비율은 평균 50%내외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을 정부로 간주하게 되면 그 보조금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비용부담비율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자금지원 범위와 기준은 참여 기업수 및 중소·대기업의 형태에 따라 총개발사업비의 2/3이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정부주도의 과제는 100%까지 지원한다. 즉 주관기

20) 송종국, 이명진, 전계서, 56면.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관이 중소기업이거나 국립 및 정부출연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이며, 중소기업이 2이상이고 참여기업이 2/3가 넘는 경우 총사업비의 2/3까지 지원하며 그 외는 총사업비의 1/2까지 지급한다. 대기업이 주관기관이고 중소기업이 2이상이고 참여기업의 2/3가 넘는 경우 총사업비의 1/2, 그 외는 2/5까지 지원한다.

다른 지원제도로는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감면·금융지원제도를 들 수 있다. 조세감면제도로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감면,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등을 들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

구 분		연구개발 → 기업화 → 시장진출		
사전지원	법인세 (소득세)	○기술개발준비 금 손금산입		
사후지원	법인세 (소득세)	○기술인력개발 비 세액공제 ○연구시험용시 설 투자세액 공제 또는 특 별상각	○신기술기업화 투자세액 공 제 또는 특별 상각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 공제	
	특 별 소비세	○수입연구용건 본품 특소세 면세		○기술개발선도 물품특소세 감정세율적용
	지방세	○연구소용부동 산 면세		
	관 세	○연구용품 관세 감면		

자료 : 산업기술진흥협회

금융지원제도로는 자금지원의 주체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 및 출연금, 정책자금에 의한 융자, 금융기관에 의한 일반융자, 벤처캐피탈에 의한 투융자, 신용보증기관에 의한 신용보증 등이 있다(〈표 3 참조〉).

<표 3> 기술금융지원제도

구 분	지 원 내 용	비 고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	특정연구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우수발명시제품제작,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체신부 기술개발사업, 한국전력기술개발자금	연구개발비의 50~60% 무상지원
정책자금에 의한 융자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	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기업화 등 소요자금에 6.0%~8.0%의 금리로 융자지원
금융기관의 일반융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시중은행의 일반융자	시중금리
벤처캐피탈의 투융자	- 한국종합기술금융 등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주식, 전환사채 등의 인수에 의한 투자지원 및 벤처투자조합결성에 의한 투자지원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융자	시중금리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신용보증	

자료 : 산업기술진흥협회

조세지원제도는 기술개발의 초기단계인 연구개발단계인 시험용기

자재 및 연구소의 건물에 대한 조세감면 등 여러 가지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발된 기술의 기업화 및 시장진출단계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 그리고 이는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세제를 신설하였기 때문에 세제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법조문의 해석상 어려움을 배제할 수 없고 절차 또한 번거롭게 되어있다는 점도 있다.

금융지원제도 역시 이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융자절차가 까다롭고 이자율, 상환기간 등 기술개발자금의 융자조건이 일반 금융에 비해 크게 유리하지 못하여 투자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기술개발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기업의 담보능력을 고려하는 안정성위주의 융자가 대기업에 비해 담보능력이 작은 중소기업은 지원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일률적인 조세·금융상의 지원은 연구개발에 대한 사적 인센티브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지 모르지만 도덕적인 문제, 예를 들면 민간기업이 정부와 협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정부가 발견하지 못하면 연구개발활동을 하지 않고도 보조금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6. 向後 對策

UR협정에서 나타난 R & D보조금규정은 아직 그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연구개발관련 보조금의 개념정의에 대하여는 WTO가 설립된 후 18개월 이내에 검토·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UR협정문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첫째는 허용보조금을 시행전에 보조금위원회에 통보할 때 보

조금인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보조금일 경우 허용여부와 허용 보조금의 경우 이의제기의 소지를 없애야 하고 되도록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경제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동향과 기술관련 정부지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환경기술규범과 국제기술규범의 제정에 대하여도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UR협정의 기술관련 보조금 및 상계조치의 중요한 내용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라는 해석이 우리나라의 정부투자기관의 성격변화로 말미암아 보조금규정의 적용여부의 판단이다.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될 경우 보조금의 지급한계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UR협정에서 특정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적용에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특정산업, 특정기업에서 특정의 범위와 내용, 차별적 보조금지급에서 차별의 기준 등이 모호하므로 이는 보조금·상계위원회와 분쟁해결위원회의 개별 제소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V. 知的財産權 分野

1. 概要

1) 意義

세계 1백 15개국에 참가하여 7년 이상을 끌어온 UR협상은 당초 예정했던 시한보다 3년이나 늦어진 93년 12월 15일 힘겹게 타결되었다. 이 협상은 우리에게선 쌀 개방문제가 전부인양 부각되었지만 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도 경제와 문화의 양면에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TRIPs협정은 저작권, 특허권 등 8개 분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기준과 시행절차를 정한 다자간 조약으로서 앞으로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기존의 국제조약을 최저 보호수준으로 삼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호수준이 종전보다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2) WIPO管轄 國際規範과의 關係

본래 GATT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으로서 다수의 국제조약이 체결되어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었다. GATT체제하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한 통상문제의 하나로서 UR협상 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WIPO관할의 기존 국제규범이 아주 낮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더욱이 당해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간 분쟁의 해결과 집행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²¹⁾

예컨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의 원칙과 국제출원에서의 우선권(Right of Priority) 등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Articles 2 and 4,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별도의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문예저작물의 보호에 관

21) 송상현, “通商問題로서의 知的所有權”, 법제연구, 통권, 제5호, 1993, 10~11면.

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도 여러 가지 저작권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이나 저작권자의 대여권(Rental rights)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WIPO관할의 23개 조약 가운데 9개의 조약만이 분쟁해결 및 조약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9개의 조약 가운데 반도체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조약(Articles 14 to 16.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만이 협의, 주선, 조정, 중재, 패널절차 등의 상세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8개 조약은 분쟁해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서 WIPO는 특허법통일협정(Diplomatic Conference for the Conclusion of a Treaty Supplementing the Paris Convention as far as Patents are Concerned(1993.7.) 참조) 및 국가간저적소유권분쟁해결조약(Committee of Experts on the Settl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between States)의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그리고 저작권보호에 관한 베른협정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회의(Committee of Experts on a Possible Protocol to the Berne Convention(1993.6))를 여러 차례 가진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기존 WIPO관할 국제규범들의 보호수준이 낮다는 점과 개정의 어려움을 들어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통상문제의 하나로 GATT체제하의 UR 협상주제의 하나로 포함시키게 되었다.

3) UR協商過程에서의 知的財産權 問題

(1) 知的財産權 協商의 背景

지적재산권의 보호문제가 GATT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동경라운드 협상시에 미국이 상표와 저작물에 관한 위조상품의 교역방지를 강화하자고 주장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문제는 미국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대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무역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사항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위조상품 방지에 관한 협정체결의 시도에서, 이는 WIPO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주장에 미국이 후퇴하여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와서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점차 심화되고 또한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함에 따라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세계무역질서를 왜곡시키는 중요한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따라서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문제를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와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함께 GATT의 3대 과제로 추진함과 동시에 쌍무간의 통상협상에서도 핵심적인 안건으로 부각시키고 GATT의 지적재산권 협상에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UR협상 개시 이전인 1983년의 GATT총회에서는 위조상품의 교역 문제를 GATT 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결정하고, 1985년의 GATT 총회에서는 전문가 그룹의 보고와 고위실무그룹(S.O.G.)의 보고를 토대로 지적재산권의 보호 문제를 GATT의 협상 대상으로 끌어들였다. 그리하여

1986년 9월 UR개시를 선언하는 GATT의 각료선언문에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UR의 정식협상 의제로 채택되어 “TRIPs협상”으로 명명되었던 것이다.

(2) 知的財産權에 관한 協商의 推進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치 형태는 행정부에서 대부분의 시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는 각종 업자들의 로비(Lobby)장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시책 결정과 수행에는 의회를 통한 업자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국이 UR협상에 지적재산권 분야를 끌어들이고, 또한 협상의 추진과 현재의 TRIPs협정 내용도 미국 내의 첨단산업계에서 작용하여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첨단산업계의 활동내용으로서 민간삼극회담의 개요와 TRIPs협상의 경위 및 협상의 결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① 민간삼극회담의 개요

미국의 첨단산업계는 지적재산권분야를 앞으로 새로운 라운드(다자간협상)에 끌어들이도록 작용하여 그것이 거의 확실시되자, UR의 개시 이전인 1986년 6월에 첨단산업분야의 다국적 기업인 FMC, IBM 등 13개 기업이 주축이 되어 IPC(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 지적재산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새로운 라운드에서 지적재산권 협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대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종전의 WIPO의회 등에서는 선진국간의 의견 불일치로 개발도상국들의 방해로 받아 성사된 것이 없으므로 앞으로 새로운 라운드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먼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산업계, 그것도 특히 권리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 EC, 미국의 삼극의 민간단체가 합의하여 정부에 통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IPC는 UR 개시 이전인 1986년 8월에 일본을 방문하여 외무성 과 통상성 그리고 경제단체연맹(KDR)을 순방하면서 설득과 회유를 하였고, 1986년 11월에는 EC를 방문하여 관련기관들과 UNICE(Union of Industrial and Employers Confederation of Europe : 유럽산업연맹)을 순방하면서 의견 교환을 하였던 것이다. 일본은 일본인의 성질이 특히 기업주들은 대외적인 활동에는 소극적이므로 IPC의 설득에 동조를 하면서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IPC EC를 방문하여 EC가 호응하는 것을 보고, 1986년 12월부터 KDR이 작업반을 편성하는 등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IPC의 활동으로 민간삼극단체의 회담은 1987년 3월 뉴욕에서 1차 회합, 1988년 1월 동경에서 2차 회합 및 1988년 5월 브뤼셀에서 3차 회합을 개최하여, 특허, 상표, 의장, 저작권, 반도체 칩, 재산적 정보 및 권리행사와 분쟁처리 등에 대한 기본 원칙과 그 설명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를 UR협상의 협정안으로 작성하여 1988년 6월 13일 미국, EC, 일본에서 각각 동시에 발표하고 각각의 해당 정부에 건의하여 TRIPs협상에 반영되도록 하였던 것이다.²²⁾

이러한 민간삼극단체의 협정안 내용은 현재의 TRIPs협정 내용과 비교할 때 순서와 세부적인 자구 수정만 되었을 뿐 기본 골격은 같은 것이므로 생략한다.

22) 御船 昭, “知的財産權に 關する民間三極會合”, *ジュリスト*, 第941號, 1989.9.15, 89面.

② TRIPs협상의 경위

위와 같은 민간삼국회담의 협정안은 1988년말과 1989년초에 미국, EC 및 일본에서 각각 정부안으로서 TRIPs협상의 협정안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들 외에 스위스와 홍콩도 위 삼국 단체의 회담에 동조하여 그것과 유사한 협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이들은 이른바 선진국안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에서 브라질, 인도 및 멕시코 등이 협정안을 제출하여 1989년 4월부터 TRIPs협상이 진행되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의견대립이 극심하여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1990년 TRIPs 협상 의장이 작성한 협정안에서는 단일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선진국안과 개발도상국안을 병기하여 비고란에서 요점토 등 의장의 의견만 부기하였을 뿐이므로 합의는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당초에 협상 시한으로 예정한 1990년이 경과하여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여 시한을 1년간 연장하였으나 그 연장 시한이 다가와도 모든 분야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 같지 않아 1991년 12월 20일 당시 GATT의 사무총장인 던켈이 전 분야를 일괄한 “종합협정안”(일명 : 던켈 협정안이라고도 함.)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종합협정안에서는 지적재산권분야에 개발도상국안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안에 따라 작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삼국회담의 협정안이 순서의 변경 및 자구 수정만 되어 공식적인 UR의 협정안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TRIPs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 대립이 많았으나, 현재로서는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고 또한 개발도상국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생략한다.

③ TRIPs 협상의 결과

TRIPs 협상의 결과로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이 제정되었다. 우선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있었던 약간의 수정 사항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협상의 마지막 단계인 1993년 11월에 미국이 TRIPs 협정안(던켈협정안)에 제14조의 2를 신설하여 사적 복제보상금제도에 대한 규정과 내국민 대우를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제65조의 경과규정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적용시기를 4년간 유보한 것을 1연으로 단축하는 제안을 하였으나 이를 위하여는 개발도상국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12월초에 이를 철회하였다.

현재의 협정은 당초의 던켈 협정안에서 두 가지 수정을 하였는데, 하나는 제31조 (c)에 특허의 강제허락에 의한 사용에 있어서 그 범위를 허락의 목적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반도체 기술인 경우에는 공공의 비영리 사용 또는 부정 경쟁에 대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쟁송절차 후에 결정된 구제 방법에 따라 제한된다.”는 것을 추가하였고, 다른 하나는 제64조의 분쟁해결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하여는 다른 협상 그룹에서 협상이 진행중이므로 미확정적인 규정을 두었던 것인데, 이번에 WTO가 설치됨에 따라 그것에 부합되도록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으로는 아무런 수정이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에 따른 기술경쟁으로 UR 지적재산권협상의 결과는 향후의 국제기술전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UR협상에서 승인된 지적재산권문제는 기존의 국제협약을 토대로 보호수준을 강화하는 국제협약 플러스방식으로 절충되었다. 그 강화내용을 보면, 보호기준과 분쟁 예방 및 해결절차의 강화, 그 밖에 대여권의 인정,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인정 및 보호기간 연장, 음반의 소급보호, IC및 이를 내장한 반도체칩과 최종제품까지의 보호확대 등이 있다.²³⁾ TRIPs

협정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1993. 12. 5, 제네바)이라고 하는데 이 협정은 UR협상에서 UR의 일반 협정외에 기술장벽협정협정(TBT협정),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Ps), 분쟁해결에 관한 관련협정(부속서 1(Appendix 1)으로서 양해각서임),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MFN/FA)과 함께 5개의 별도 협정중의 하나이다.

(3) TRIPs協定の 構成

TRIPs협정은 총 7개장에 73개 조항으로 구성된 방대한 협정인데, 제1장은 일반규정과 기본원칙으로서 제1조에서 제8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지적재산권의 효력, 범위 및 이용에 관한 기준으로서 제1절은 저작권 및 관련권리(제9조 내지 제14조)를, 제2절은 상표(제15조 내지 제21조)를, 제3절은 지리적 표시(제22조 내지 제24조)를 제4절은 산업적 의장(제25조 및 제26조)를 제5절은 특허(제27조 내지 제34조)를, 제6절은 직접회로의 설계배치(제35조 내지 제38조)를, 제7절은 비공개 정보의 보호(제39조)를, 제8절은 계약적 허락에서 부정경쟁관행의 통제(제40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장은 지적재산권의 실시로서 제1절은 일반적 의무(제41조)를, 제2절은 민사적 및 행정적 절차와 구제(제42조 내지 제49조)를, 제3절은 임시적 조치(제50조)를, 제4절은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제51조 내지 제60조)을, 제5절은 형사 절차(제61조)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와 관련 내부절차(제62조)를, 제5장은 분쟁의 예방과 해결(제63조 및 제

23) 박현우, 전계논문, 81~82면.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64조)을, 제6장은 경과조치(제65조 내지 제67조)를, 제7장은 제도적 규정(제68조 내지 제74조)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4) TRIPs協定の 特徵

(1) 知的財産權 保護水準의 強化

TRIPs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은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대여권을 인정하는 등 저작권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특허발명의 강제실시허락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하며 상표권에 있어서 상표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의 요건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등의 특허권 및 상표권 보호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산업디자인과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의 보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영업비밀 특히 정부기관에 제출된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原產地表示 保護의 強化

지적재산권에 관한 UR협정은 여타의 통상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산지표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즉, 허위의 원산지 표시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 이외의 영토, 지역 또는 지방에서 생산된 것처럼 소비자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허위의 원산지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상표에 관한 등록을 거절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산지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UR협정은 포도주와 증류주(위스키 등)의 원산표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진정한 원산지표시가 되고 특정지역의 술을 모방한 것이라고 표시한 경우까지도 원산지에 관한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는 원산지표시 도용을 금지하고 있다.²⁴⁾

(3) 稅關節次에서의 知的財産權 保護

UR협정의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세관절차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뺄 수 없다. 즉,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이나 무단복제된 저작물이 수입되거나 수출되려고 하는 경우에 지적재산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러한 상품의 세관통과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도 회원국이 세관통과를 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세관당국이 직권으로 수입정지를 시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비밀정보의 보호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 본안을 심리하고 있는 관할당국이 세관이 유치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신청인이 자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검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政府調達 等에서의 知的財産權 保護 等

지적재산권에 관한 UR 협정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각국 정부의 조달공고에 특정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요구하는 기술명세(Technical specifications)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에 당해 정부는 각입찰 참가자에게 동 지적재산권의 무차별적인

24) 송상현, 전제논문, 12면.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관례화 됨에 따라서, UR정부조달에 관한 UR협정을 보면 “지적재산권과 기술명세”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즉, 동 협정에 의하면, 경쟁적인 정부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입찰참가자들이 정부 조달을 위한 기술명세나 기술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실시권(license)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그러한 실시권 획득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무차별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러한 실시권의 획득을 보장함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경쟁적인 정부조달을 위하여 정부가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실시권을 획득하도록 보장해준다고 하는 것이 통상문제로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UR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실시권”의 엄격한 요건 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강제실시권 허용이라고 하는 원칙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고, 양자의 조화가 문제될 것이다.

UR 협정은 또한 저작권 및 특허권의 소급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실시허락계약(licensing agreements) 등의 지적재산권 거래에 있어서 경쟁제한을 규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가가 분쟁의 해결 또는 예방을 위한 절차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²⁵⁾

2. TRIPs協定の 基本原則

첫째 내국민 대우의 원칙(National Treatment)의 원칙으로서

25) 상계논문, 13~14면.

각회원국이 타회원국의 국민에게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제3조).

둘째 최혜국대우(MFN : Most-Favoured-Nation Treatment)의 원칙으로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으로서 한 회원국이 다른 한 회원국에 부여하는 특혜조치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즉시 다른 모든 회원국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제4조). 이 원칙이 포함됨으로 지적재산권이 무역의 대상으로서 GATT체제 내로 편입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권리소진원칙으로서 권리가 일단 정상적으로 판매한 기술, 상품 등에 대해서는 다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본 협정하의 분쟁해결절차를 다루기 위해 이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회원국이 권리소진문제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권리소진여부는 제도나 정책보다는 라이선스계약내용에 의해 확정되므로 계약체결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著作權 및 著作隣接權

1) 關聯規定과 意義

TRIPs협정의 저작권 관련부분은 기본적으로 제9조에서 제14조까지 6개항이지만 이들 이외에도 기본원칙, 분쟁해결, 경과규정 등 관련 부분이 많이 있다. 일반규정의 제1조는 이 협정에 의한 의무의 성질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의무의 성질로는 회원국들은 협정상규정들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협정의 규정들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보호보다 광범위한 보호를 국내법으로 부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협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범위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는 이 협정의 제2장 제1절에서 제7절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조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제2조에서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다른 국제협정들과의 관계를 규정하였는데, 제1항에서는 1967년의 파리 협약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파리 협약, 1971년의 베른 협약, 로마협약 및 集積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 등은 이들 협약에 의한 회원국들의 기존의 의무를 손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특히 파리협약과 베른 협약간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첫째로, 차등의 이유가 협약의 가입국 수에서 파리협약은 98개국이고 로마협약은 40개국이며, 직접회로협약은 아직 발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같은 적용이 곤란하다는 것이지만, 베른협약은 가맹국이 95개국이므로 파리협약과 같이 제1항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나, 미국의 강한 주장에 의하여 제2항에 포함된 것이다. 미국이 베른협약은 제2항에 규정하도록 주장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급효에 관한 것이다.

먼저 베른협약 제6조의 2에서는 저작 인접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1988년의 베른협약 시행법을 제정하여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도 저작인접권의 보호규정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베른협약 자체가 직접적으로 미국에 시행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협정에서 베른협약을 파리협약과 같이 준수하도록 규정한다면 이 협정의 회원국들이 이 협정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미국에 저작 인접권의 보호를 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베른협약을 제2항에 규정하도록 한 것이다.

다음에 베른협약 제18조 제1항에서는 저작권의 보호기간만료에 의하여 공유화된 저작물이외의 저작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소급효를 규정하였고, 동조 제2항에서는 “종래 인정되어 있는 보호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보호가 요구되는 동맹국에서 공유화가 된 것은 그 국

가에서 새로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미국의 베른협약시행법도 제12조에서 “미국에서 공유화”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보호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호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공유화가 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미국에서 저작권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화가 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베른협약의 무방식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베른협약시행법을 심의한 미국 하원에서는 베른협약 제18조제3항과의 관계에서 동조 제1항의 소급효원칙의 시행이 완전하게 요구되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²⁶⁾ 이 문제는 장래의 검토과제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없다고 하였던 것이다.²⁷⁾

그러나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호되지 않았던 베른협약동맹국의 저작물 보호에 대하여는 계속 논의가 있었고, 또한 이와 같은 소급효문제는 앞으로 이 협정의 분쟁처리기구에서 다루어지는 경우에, 미국의 생각 방식이 그대로 이해될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베른협약을 이 조의 제1항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제3조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원칙은 이 협정만이 아니라 베른협약이나 세계저작권협약에서도 같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제4조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GATT의 기본원칙이며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어떤 특전, 이익, 특권, 면제 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즉시 무조건적으로 모든 회원

26) 제18조제3항은 소급효에 관한 특별한 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각국이 이 원칙의 적용에 관한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소급효의 적용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7) H. R. Rep. No. 100~609, 100th Cong., 2d Sess., 1988, pp.51~52.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국의 국민들에게 그러한 특혜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987년의 한미행정협약에 의하여 미국 국민에게만 부여하였던 출판물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소급보호는 이 협정의 시행으로 모든 회원국의 국민들에게도 동등한 보호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제5조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취득과 유지에 관하여 다른 다자간의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협정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지적재산권의 취득 또는 유지에 관련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주관 하에 체결된 다자간협정(베른협약)에서 규정한 절차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제3조(내국민 대우)와 제4조(최혜국 대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협약간의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제6조는 권리소진을 규정하고 있는데, 권리소진이란 예컨대, 특허권자나 실시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작 및 유통하고 있는 특허 제품에 대하여, 그후에 다른 사람이 그 제품을 사용,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저작권에 있어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적법하게 제작하여 유통하고 있는 음반을 다른 사람이 사용 또는 판매하여도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는 주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서 문제로 된 것이나 이 협정은 저작권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음반에 대하여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예외로서 판매용 음반을 영리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에 따른 권리자의 허락을 요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소진문제를 이 협정에서는 제3조와 제4조의 규정 이외에는 이 협정에 의한 분쟁해결에 이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권리소진문제는 국내법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제7조는 이 협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지적재

산권의 보호와 시행은, 기술적 혁신의 촉진, 기술의 이전과 보급, 그리고 기술적 지식의 생산자와 사용자의 상호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제8조는 이 협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원칙은 회원국들은 이 협정의 제규정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공중의 보건과 사회적 경제적 및 기술적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분야에서 국내법령의 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제1항), 권리자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남용 또는 불합리한 무역의 제한이나 또는 기술의 국제적 이전을 저해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도 취할 수 있게(제2항) 하였다.

제9조는 베른협약(1971년)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회원국들은 베른협약의 제1조 내지 제2조(실체 규정)와 부속서(Appendix)를 준수한다고 하면서, 단서로서 동협약의 제6조의2(저작인접권)에 규정한 권리 또는 거기서 파생한 권리에 관해서는 이 협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특별히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단서 규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주장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된 것이다. 제2항에는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 미치나 아이디어, 절차, 운용방법 및 수적개념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b)항과 같은 취지이므로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제12조는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보호기간은 베른협약에 유보하고, 다만 사진 저작물과 응용미술 저작물을 제외한 저작물의 보호기간으로서, 자유인의 생존 이외의 근거에 의하여 기산하는 경우에, 그 저작물의 보호는 권리자에 의한 공개년도로부터 50년 이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년도로부터 50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13조는 제한과 예외를 협정하고 있는데,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는 권리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하지 않고 또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는 베른협약의 제9조제2항과 같은 취지이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제14조는 실연자, 음반(녹음물) 및 방송물의 제작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권리를 이 협정에서는 관련권리(Related Right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저작인접권이라고 한다면 로마 협약상의 권리와 개념상 혼동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미국에서는 저작인접권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주장에 따라 권리 명칭도 바꾸고 보호수준도 로마 협약보다 낮은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1971년 저작권법 개정 이래 “녹음물”도 저작물이며 녹음물 제작자도 저작자로 보호하여(동법 제102조(a)(7)), 음반협약에는 가입하였으나 실연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호는 없으므로 로마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연자의 실연이 음반에 개정된 경우에는 그 실연에 대하여 저작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지며, 고정되지 않은 실연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없고, 다만 보통법(common law)이나 부정경쟁방지법(주법) 등에 의한 보호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을 위한 영상으로 고정된 경우에는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자로 보호되지만 방송사업자 자체로서는 권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보호제도를 감안하여 이 협정도 규정하게 된 것이다.

제1항은 실연자의 권리를 규정한 것인데, 실연자는 그의 허락없이 그의 실연이 음반에 고정되거나 또는 고정물을 복제하는 행위와 그의 생실연을 방송 또는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의 제4항에서 제11조가 준용되는 결과로 국내법이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하여 대여권(또는 보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로마 협약상의 권리에 추가가 되는 것이다.

제2항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규정한 것인데,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도 실연자와 같이 제11조가 준용되는 결과로 대여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국내법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로마 협약에 추가가 되는 것이다.

제3항은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사업자는 그의 허락없이 방송의 고정, 방송고정물의 복제 및 무선수단에 의한 재방송과 텔레비전방송의 공개전달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회원국들이 방송사업자에게 이들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방송의 대상물에 저작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단서규정은 미국의 주장에 따른 것이며, 미국은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제4항은 제11조를 준용하여 음반 제작자와 기타 국내법에서 음반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실연자)에게 음반에 대한 대여권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UR 종결의 각료선언시점(1993.12.5)에서 회원국이 대여권 대신에 보상청구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음반의 영리적 대여가 권리자의 복제권에 실질적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단서규정은 당초 EC와 일본이 주장한 것인데, 미국이 양보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1992년 10월 28일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디지털 녹음물에 대하여 대여에 따른 보상청구권제도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제5항은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최소한 음반이 고정된 연도 또는 실연 또는 방송한 연도의 말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지속하도록 하였으며, 방송사업자에게는 최소한 방송한 연도의 말부터 기산하여 20년간 지속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로마 협약에서 보다 장기이다.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제6항은 위 관련 권리에 대한 제한, 예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는 로마 협약에서 허용된 정도까지 조건, 제한, 예외 및 유보를 정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베른협약 제18조의 규정(원칙적인 소급효)은 음반에 대한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의 권리에 대하여도 준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관련 권리의 조건과 제한 등에 관해서는 로마 협약의 수준에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별문제가 없다. 그러나 로마 협약은 불소급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음반에 대하여 소급효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일본과 같은 로마 협약의 기존가입국들에게는 보다 문제가 있으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베른협약 제18조 제3항) 국내법에 의한 보호가 이 협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생각이 미국의 생각 방식이다.

2) 著作權의 意義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語文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圓形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물(데이터 베이스)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 제3조에 따르면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 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제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약 가운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조약은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USC)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7년 7월 1일 저작권법의 시행과 함께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해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UR 협정은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 부문에서 세계 각국이 베른협약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베른협약은 1866년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지적재산권관련

협약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강도 높은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세계저작권협약은 개발도상국의 문화·경제적 여건에 맞도록 국제저작권 보호권을 완화시켜 지난 1971년에 마련됐는데 74년부터 발효돼 현재 90여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저작권협약에 기반을 둔 국내저작권법은 베른협약 정신에 맞도록 수정 보완되어야 할 운명을 맞게 되었다. 특히 베른협약은 저작물을 소급 보호한다는 소급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컴퓨터프로그램 영상저작물 음반 등을 제3자가 원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 관련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베른협약은 이 프로그램이 기본체계(Source Code) 또는 수행체계(Object Code)로 되어 있든간에 어문저작물로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著作權 保護에 관한 一般原則

회원국은 기존의 저작권 보호관련 협약인 베른협약(1971)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호대상에 일반적인 문학, 예술창작물외에 컴퓨터 프로그램 및 창작성 있는 데이터 베이스도 보호하고 그 보호기간은 권리자 생존중과 사망후 50년이다. 이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물의 하나로서 보호하되(제10조 제1항), 보호기간은 권리자의 생존중과 사망후 50년간으로 한다(제12조).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거기에 나타난 표현(expression)만 보호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아이디어, 운용방법 등은 보호하지 않는다(제9조 제2항). (2) 데이터 베이스(Data Base)가 편집저작물의 하나임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음반제작자, 직접 예술품 등을 실연한 실연자,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저작인접권의 대상에 포함하고 그 보호기간은 50년(단 방송사업자는 20년)이다.

4) 現行 國內法

국내에서는 지난 87년 9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특별법으로 제정, 시행해오고 있으나 UR협상의 타결에 따라 저작권법으로 통일화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데이터베이스(편집저작물)란 재료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백과사전이나 名詩선집 등을 들 수 있다. 국내 저작권법 제6조는 편집저작물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데 UR 협정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음반이나 공연과 같은 저작인접권은 UR에서 음반 實演者가 제작 또는 공연일로부터 50년간, 그리고 방송사업자는 방송일로부터 20년동안 보호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모두 20년으로 되어 있어 93년 12월 이를 개정하였다.

1993년 12월 개정(1994년 1월 7일 공포, 1994년 7월 1일 시행)된 저작권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저작권보호 및 벌칙 규정을 한층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이 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시행되는 저작권법은 지난 87년 부분적으로 개정된 바 있으나 그간 실정에 맞지 않아 손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미국측의 통상압력도 적지 않아 수정이 불가피해진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제조약과 외국의 입법경향을 대폭 수용해 이번에 저작권법을 개정함으로써 국내저작자들도 국제적인 수준에서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세계저적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도 갖는다.

새로운 저작권법은 ①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편집저작물로서의 보호(저작권법 제6조제2항)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저작권법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그간 보호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이터 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이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편집저작물은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그들의 정보를 컴퓨터 등 장치를 통해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규정, 첨단 과학기술의 산물들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② 음반대여권(음반의 배포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영리목적의 대여를 허락할 권리)을 인정하였다(법 제43조제2항, 제65조의2, 제67조의2). 저작물을 일반에게 상업적으로 대여할 경우, 판매감소로 인한 손실을 저작자에게 보상해주기 위해 마련된 대여권은 음반에 대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음반대여권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實演者나 음반제작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비디오 테이프·카세트·도서의 대여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③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였다(법 제70조). 다만 개정법 시행전에 발생한 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법 부칙 제3항).

그 밖에 UR협정과 무관하게 개정된 내용은 ④ 종래에는 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의 검·인정을 받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서와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보상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그러한 특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원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다만, 5년의 실시유예기간을 둠, 법 제23조제3항)할 수 있다. ⑤ 실연자가 영상저작자와 출연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영상저작물의 이용·방송에 관한 권리를 영상저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법 제75조 제3항)한다.

⑥ 저작권 위탁관리업에서 대리, 중개, 신탁관리 등을 모두 허가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제로 하던 것을 신고제로의 변경하였다. 다만, 개별적인 저작권 위임형태로 운영되는 대리 및 중개업과는 달리 다수의 저작권을 장기간 대행하는 신탁관리업(가령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대하여는 기존의 허가제를 유지한다(법 제78조). ⑦ 종전에는 저작권(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그 밖의 권리 포함)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외국에서 수입한 물건도 포함)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배포하는 행위만을 처벌하였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법 제92조 제2항 2호). 앞으로는 저작권법 위반 출판물을 진열 또는 보관하는 서점이나 총판이 이러한 '판매목적의 소지죄'의 혐의를 받는 일이 생길 우려가 있다.

⑧ 복제에 쓰이는 녹음기, 녹화기, 복사기, 공테이프 등의 메이커나 수입판매업자에게 복제보상금 징수의무를 부과하는 복제보상금 제도(levy system)는 한때 개정안에 포함되어 거론되었으나, 상공자원부와 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이번개정에서 제외되었다. ⑨ 저작권법의 강력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침해규정과 벌칙도 대폭 강화되었다. 개정전 저작권법은 무단 복제물을 배포하였을 때에만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저작권법은 배포를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도 침해로 간주하게 된다.

저작권 침해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있던 것을 다른 법률과 형평성을 고려, 3년이하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였다. 남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1백만 원의 벌금에서 5백만 원으로,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부정발행」의 경우에도 1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벌금이 대폭 인상되었다.

이 새로운 저작권법은 베른조약의 가입을 앞두고 국내의 저작권 보호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가도 없지 않지만 관련 업

계의 반발로 정작 주요 현안을 포함하지 않아 앞으로 추가개정작업 때 또 한번의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음반대여권의 신설과 저작권 침해물품을 소지한 경우해도 처벌하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국내 저작자의 권익보호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업체 이익을 반영하는 데 급급했다는 비난도 없지 않다.

5) 著作權 및 著作隣接權의 內容

(1) 컴퓨터 프로그램의 保護

컴퓨터 프로그램은 베른협약(1971)상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고(제10조제1항),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며 아이디어(idea), 절차, 운용방법이나 수적 개념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제9조제2항). 따라서 computer program의 개발을 위한 역조작(reverse engineering : computer program 자체를 역으로 분석해 나가서 프로그램 자체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표현과 아이디어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역조작을 통한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시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제10조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 편집물에 대하여 규정한 것인데, 제1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것이 원시 코드(source code)이든 목적 코드(object code)이든 관계없이 베른협약에 의한 어문 저작물(literary works)로 보호한다고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그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로 인하여 지적창작물이 되는 데이터나 기타 자료의 편집물은 기계적 可讀형태이든 기타 형태이든 관계없이 지적 창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어문 저작물이 아닌 개별 저작물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나(저작권법 제4조), 이 협정에서는 베른협약에 있어서와 같이 어문 저작물에 포함하고 있으며, 데이터나 기타 편

집물에 있어서는 우리 저작권법 제6조에 규정된 편집저작물과 같다.

(2) 貸與權

대여권이란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점 등에서 다수의 공중에게 대여한 경우 저작물의 판매량이 감소하여 저작자의 재산권 이익이 그만큼 손실되게 되므로 저작자에게 “배타적 허가금지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최소한 컴퓨터프로그램 및 영상저작물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대여가 권리자의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면 대여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제11조). 영상저작물에 대하여는 배론협약상 배포권이 인정되어 있으며(동협약 제14조 등), 배포권에는 대여권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미국에서도 영상저작물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배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미국 저작권법 제106조(3)), 음반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이른바 “퍼스트 세일 독트린(first sale doctrine)”에 의하여 영화를 포함한 저작물의 적법한 복제물의 소유자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없이 그 복제물의 판매, 점유, 이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 제109조(a), (b) 및 제117조). 따라서 미국에서는 영화의 비디오 소프트(video soft)를 구입한 사람이 그것을 대여하는 것은 자유이며, 복제물의 소유자에 의한 대여는 저작권자에게 대여권을 포함하는 배포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영화업자들이 영상저작물에 대한 대여권의 인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협정에서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대여권을 규정하면서도 미국의 반대를 감안하여, 대여에 의한 복제가 널리 행하여지더라도 사실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타협하여 대여권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대여권은 베른협약에 추가한 요소이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기본적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여권의 규정은 제14조제4항에서 준용하고 있으므로 음반제작자 등에게도 대여권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우리의 개정 저작권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94년 7월 시행)에서는 음반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대여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저작권법 제2조제15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제8호). 다만 영상저작물의 경우 복사의 질이 떨어지고 두 번 보기 위해 복사하는 경우도 드물며 대여로 인한 저작권의 실질적인 침해사실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대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영상저작물 대여업계는 외국영화 VTR테이프 등을 중개상을 통해 수입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원저작자로부터 대여의 허가를 취득한 후 직수입하는 방식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대여를 통해 저작물이 복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商標權

상표는 상품 및 서비스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름 문자 숫자 도형 등을 결합한 것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상표사용을 관리하는 상표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TRIPs협정에 의하면 성명, 문자, 숫자, 원형과 색채의 조합 및 이들의 결합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고(제15조제1항) 보호기간은 최소 7년간 무한정 갱신이 가능하다(제18조).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도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보호되며 유명성 여부의 판단기준으로는 관련분야의 공중의 인식도와 상표의 사용증대에 따라 당해국내에서 얻어진 지식도 고려

되어야 한다(제16조제2항 및 제3항).

이 규정은 산업계로 하여금 상표제작 및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 다만 유명상표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상표의 사용증대에 따라 당해국내에서 얻어진 지식”의 해석에 있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는 점은 문제로 남는다. 우리 나라도 95년 12월 29일 TRIPs협정 등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색채상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표제도의 세계화에 부응하고 산업계의 상표선택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표법을 개정하였다.²⁸⁾

(4) 意匠 및 實用新案

TRIPs협정은 회원국이 새롭거나 독창성 있게 창작된 의장(디자인)에 대해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동 협정은 의장의 보호기간을 적어도 10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는 그 동안 8년이라는 의장권 보호기간을 설정해 놓았으나 93년 12월 10일 의장법을 개정, 보호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개정된 의장법은 또 등록의장의 통상실시권을 신설해 사용되고 있지 않는 의장에 대해서는 사용을 원하는 제3자에게 줄 수 있도록 했다(제49조 내지 제52조). 90년 1월 13일 전문개정에 이어 93년 UR협상의 동향에 맞춰 대폭적으로 개정된 국내 의장법은 UR의 최종적인 타결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28)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상표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는 색채를 상표의 구성요소의 하나로 명시하였다(제2조 제1항 제1호). 둘째, 색채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색채만을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표권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색채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아두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상표와 색채만 다를 뿐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특칙규정을 신설하여 색채상표의 효력범위를 명확히 하였다(제19조의 2).

95년 12월 29일에도 의장법이 다시 한번 개정되었다. 그 개정취지는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의장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고 의장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공개제도를 신설하여 의장권 보호를 강화하고 의장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²⁹⁾ 한편, 실용신안법도 동시에 개정(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TRIPS협정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기술개발의 성과를 신속히 보호함으로써 기술개발의 성과를 신속히 보호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신안권의 실시의 범위를 실용신안등록된 물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전시 외에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에 까지 확대하여 실용신안권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제2조제3호).

둘째,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출원후 3년이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3년이 경과하더라도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29) 의장권 공개제도의 신설을 포함한 95년 의장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장권의 실시범위를 의장등록된 물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 외에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에 까지 확대하여 의장권의 보호를 강화하였다(제2조 제3호). 둘째, 의장공개제도를 신설하여 의장등록 출원인이 자기의 출원의장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면 특허청장은 그 출원의장을 공개하도록 하고 출원공개된 의장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 의장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히도록 하였다(제23조의 2). 셋째, 출원공개후 의장등록전에 제3자가 그 출원의장을 침해할 경우에는 출원인이 침해자에 대하여 보상금 청구권을 갖도록 하였다(제23조의 3). 넷째, 출원공개된 의장을 제3자가 침해할 경우 그 출원의장에 대해서는 우선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0조).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나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가능기간을 확대하였다(제10조).

셋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공고일부터 10년에서 출원일부터 15년으로 연장하였다(제22조).

(5) 地理的 表示

상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 기초하는 경우 특정 지방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알리는 표시가 보호대상이다(제22조제1항). UR 회원국은 원산지과 오인할 수 있는 지리적 표시를 상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지리적 요소를 포함한 상표를 무효화해야 한다. 그 이유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지리적 표시자체가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단 지리적 표시도 일반 상품, 서비스 포도품종 명칭으로 관용화되어 사용되는 경우(예 : 샴페인, 코냑)에는 보호되지 않는다(제24조제2항). 또한 최소 10년 동안 또는 선의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한다(제24조제4항).

우리 나라는 이미 상표법 제6조제2항(상표등록요건)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부정경쟁행위의 정의)에 의해 상당부분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6) 特許

TRIPs협정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독창성 진보성 그리고 상업적 이용가능성을 갖춘 발명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국가는 발명지, 기술분야,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생산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公序良俗

위반 발명, 진단·수술·처치방법 및 동·식물 발명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식물발명은 특허법 또는 개별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제27조제2항, 제3항)

우리 특허법에서는 無性繁殖 식물(예: 감자)은 특허대상이지만(동법 제31조), 유성번식 식물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향후 어떤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정한 경우 권리자의 동의없이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요건은 국가긴급사태, 공공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이용발명의 경우 및 합리적 기간 내에 합리적 계약조건으로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제31조(b) 및 (1)). 모든 강제실시권은 국내시장의 공급을 위해서만 발동되어야 한다(제31조(f)). 단 반도체기술의 경우에는 공공비상업적 사용 또는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의해 반경쟁적이라고 결정된 관행을 치유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제31조(c)) 상기 일반적인 강제실시권 보다 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소 20년이다(제33조). 우리 특허법과 비교해서 차이가 없으나(동법 제88조 참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UR협정과 발동요건 및 사용목적이 상이하므로 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동법 제8조에서는 보호기간이 배치설계의 창작일로부터 15년으로 되어 있어 법개정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특허대상과 관련, 직무발명은 일단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각국이 특별법이나 개별법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같은 시스템은 협정 발효후 4년이 경과한 뒤 추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은 특히 미생물 발명 또는 미생물을 이용한 제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전세계가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분쟁의 불씨를 안게 됐다.

물질특허제도와 관련, 우리나라는 미국의 집요한 공격으로 지난 87년 9월 韓·美 물질특허협약을 체결했고 EC와는 지난 91년 9월 각각 쌍무협약 방식으로 물질특허를 보호해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과 EC와의 물질특허 쌍무협정은 국내 미시판되고 있는 물질에 대해 선진국의 특허권리를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고 물질특허 보호공세가 가속화될 경우 의약 농약 화학분야의 국내업체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도 TRIPS협정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는 조항을 동 협정의 내용과 맞도록 개정하여 특허제도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기술개발의 성과를 신속히 보호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95년 12월 29일 특허법을 추가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³⁰⁾

30)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권의 실시의 범위를 특허발명된 물건등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전시외에 그 물건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에 까지 확대하여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제2조제1항).

둘째, 종전에는 원자행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하여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제32조).

셋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출원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5년이 경과하더라도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나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가능기간을 확대하였다(제53조).

넷째, 종전에는 특허출원후 1년 6월이 경과하여야만 출원을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원이 원하는 경우 특허출원후 1년 6월이전이라도 출원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출원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4조제1항).

다섯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공고일로부터 15년에서 출원일부터 20년

으로 하였다(제88조).

여섯째, 특허청장의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의 발동요건을 확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7조 제1항제4호).

한편 그 시행일은 1996년 7월 1일로 하고 있다(부칙 제1조). 또한,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특허사정등본 송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중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을 기재한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보정은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전에 한 보정으로 본다(부칙 제2조).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 :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특허권 및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중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존속기간이 단축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 통상실시권의 인정의 특례(부칙 제4조)는 다음과 같다. : (1)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된 경우 1995년 1월 1일전에 국내에서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실시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발명의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발명이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 이 법의 시행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당해 특허권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1995년 1월 1일전에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의 만료일부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연장되는 존속기간 동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제1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마.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7) IC 配置設計

IC 배치설계라 함은 반도체 칩이 결합되는 회로의 배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보호대상은 IC 배치설계는 물론 IC칩 및 IC칩이 내장된 최종제품까지 포함하고 있다(제36조). 협정은 이같은 배치설계, 배치설계가 결합된 IC 또는 이를 내장한 제품을 권리자의 승인 없이 상업적 목적을 위해 수입 판매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권리자로부터 침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통지(sufficient notice)를 받기 전에 선의로 구매한 반도체 칩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은 자유롭게 수입,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다. 통지 받은 후에도 통지 전에 주문한 것 또는 재고품에 대한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유로운 실시(license)를 위한 협상에 따라 지불될 수 있는 합리적 로열티(reasonable royalty such would be payable under a freely negotiated license)를 지불해야 한다(제37조제1항). 따라서 침해사실의 통지를 받고 난 후에는 불법반도체 칩을 구입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보호기간은 출원일 또는 최초의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나 창작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에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특허제도로서는 보호가 불가능했던 반도체 칩의 배치설계를 등록, 독점권을 설정해준다는 취지였고 등록대상은 법률시행일인 9월 1일 이후에 창작되는 것에 국한함으로써 이전에 창작된 배치설계는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에 집중되어 왔고 기술수준이 美·日에 못지 않아 이 부문에서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전

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5조).

자제품, 자동차용, 통신기기용의 특정용도 반도체 제작기술은 낙후되어 있어 상당히 불리해질 전망이다.

특히 IC배치설계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라이선스를 통해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로열티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가격인상요인으로 작용해 반도체칩의 생산과 수출을 저해하게 된다. 배치설계권은 반도체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대부분의 공산품에 반도체 칩이 사용되기 때문에 전자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우선 국내에서의 IC배치설계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우리 나라가 개발한 배치설계권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우리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은 강제실시권 발동요건을 제외하고는 동 협정내용과 대체로 유사하므로 큰 문제가 없다.

(8) 未公開情報의 保護

부정경쟁방지를 위하여 영업비밀 및 정부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보호한다(제39조제1항). 미공개 정보란 “영업비밀”을 지칭하는데 영업비밀은 경영전략, 기술적 노하우, 판매기법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UR협정은 영업비밀이라 함은 전체 또는 구성요소로서 비밀성을 지니고, 상업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며 보유자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경우 영업비밀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우리 나라의 영업비밀보호규정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로 되어 있다.

정부가 신규 의약품 또는 신규화학물질을 이용한 농약품의 제조허가요건으로 독성·안정성 검사 등 임상실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그와 같은 자료를 부정한 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제39조제3항). 여기서 이러한 임상실험자료를 타경쟁업자가 원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용할 수 있는 지가 “부정한 영업적 사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UR 협정 체결국은 권리자가 지적재산권을 남용해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라이선스 체결 관행 및 조건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원활한 기술이전과 기술교역을 저해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UR협상의 지적재산권 분야 전반이 선진국의 논리로 주도되고 있는데 반해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나 라이선스의 강제실시권 문제와 관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 개발도상국은 강제실시권의 도입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권리남용을 규제하고 손쉽게 선진국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권리자의 권리보호 자체를 저해해 오히려 기술이전을 주저하게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내에는 강제실시권을 공정거래법과 특허법 등에 반영해 놓고 있다.

우리 나라는 지난 88년부터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왔으며, 91년 12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92년 12월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미공개 정보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간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국내기업들의 인식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民事訴訟節次에서의 비밀정보의 보호는 우리 나라 민사소송 등의 공개의 원칙 즉, 헌법상 보장된 “공개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모순·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9) 反競爭的 行爲에 대한 措置

반경쟁적 행위의 유형을 각국법 체계내에 구체화할 수 있으며 반

경쟁적 행위의 유형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0조제2항). 우리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용에는 문제가 없다.

(10) 知的財産權 施行節次

전술한 보호기준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동협정이 기존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들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처리 및 단속절차에는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단계에서의 민·형사 및 행정절차, 가보호절차 그리고 수출입 단계에서의 세관에서 침해물품을 통관보류하는 소위 국경조치가 있다. 국내절차는 이미 우리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고(동법 제91조이하), 정부의 강력한 집행으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

국경조치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물품은 반드시 통관보류조치를 적용하고 기타 지적재산권 물품에 대해서는 임의로 적용할 수 있되 국경조치에 따른 수출입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를 두었다. 즉 특허·영업비밀·의장·반도체칩 권리를 침해한 물품에 국경조치가 발동되어 통관 보류된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수출입업자는 공탁금을 예치하고 우선 통관할 수 있다(제53조제2항 및 제55조).

우리 개정 관세법에서도 저작권, 상표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11) 紛爭豫防 및 解決節次

회원국은 분쟁예방을 위하여 자국의 법, 규정, 결정 등에 대한 명료성(transparency)을 보장해야 하며 각종 법규 및 결정 등을 공개·발간해야 한다(제63조). 지적재산권 관련 국가간 분쟁해결은 GATT 제22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며, 단 GATT 제23조제1항(b)(c)에 규정하고 있는 소위 non-violation의 경우(어떤 조치나 상황이 협정사의 의무불이행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회원국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해서는 5년간 적용을 유예한다(제64조). 예를 들면 어느 회원국이 Marlboro담배의 수입은 허용하나 광고를 금지시키는 경우가 이른바 non-violation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12) 經過期間

협정이행 준비를 위해 동협정 발효후 선진국의 경우 1년, 개발도상국의 경우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등 기본원칙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 5년동안 본 협정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제65조). GATT의 관행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여부에 관한 결정은 “자기선언(self-declaration)”에 의해 이루어지며, 다행히 우리의 경우 농산물 분야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된 바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개발도상국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동 협정이 1995년 7월에 발효될 예정이므로 우리는 2000년 7월 까지 동 협정내용을 국내법제에 수용하면 된다.

6) 通商紛爭의 새로운 要因으로서의 著作隣接權

저작인접권 보호 문제가 세계적인 통상분쟁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저작인접권은 음반제작회사와 연주가 등 2차적으로 저작행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보호권리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이 일본을 그 대상으로 하여 저작인접권의 국제기준 위반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일본을 저작인접권 위반국가로 우선 단죄한 뒤 일본과 유사한 관례를 일삼는 국가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인으로서 이 분쟁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96년 2월 9일 일본이 음반소프트웨어 저작인접권의 소급보호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양국이 앞으로 60일 이내에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WTO는 이 문제를 다룰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한다. 미국측은 제소사유서에서 “저작인접권은 50년전까지 소급하여 보호하도록 국제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5년까지만 소급해서 지난 71년 이후의 음반물에 대해서만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키 캔더 USTR 대표는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대중음악의 황금기였던 50-60년대의 음반물들이 일본에서 불법복제되어 팔리고 있으며, 수차례 일본측에 이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측의 거부로 결국 WTO에 제고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는 금년 4월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의제로 취급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미국측 제소방침이 발표되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앞으로 2주 이내에 일본 당국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 WTO에 제소

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피터 길포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1995년 3월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릴 예정인 유럽연합-아세안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이외의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도 저작권접권의 보호를 촉구할 계획”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WTO협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제소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WTO협정에는 저작권접권을 소급보호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지 구체적으로 소급기간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1993년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법을 개정하여, 저작권접권의 소급보호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한 것과는 다른 입장을 일본은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4. 우리 나라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³¹⁾

1) 우리 나라에 미치는 影響

우리의 지적재산권제도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어 TRIPs협정 내용을 이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우리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국제수준으로 제고함으로써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의 신기술, 상품을 이제는 후발개발도상국들이 모방하여 우리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는 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이 마련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강력한 대처도 가능하다.

한편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강화로 인한 실시료(royalty)지급의

31) 권영수, “지적재산권” 우루과이라운드협정 분야별 내용과 영향, 한국무역협회, 1994. 1, 85면이하.

증가로 우리 기업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관리자가 강력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한 불공정거래, 경쟁제한적 영업행위의 가능성도 있어 협상력이 미약한 국내업자에게 다소의 부담을 줄 수 있다.

2) 우리의 對應方案

정부는 최종 협정문안이 제시된 1991년 12월이래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여 협정 내용을 이미 상당부분 반영하였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우리의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밖에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강화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수준 향상을 한 노력이 요청된다.

기업도 TRIPs협정 및 우리 나라의 지적재산권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대외무역법 등을 숙지하여, 외국 권리자의 권리남용 및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진국의 고도기술을 단순히 모방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상업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동종기업간에 특허기술의 공동사용(patent pooling)을 촉진하여 기술정보공유, 공동개발, 공동소유를 통해 외국기업의 기술공세에 대처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V. 技術障壁問題³²⁾

1. 概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Standard),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제도(Inspection System)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기술적 표준화는 국제교역의 규제보다는 활성화에 근본취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반대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표준화의 기준이 기술선진국들이나 경제블력이 원하는 수준과 원칙에서 결정됨으로써 기술후진국들로서는 기술적 어려움은 물론 상당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나름대로 표준이나 기술규정의 설정과 함께 자국에서 유통되는 상품이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다양한 판정절차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강제적 절차로서 어떤 상품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지 못하면 그 상품의 생산 및 유통이 어려워지게 된다.

각국별로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오던 표준화는 세계무역의 확대와 함께 국제적 표준화의 필요성으로 연결되었으며 실제로 국제적인 표준화의 노력은 이미 많은 국제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각각 非전기 및

32) 서창수, “기술장벽” 우루과이라운드협정 분야별 내용과 영향, 한국무역협회, 1994. 1, 272면 이하.

전기분야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서 국제표준의 약 85% 정도를 이 두 기구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제기구들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편적인 국제표준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한 나라의 표준이 무역상의 기술장벽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도 모호한 형편이다.

더구나 보호주의 물결에 편승하여 기술장벽들의 형태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며 더구나 이러한 표준화제도들이 지금까지는 최종제품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공정 및 생산방법(PPMs :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등에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GATT의 다자간협상의제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UR협상의 결과는 각국의 기준과 명세가 워낙 다양하고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국제표준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정도를 제고하고 서로의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이를 인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수준에서 일단락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기술표준에 대한 논의는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EC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techno-bloc)의 강력한 유인이 될 위험도 있다.

예를 들어 EC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은 국가표준인 DIN, NF, BS를 각각 독자적으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제품시방이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르며 따라서 각국의 제조업자가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대수출국의 공업표준에 각각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각국의 공업표준의 상이성은 수출제품 제조가격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수입제한적 효과를 낳기 때문에 잠정적인 기술장벽이 되며, 또한 특정국가가 각종 표준·기술규정·인증 및 검사제도 등을 국가별로 또는 내·외국인간에 차별적으로 까다롭게 운영할 경우 이는 수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무역장벽이 되는 것이다.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표준협정이라고도 불리는 무역관련 기술장벽협정(TBT 협정)의 요체는 기술표준이나 기술규정 및 인증체제가 불필요하게 교육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각국이 이들을 제정할 때 가능하면 해당 국제 표준을 따르도록 하고 그 내용을 GATT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TBT협정에 대한 기술선진국의 관심은 이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기술장벽을 자국의 수입규제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반면 다자간에 기술장벽의 제거를 통한 외국의 시장개방의 확대로 규모의 경제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기술표준이나 인증은 주로 어떤 상품의 형태·치수·기능 등과 같은 기술적 특성을 상품시장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BT협정은 UR/MTN협정 협상그룹이 Tokyo Round에서 체결한 14개 상품분야 협정들중의 하나이다. 이번 UR에서 쟁점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주요쟁점부분은 다음과 같다. 비정부 표준기구에 대한 TBT적용확대, 교역상 중요물품에 대한 임의규격도 GATT통보, TBT통보문(Notification)관련 질의 및 답변 문서 및 자료는 GATT공용어(영어, 불어, 스페인어)중의 하나로 할 것과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정의를 협정상 명문화하여 공정 및 생산방법을 이용한 무역장벽 구축을 방지할 것을 들고 있다.

2. TBT協定文의 主要內容

1) 技術規定 및 標準

국제표준과 인증제도가 생산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국제무역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 동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되 이들 제도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技術規定 및 標準의 採擇

체약국(TBT협정 가입국)들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이나 국제기술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 자국의 기후조건, 지리적 요인, 국가안보, 보건, 위생, 환경보호 등의 요인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

특정 체약국이 기술규정과 표준을 제정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국제표준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지 아니한 경우로서 타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이 숙지할 수 있도록 간행물에 공표하고 WTO사무국을 통하여 타체약국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안보, 보건, 환경보호상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국들은 기술규정의 공표와 실제 적용사이에 합리적인 시차를 둬으로써 수출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수출업자가 생산방법 또는 제품을 수입국의 요건에 맞출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技術規定 및 標準의 適用

수입상품의 검사, 조건, 방법, 행정절차 및 수수료에 있어서도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토록 하여 정정조치가 가능토록 보장하여야 한다. 체약국들은 가능한 한 타체약국 영토내에 있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시험결과나 인증서 또는 타체약국 생산자가 발행한 자기인증서를 인정하여야 한다.

4) 認證制度

인증제도는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어서는 안되며, 내국 민대우 및 무차별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체약국들은 채택하려는 인증제도를 공표하고 WTO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타체약국에 해당 제도에 관한 내용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5) 情報 및 技術支援

모든 체약국들은 자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이 제안하였거나 채택한 기술규정, 표준, 인증제도에 대하여 타체약국이 질의할 경우 이에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1개이상의 질의처 (Equity Point)를 두어야 한다. WTO사무국에 대한 통보(서)는 영어·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하여야 한다. 체약국들은 개발도상국의 국가표준기구 설립이나 국제표준기구에의 참여에 대하여 조언을 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6) 開發途上國 優待條項

체약국들은 기술규정, 표준, 검사 및 인증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개발, 재정, 무역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의 수출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록 국제표준이 있다하더라도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기술적, 사회적 조건과 개발 필요성에 따라 그들의 토착기술과 생산방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개발도상국의 개발, 재정적 필요 및 무역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제표준을 사용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체약국들은 기술규정, 표준, 검사 및 인증제도가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와 시장다변화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7) 紛爭解決

TBT협정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분쟁은 DSB(분쟁해결기구 : Dispute Settlement Body)에 통고하여 해결한다.

3. UR協商 妥結以後 달라진 것

1) PPMs의 認定

표준(Standards) 및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의 개념을 제품성능(Performance) 위주에서 생산 및 공정방법(PPMs : Production and Process Method)까지로 확대하였다. 즉 앞으로는 제품의 생산 및 공정방법도 TBT협정의 규제를 받게 되어 필요시 WTO사무국에 통보하거나 WTO규범 위반시 제소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

2) 商品에 대한 公正慣行規約의 新設

종전에는 TBT협정을 각국의 중앙정부에만 적용해 왔으나, 금번 UR협상에서는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관한 공정관행규약”을 신설하여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표준의 제정, 채택 및 적용을 금지하는 등의 의무규정을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을 막론하고 규격 제정을 담당하는 모든 표준화기관에 적용토록 TBT협정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3) 資料提供時의 使用言語

표준 및 기술규정 관련 자료에 대한 외국의 자료요구시 이에 대한 답변자료 제공시에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 선진국은 반드시 GATT공용어인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의 하나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의무사항에서 제외되어 자국어로 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었다. 우리의 경우 통보문은 영어로, 기타 관련규정·자료송부·답변 등은 한글로 하고 있다.

4) 體制의 改編 및 強化

GATT사무국을 WTO(세계무역기구)사무국으로 명칭변경하고 기존의 GATT의 모든 행정기능을 WTO에 이관함으로써 TBT협정의 준수 의무를 모든 WTO가입국에까지 확대하였으며, 분쟁발생시에도 TBT협정과 관련한 종전의 권고수준에서 벗어나 WTO체제내에서의 제도적 개선명령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체제로 개편되었다.

4. TBT協定에 의한 義務와 權利

1) 義務事項(WTO協定에 가입한 國家間에만 適用)

(1) 無差別原則

포장요건, 표시요건, 라벨링요건 및 인증절차(제도)를 준비, 채택 및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국가별로 차별을 두거나 내국인과 비교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2) 國際附合化의 義務

표준(규격), 기술규정 및 인증제도를 준비, 제정, 채택 및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그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여야 한다.

(3) 通報(Notification)의 義務

표준(규격), 기술규정 및 인증제도의 준비, 제정, 개정 및 수정시 이것이 타국과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비단계에서 WTO사무국을 통하여 모든 회원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최소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관련국가 또는 업체가 의견제시 및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접수된 의견은 상호협약하에 반영토록 한다.

(4) 情報·答辯의 提供 및 質疑處 設置의 義務

자국의 표준(규격), 기술규정 및 인증관련 규정, 절차 및 제도에 대한 타국의 정보문의 및 질의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성실히 답변할 의무 즉, 답변기능을 전담할 질의처를 자국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2) 權利事項

(1) 情報要求의 權利

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타국의 표준(규격), 기술규정 및 인증관련 규정, 절차 및 제도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다. 정보요구의 권리는 질의처 및 이해당사자(제품의 수입, 수출 및 판매 등에 관련된 개인, 업체 및 단체 등) 모두에게 있으며, 이들은 해당국가 질의처에 직접 정보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意見提示 및 協商要求의 權利

WTO협정을 비준한 당사국이 표준, 기술규정, 인증제도를 까다롭게 설정하여 수입을 제한하거나 국가별로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자국인에 대해서만 우대조치를 하는 등 TBT협정을 위반할 경우, 그 피해를 입은 국가, 즉 무역상의 이익에 손상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는 상대국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쌍무협상에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提訴 및 紛爭解決請求權

상대국이 정보제공 요청 또는 협상요구를 거절하거나 또는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DSB(분쟁해결기구)에 분쟁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5. 우리나라의 TBT協定 運營現況 및 向後 運營計劃

1) 우리나라의 TBT協定 運營現況

(1) 質疑處(Enquiry Point) 運營現況

우리나라는 TBT협정에 따라 분야별로 3개의 질의처를 운영중이

다. 공산품은 공업진흥청(표준국), 농산품은 국립농산물검사소, 수산품은 국립수산물검사소에서 질의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94년 1월에는 보사부를 보건 및 위생관련 질의처로 추가지정하기 보사부와 외무부가 협의중에 있다.

(2) 技術規定의 事前通報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규격 및 규정안을 GATT에 통보해 주고 있으며, 특히 1993년 1월 1일부로 국무총리 훈령 제268호인 “표준 등 기술규정의 통보절차에 관한 훈령”을 발동하여 각 부처별로 제정하는 기술규정이 타국과의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무부를 통하여 GATT에 통보해 오고 있으며 경제기획원이 감독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통보활동을 감독하고 있다.

1993년에는 공업진흥청 및 보사부, 농림수산부, 체신부 등에서 각종 규정이 제·개정안 총 26건을 GATT에 통보한 바 있다.

(3) TBT Committee(TBT委員會 ; 貿易에 대한 技術障壁委員會)活動參與

매년 1~2회 개최되는 TBT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여 각국의 TBT 협정운영실태를 검토하고 질의처 활동방침 등을 논의해오고 있다.

2) 工業振興廳의 TBT關聯 活動

(1) 活動現況 - 工產品에 관한 大韓民國 質疑處 業務遂行

① 각국의 TBT Notification(통보문) 보급

각회원국이 1~2페이지로 된 통보문양식에 따라 WTO사무국에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자국의 규격·기술규정안을 통보하면 WTO사무국은 이를 취합하여 즉시 전회원국에 배포하고, 당 청에서는 이러한 통보문을 접수하여 관계부처 및 한국표준협회 등 국내관련기관에 배포한다.

② TBT 통보문 번역 및 홍보

각국의 통보문을 번역하여 무역협회 “일간무역” 및 한국표준협회의 “표준화” 지에 수록, 관련업계가 타국의 규격 및 기술규정 제·개정 사실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대외 정보요구 및 수집정보의 국내보급

국내이해관련 부처 및 업계로부터 외국의 주요 규격 및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 및 자료요청, 의견제시, 이의제기 등을 접수, 관련국가의 질의처에 이를 요구하여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국내에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내업체 및 기관으로부터 의견제시가 있을 경우 상대국이 우리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요구하여 국내 관련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④ 외국의 질의·의견에 대한 답변제공

우리나라의 제반표준 및 기술규정, 인증절차 등에 대한 타회원국의 질의처 또는 그 나라의 기관·업체·개인으로부터의 제반질의 및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국내관계부처, 업계와 협의하여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2) 技術規定案의 GATT通報

국제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규격 및 규정안을 GATT에 통보해 오고 있으며, 1993년도에는 “전기용품의 표시규

정 개정안”등 6건의 기술규정안을 GATT에 사전통보하여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처리한 바 있다.

(3) 貿易技術障壁 關聯 弘報 및 敎育

TBT협정의 운용현황, 의무 및 권리사항, 협정의 활용방법 등에 관한 책자발간 및 수시교육을 통하여 국내관계부처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업계에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TBT협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 오고 있다.

3) 向後 運營計劃

(1) 質疑處 運用의 效率化

공산품에 관한 질의처로서 보다 국내기관 및 업체에 대하여 보다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외국으로부터의 질의 및 자료요구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국내 관련업체 및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질의를 적극화하고 수집정보의 대내보급을 강화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신속한 국제화 태세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2) 技術規定의 WTO通報 履行을 위한 有機的 協助體制 構築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의 미통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무역마찰을 사전에 최소화 내지 제거함으로써 원활한 국제교역 및 이를 통한 국가 상호간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공산품관련제도 및 기술규정 제정 및 개정시 통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부서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3) 貿易技術障壁委員會(TBT Committee)活動에의 積極的 參與

TBT협정의 내용 및 각국의 이행상황 점검 등을 책임지고 있는 WTO의 무역기술장벽위원회 활동에의 참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매년 1-2회 이상 개최되는 TBT위원회 회의에 전문가 및 담당관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TBT협정의 개정협상 및 동협정의 제반운용 문제협의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 技術標準으로의 國際的 흐름³³⁾

최근에는 UR TBT협정이 최종상품에 대한 표준화에 더하여 공정 및 생산방법(PPMs)자체를 인증대상으로 하는 등 기술표준의 영역을 점차 확대 강화하고 있다. 이는 품질시스템 인증제도의 도입을 의미하며 어떤 기업이 ISO 9000시리즈라고 하는 국제품질보증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국내시장에서는 물론 외국으로의 상품수출도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된다.

PPMs의 ISO 9000인증체제는 대부분의 경우 시험검사 또는 품질인증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기술선진국들이 시행하며, 또한 시스템표준도 국제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술후발국에게는 PPMs는 자칫 넘기 어려운 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같은 기술표준의 ISO 9000에 의한 PPMs인증은 제조업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호텔, 병원, 관광 등 서비스산업은 물론 소프트웨어, 1차산업상품에 까지 확대되어 이와 관련된 기술장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위생, 환경, 안전, 소비자보호 등 국가의

33) 손찬현, 전계논문, 32면.

공공이익에 관련된 분야는 기술적 요건을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기술표준은 물론 강제적으로 인증의무를 채택하고 있어 PPMs에 대한 품질인정획득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술후진국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기술선진국들이 PPMs인증시스템이나 공공이익분야의 강제적 기술규정을 활용하여 후발기술국들을 견제하거나 그들과 기술격차를 조율하려는 것이다.

한편 그 동안 ISO 9000시리즈에 따라 PPMs품질인증체제의 구체적 표준화를 추진하여 온 움직임은 최근들어 환경문제의 기술적 중요성의 인식과 함께 환경경영 및 환경감사에 관한 표준화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자문기구인 SAGE(환경에 대한 전략적 자문그룹)는 환경에 대해서도 ISO 9000과 같은 PPMS 인증체도를 적용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환경관리체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TC 207로 불리우는 환경경영기술위원회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등 환경부문의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표준을 도입하기 위하여 일명 ISO 18000시리즈를 제정하고자 한다. ISO 18000은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환경경영의 표준화로 기업들의 자율적인 환경보호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출발하고 있으나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기술선진국들이 환경기술이 낮은 국가로부터 수입을 억제하는 등 또 다른 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선진국의 견제로 수출은 물론 국내 생산자체도 불가능할 수 있어 특히 환경관련 표준화작업이 주로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환경규제가 매우 심한 국가들에 의해 ISO 18000시리즈가 자칫 강제인증체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기술후진국들은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예를 들어 상품 A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조방법이나 공정이 B와

C의 2가지가 있고 B가 C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더욱 심한 경우를 상상해보자. 또한 기술선진국들은 환경오염이 적은 신기술인 C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술후발국들은 기술력의 부족이나 또는 특허로 등록되어 사용에 따른 비용이 커서 C를 사용하지 못하고 환경오염이 심한 B공정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만약 기술선진국이 제품 A의 생산을 위한 환경경영을 공정C로 제한하게 되면 공정 B로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후발국들은 이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는 국내 생산자 체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환경경영표준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 건설업 등은 모든 산업활동조직(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에 대해 환경관리체제가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공인된 환경표준인증기관에서 심사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환경경영표준화가 다른 표준화와 다른 점은 ISO 9000시리즈가 제품이나 생산공정에 대해 인증하는 것과는 달리 기업체 단위로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표준화가 시행되면 개별제품의 인증여부나 PPMs에 대한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자체가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기업 E의 제품 X, Y, Z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자. 기업 E가 환경경영표준을 인증받지 못하고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 X, Y는 환경에 적합한 생산공정을 인증받고 있다고 하고 Z만이 그렇지 못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기업 E는 Z를 수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환경친화적 공정에 따른 제품인 X, Y조차도 수출하지 못하는 즉 자사의 모든 제품을 무조건적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처럼 환경경영표준화가 기술전쟁을 가속시키고 있음에 따라 미국, EU, 일본 등의 대부분 주요 선진국들은 기술표준이 향후의 중요한 TR과제로 보고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VI. 知的財産權에 관한 通商紛爭의 解決

1. WIPO體制下에서의 紛爭解決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WIPO체제의 문제점의 하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WIPO관할의 23개 조약 가운데 9개의 조약만이 분쟁해결 및 조약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9개의 조약 가운데 반도체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조약만이 협의, 주선, 조정, 중재, 패널절차 등의 상세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8개 조약은 분쟁해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되고 있다.³⁴⁾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하고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심체제가 GATT로 이관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맥락에서, WIPO는 “국가간 지적소유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a Committee of Experts on the Settl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between States)”를 구성하였고 동 위원회는 현재까지 5회에 걸친 회의를 하여 “국가간지적소유권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약(안)”을 준비한 바 있다.

동 조약안의 특징은 협의, 주선, 조정, 중재, 패널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의 상세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특히 분쟁해결의 지연을 방지하는데 많은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동 조약안은 협의(consultation)에 관한 규정에서 협의 요청의 방식과 그에 대한 답변 및 통지 등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특히 어느 분쟁당

34) 송상현, 전제논문, 25면.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사국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상대방 분쟁당사국이 최소한 3개월이 내에 협의에 응해야 하도록 시한을 정해두고 있다. 그러한 시한이 내에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협의는 개시되었지만 6개월 이내에 협의에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패널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의도적 지연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조약안은 협의절차 이외에, 제3자의 개입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으로서 결정 주선·조정·중개(good offices·conciliation·mediation)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조약안에서 가장 중요한 분쟁해결절차의 하나로 패널절차(panel procedure)를 들 수 있다. 패널위원의 지명에 있어서도 지연 방지를 위한 고려를 하고 있는 바, 2개월 또는 합의된 시한내에 분쟁당사국들에 의하여 지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WIPO총장에 의하여 지명된다. 지명된 패널위원들은 분쟁을 심리하고, 분쟁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권고를 내용으로 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보고서 채택은 제1회 회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분쟁당사국들에게 구술변론과 서면제출 등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고 특히 주목되는 점은 분쟁의 근거가 되는 WIPO조약의 다른 체약국들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과 패널보고서가 총회에서 회원국들에게 공개될 뿐이고 패널보고서의 권고내용의 불이행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결의할 수는 없다고 하는 점이다.

즉, 보복조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패널보고서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회원국들에게 공개하고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과거의 선례를 보면, 예컨대 미국과 유럽간의 소위 닭고기 전쟁에서와 같이, 보복의 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전혀 무관한 제3의 상품에 대한 보복도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보복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심각한 무역전쟁을

초래할 위험마저 내포되어 있었다.³⁵⁾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도 특정 지적재산권 상품의 보호위반을 이유로 하여 지적재산권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상품에 관한 보복을 할 가능성이 많아서 문제되는 바, 조약안은 보고서가 보복조치를 내용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총회가 보고서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보복조치 등의 제재를 가하거나 승인할 수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오직 조약안은 총회에 의한 의견교환이라고 하는 국제적 감시와 간접적 압력에 의하여 위반국이 자발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³⁶⁾

2. UR協定上의 紛爭解決

UR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 자체에 관한 규정 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의 이행확보 및 국가간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회원국간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령과 판결 또는 행정처분은 발간하거나 자국어로 공표하여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UR체약국 사이에 체결된 지적재산권 관련 쌍방조약 등도 공표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UR협정 체약국들은 “통상관련 지적소유권위원회(the Council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대하여 자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통지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다만, 동 위원회가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등록에 관한 공동기구의 설치가 이루어지면 체약국의 동 위원회에의 법령통지의무는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5) Herman Walker, “Dispute Settlement : The Chicken War”, 58 Amer. J. of Int'l L., 1964, p.671.

36) 송상현, 전계논문, 26면.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사후적인 분쟁의 해결에 관한 절차로서는 UR 최종안도 GATT 분쟁해결 절차와 그에 따른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협정(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Articles XXII and XXIII of the GATT)”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이른바 “다자간무역기구의 설치에 관한 협약하의 통합적 분쟁해결 협정(The Integrated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under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이 마련됨에 따라서 많은 수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2년에 마련된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협정(안)”에 의하면, 분쟁 당사국의 신청에 의하여 소위 “분쟁해결위원회(Dispute Settlement Body)”가 패널을 구성하고, 분쟁당사국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패널이 구성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보고서가 마련되어야 하며 패널보고에 대한 재심절차(Appeals)와 권고내용의 이행여부에 관한 감시 등의 상세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 점에서, GATT체제내에서 통상문제로서의 지적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는 다소 엄격한 사법적 해결을 하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³⁷⁾

VII. 向後 對策³⁸⁾

UR이후 신국제경제질서로서 5년 내지 10년 사이에 대두될 수 있는 TR은 현재의 UR협정문 중 기술관련 협정보다 더욱 더 엄격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먼저 UR협정문에서 나타난 내용에 대하

37) 상계논문, 27면.

38)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과학기술부문의 세계화과제, 정책자료 94-12 38면 이하.

여 정부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TR이 어떤 형태의 국제기술규범으로 정착될지라도 우리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을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TO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있고 앞으로 OECD가입을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는 “공급 및 지원확대 중심의 후발국형”에서 “투명성 및 단순성제고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지원제도의 투명성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를 통해 지원대상의 특정성을 배제하고 지역적 분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는 학계·연구계·민간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하고 지원대상의 분산은 특정지역의 대기업중심에서 전국을 범위로 하는 기술중심형 분산을 의미하고 연구성과는 공공차원의 지적재산권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지원방법의 다양화와 동시에 지원제도의 종류를 단순화시키고 지원대상을 해외현지연구소 및 국제콘소시엄형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단순화란 수십종에 이르는 지원제도를 통폐합하여 개발단계별로 단일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조세감면의 부문도 단순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진형 지원방법으로 시장원리와 전문성을 토대로 한 기술개발전문금융기관 기술개발보험업체를 육성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지적재산권 및 표준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투자재원의 확보로는 외국기업의 기술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국내/국의 협력기금 연구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기관설치하고 기업내 기술관리부서설치를 의무화하고 심사처리규정을 단순화하여 기간을 단축하도록 한다.

정부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기술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재조정되

第3章 TR의 展開와 對應

어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기술의 경제적 기회의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차별적 진입규제는 유지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와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의 과학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첨단기술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간의 경쟁과 협력이 선진국의 보호장벽으로 인해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WTO체제하에서는 산업의 기반연구의 경우 총연구비의 75%, 상업화 이전의 개발의 경우 50%이내의 범위로 정부보조금을 제한하는 등 정부개입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조항이 있다. 그러나 인력양성의 지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약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높여야 할 것이다.

단기간에 세계수준으로 연구개발인력을 국내에서 양성,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해외의 우수한 한국인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TR에서도 연구개발인력의 자유로운 이동보장이 논의될 전망이다라는 점에서 국경이 지니는 물리적 이동의 제한성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인력의 유치자금을 확보와 장기체류시 발생할 현지생활의 동화, 국내기술수준의 저급성, 생활여건의 미성숙과 해외인력의 관리능력 미흡과 같은 국내수용태세의 미비 등 제약요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第4章

環境技術と 國際通商

第4章 環境技術과 國際通商

I. Rio環境會議와 環境技術開發 및 利用의 活性化

환경보호 또는 오염규제에 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들이 그러한 오염의 희생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시도되어 왔으나, 이러한 손해배상을 받는데에는 입증책임의 어려움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으며 또한 대규모의 오염의 경우에도 오염희생자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오염희생자들이 자신의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한 소송제기 등의 분쟁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때가 많다.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입증책임의 어려움 또는 동질적인 다수의 오염희생자들에 의해 제기된 분쟁해결에 수반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장벽이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손해배상 그 자체가 환경오염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보다 철저한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구상에 이미 배출된 오염 자체를 제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손해배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오염 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손해배상액보다 적은 경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피하게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른바 환경세 등의 세금으로 부과하거나 오염배출허용장(discharging allowance permit)을³⁹⁾ 교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각 기업에게 그러한 환경

39) 예컨대 42 U.S.C. §7473 내지 §7475.

세를 내거나 오염방지기술을 개발하거나 구입하는 등의 투자를 하도록 강요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⁴⁰⁾

이러한 손해배상제도 또는 환경세제도 등의 간접적 오염규제제도가 도입된다 할지라도, 오염방지를 위한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손해배상 또는 환경세 등의 비용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오염방지를 위한 투자보다는 오염을 계속 배출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선진국의 관련기술수준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호의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관련 기술을 도입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거나 그러한 기술을 아예 입수할 수 없을 수도 있어서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의 낙후성이 환경보호에 있어서 절대적인 장벽이 되고 있다.

또한 1992년 6월 Rio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에서 선진국들은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af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강조하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보호를 요구한 바 있고,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의 환경보호 여부를 통상문제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환경보호를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 및 이용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Rio환경개발회의에서 기술이전 및 협력에 관하여 이루어진 합의내용을⁴¹⁾ 중심으로 이른바 환경기술 개발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9) 예컨대 42 U.S.C. §7473 내지 §7475.

40) Richard A. Posner, *Economic Analysis of Law*,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77, pp.279~280.

41)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at Rio de Janeiro, Agenda 21, Chapter 34,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Cooperation and Capacity-Building”(이하에서는 Rio환경회의의 Agenda 21이라 한다).

II. 環境技術의 概念

1. Rio環境會議에서의 概念

환경기술의 개념에 대하여 Rio환경회의에서는 “이미 발생한 오염의 제거 또는 쓰레기의 재생 또는 기타의 사후 관리에 관한 기술뿐만 아니라 오염이나 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 즉,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이라고 파악하였다.⁴²⁾

2. 우리 나라 法令上の 概念

우리 나라도 1994년 12월 12일 법률 제4830의 환경기술개발및 지원에관한법률, 1995년 6월 1일 대통령령 제14657호 환경기술 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6월 10일 환경부령 제1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환경기술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환경오염방지기술·지구환경보전기술·폐기물처리·재활용기술, 환경보전·생태관리기술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에 의하면 환경처 장관은 10년마다 장기환경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42) Rio환경회의 Agenda 21, Para. 34.3.

Ⅲ. 知的財産權法에 의한 環境技術의 保護

1. 特許法 等に 의한 環境技術關聯 發明의 促進

환경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각종 지적재산권법도 환경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법제도임에 틀림없다. 특히 특허제도는 특허대상인 “발명”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하에 특허권이라고 하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발명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환경기술을 개발한 자가 자신의 환경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제도의 하나이다.

특허권이라고 하는 배타적 권리가 효율적인 경제적 인센티브가 되어서 환경기술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 발명자들은 환경기술의 연구 개발에 과감히 많은 노력과 자본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 특허받을 권리를 가진 자는 특허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대가로서 자신의 특허발명이 특허공보를 통하여 일반국민에 널리 알려지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일반국민은 특허발명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기존의 발명특허보다 더 개량된 기술을 개발하도록 창조적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허제도는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노력과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될 뿐만 아니라 환경기술정보를 일반공중에게 조기에 공개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보급·전파에 상당히 효율적인 법적 환경을 마련하여 줄 수 있는 것이다.⁴³⁾

43) William R. Cornish, Intellectual Property : Patents, Copyright,

또한 중소기업 등에 의한 조그만 발명에 관하여는 실용신안제도가 활용될 수 있고, 특허제도와 밀접히 관련된 제도로서 1991년 말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보호제도일 것이다. 종전까지의 불명확한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응용에 관한 영업비밀도 그의 보호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었다.

2. 環境技術關聯 發明에 관한 優先審査

환경기술관련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여도 즉시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출원이 있는 후 특허청에 의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고 심사가 지연되면 최종적으로 특허등록을 하기까지는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우리 나라 특허법은 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중복연구 또는 중복투자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출원발명을 심사하지 않고 일정기간내에 심사청구된 출원만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청구가 있으면 특허청은 심사청구된 순서에 따라서 출원발명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특허청장은 긴급처리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특허출원발명이 있으면 그러한 출원발명을 다른 출원발명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이른 바 우선심사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긴급처리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발명 가운데는 방위산업분야의 출원발명과 함께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발명”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기술관련 발명을 한 자는 특허출원을 한 후 곧이어 환경처 장관의 우선심사추천을 받아서 특허청장에게 우선심사의 신청을 함으로써, 되도록 신속하게 특허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⁴⁴⁾

Trade and Allied Rights, London, Sweet & Maxwell, 1990, p.17.

44) 특허법 제59조제1항, 특허법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특허법시행규칙 제38조.

IV. 環境技術利用의 活性化

1. 環境技術利用의 活性化를 위한 前提條件

앞에서 환경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법제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특히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의 하나로서 특허법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경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어떠한 특허발명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기술의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거나 그 이용율이 저조할 것이다.

여기에서 환경기술에 관한 정보를 일반 공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전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기술에 관한 정보가 일반공중에게 널리 접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기술에 관련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근거로 하여 다른 사람이 특허등록된 환경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면,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이 환경기술의 이용에 중대한 장벽이 될 뿐이고 특허등록된 환경기술발명이 사회 전체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⁴⁵⁾ 따라서 특허권자 등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허권 등의 보호대상인 환경기술의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환경기술의 이용활성화라 함은 구체적으로 환경기술의 양도와 이용허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환경기술의 양도와 이용허락이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포함함은 물론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환경기술의 수준이 비교적 낙후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45) Rio환경회의의 Agenda 21, Para. 34.11.

선진국의 환경기술을 도입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데, 외국의 환경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요건에 따라야 한다. 예컨대, 외국의 환경기술의 도입으로 임하여 외국당사자가 우리 나라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자도입법에 따른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고, 환경기술도입에 관한 국제계약이 독점규제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되고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에 관한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⁴⁶⁾

환경기술의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사항은 외국환경기술의 도입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가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나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사업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종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국민경제에 긴요하고 국내에서 독자적 개발이 곤란한 고도 기술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술의 도입대가에 대하여 조세가 면제된다. 이러한 고도 기술에는 환경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면제대상인 환경기술로 열거된 것은 (1) 대기오염물질저감기술, (2) 수질오염물질처리기술, (3) 폐기물처리기술, (4) 석유분해, 탈황 및 개질시설 및 (4) 유할기유 및 윤활유정제로 되어 있다.⁴⁷⁾

2. 環境技術情報에의 接近 擴大

1) 環境技術情報의 重要性

환경기술의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환경기술관련 정보를 널리 일반공중에게 전파 보급한다는 것은 환경기술 자체에 관한 정

46) 외자도입법 제2조제4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2조.

47) 외자도입법시행령 제24조의2 ;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재무부고시 제 91-21호).

보뿐만 아니라 특정기술이나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그리고 환경기술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와 그러한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경기술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노하우 등에 관한 정보 및 더 나아가 환경기술에 관한 전문가 또는 기술자 등에 관한 정보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보를 포함하여 말한다. 이와 같이 넓은 의미의 환경기술 정보가 일반공중에게 신속히 보급되는 경우에 비로소 환경기술이용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기술의 활성화에 있어서 환경기술정보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Rio환경회의에서도 개발도상국이 환경기술과 관련 기술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고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합의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환경기술의 수준은 낙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취득하여야 할 기술 정보 가운데는 특허권 취득대상이 아닌 선진국에서의 선행의 공지 및 공용 기술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선행 기술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술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노하우에 관한 정보도 취득하여야 할 것이다.⁴⁸⁾

2) 環境技術情報網의 必要性

개발도상국이 보다 용이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환경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Rio환경회의는 그러한 기술정보의 국내적·지역적 또는 국제적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기술정보망이 국제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의 농업·공업·자원·에너지 등에 관한 정보센

48) Rio환경회의의 Agenda 21, Para. 34.9 및 34.14.

터나 관련 물자집배센터 등을 국제적인 규모로 연결하고 나아가서 각국 특허청의 환경기술관련 특허발명에 관한 정보를 국제적인 규모로 연결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환경기술정보망 또는 환경기술정보유통센터는 최종 정보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도록 한다. 물론 이러한 환경기술정보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는 관련기업, 각종 업계조합, 각종 민간기구, 각국 정부, 기타 관련단체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⁴⁹⁾

이러한 환경기술정보센터는 환경보호기술이 개발된 구체적 사례와 그러한 환경기술이 적용 및 실시된 구체적 사례를 널리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환경기술전파를 위하여 환경기술정보센터는 환경보호기술정보 자체의 제공뿐만 아니라 기타의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도 제공하여야 할 것인 바, 예컨대, 관련된 기술정보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나 관련된 기술에 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적절한 기술평가 등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에 관한 정보까지도 제공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⁵⁰⁾ 이러한 정보의 종합적 서비스의 도움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환경기술의 이전 및 전파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합작투자 또는 기업협동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다.⁵¹⁾

국제적인 규모의 환경기술정보망을 형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지역 또는 국제적인 기술정보센터나 정보망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국제적인 정보망의 형성은 관련 국제연합기구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의 정보망 또는 정보센터를 확대하거나 신설

49) Rio환경회의 Agenda 21, Para. 34.15.

50) 미국의 오염방지법(42 U.S.C.)도 §13105에서 유사한 정보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51) Rio환경회의 Agenda 21, Para. 34.16.

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⁵²⁾

3) 環境技術利用 强制의 必要性

일반 공유의 환경기술이 아니고 특정 개인의 소유에 속하는 환경기술의 이전 및 이용의 활성화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그러한 개인의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환경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되도록 합리적인 조건으로 필요한 환경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기술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러한 개인 소유의 환경기술의 실시허여계약 등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그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며 동시에 개인 소유의 환경기술의 이전 및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기타의 지원 또는 장려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⁵³⁾

환경기술의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Rio환경회의에서 특기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는 환경기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제안된 지적재산권 남용 규제를 위한 제도로서는 적절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을 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대상기술을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이른바 강제실시허여제도이다. Rio환경회의는 더 나아가서 선진국 등과 같이 지적재산권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환경기술이 개발도상국에 이전되거나 이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기타의 지원과 장려를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⁵⁴⁾

52) Rio환경회의 Agenda 21, Para. 34.17.

53) Rio환경회의 Agenda 21, Para. 34.18(d).

54) Rio환경회의 Agenda 21, Para. 34.18(e).

Rio환경회의는 동시에 “일반공유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IN THE PUBLIC DOMAIN)”의 이전의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⁵⁵⁾ 그런데, 환경기술은 말 그대로 일반 공유이기 때문에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Rio환경회의에서의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그러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최종 소비자에 의하여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도에서는 Rio환경회의는 당연한 사실을 제안하고 있을 뿐이고 실속 있는 내용이나 발전이 없는 회의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Rio환경회의의 결실이라고 한다면 지적재산권에 의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는 환경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환경기술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의 이용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일반 공유의 환경기술도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기술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Rio 환경회의에서 제안된 환경기술의 이용활성화방안의 근저에 존재하는 기본원칙의 하나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면서 환경기술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이고 이러한 견지에서 특허권의 배타적 권리로서의 본질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⁵⁶⁾

55) Rio환경회의의 Agenda 21, Para. 34.18(a).

56) Rio환경회의의 Agenda 21, Para. 34.18(e).

V. 强制實施許與制度의 援用

1. 우리 나라의 强制實施許與制度

환경기술에 관한 이용강제로서 중요한 제도는 상표법이나 기타의 지적재산권법보다도 특허법에 따른 강제실시허여제도이므로 그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우리 나라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을 실시(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우리 나라에 특허등록을 하여 배타적 권리를 가진 채 특허발명의 실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부여의 사회적 목적이 전혀 실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특허등록된 발명기술의 사회적 활용이 억제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나라 특허법에 의하면 그러한 경우에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협의를 청구한 후에 그러한 협의를 성립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裁定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특허청장은 일정한 대가 즉, 실시료(royalty)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범위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재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법 규정에 따라서 환경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환경기술 특허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 특허법은 일반적으로 특허발명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 통상실시권을 재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익의 견지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통상실시권 허락의 재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지만, 환경기술 가운데 환경보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환경기술은 공익의 견지에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위한 재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3년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익의 견지에서 필요한 경우에 특허청장의 재정에 의하여 허락된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강제실시허여의 하나라고 본다.

다만, 우리 나라에서 위와 같은 강제실시허여제도가 실제로 원용된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강제실시권제도가 잘 이용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나라 기업들이 특허발명정보에 대한 관심이 적고, 기업 자체 내에서 개발된 기술과 스스로 획득한 특허를 기초로 하여 외국기업과의 교차실시를 하도록 하면 실시료도 경감할 수 있지만,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특허청으로서도 특허발명정보의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3년 이상 실시되지 아니하는 특허발명에 관한 조사 및 공개를 한다면 특허권의 소극적 남용은 사전에 규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英美의 强制實施許與制度

영국 특허법도 이러한 특허발명실시의 거절의 규제에 의한 발명기술의 이용활성화 및 경쟁제한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우리 나라와 유사한 강제실시허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특허가 부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특허발명의 강제실시허여가 가능해진다.

강제실시허여가 가능한 구체적인 경우를 보면, 특허발명이 영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실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가 부여된지 3년 동안 상당한 정도로 실시되고 있지 못한 경우와 특허발명에 의하여 특정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내의 당해 제품에 관한 수요를 상당한 정도로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상당부분의 그러한 수요가 수입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the Comptroller-General of Patents)은 강제실시허여를 명할 수 있다. 강제실시허여를 명하는 경우 영국특허청장은 강제실시허여가 영국내의 관련 산업의 육성과 영국 내에서의 특허발명 실시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⁵⁷⁾

이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특허발명에 관한 강제실시허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대신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독점규제법에 의하여 규제하여 왔고, 특기할 점은 최근에 특허권 남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기 위하여 특허법이 1988년에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즉, 이제까지 관례에 의해서만 인정되어온 특허권 남용이론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성문화화하기 위하여 미국연방의회는 1988년 특허법을 개정하였다.

1988년 개정 특허법은 특허발명실시거절과 끼워팔기(tying arrangement)의 강제에 대하여 특허남용규제를 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었다. 영국과 미국에서 인정되는 강제실시허여제도 또는 특허권 남용규제제도 등이 물론 환경기술관련 발명의 이용활성화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3. 強制實施許與制度에 대한 代案

영국과 미국 등의 선진국은 근본적으로 강제실시허여 등에 의하

57) 영국 1977년 특허법 제48조 내지 제50조 ; Richard Whish, Competition Law, London, Butterworths, 1989, p.672.

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서, 환경기술에 관하여서도 개발도상국들에게 환경기술을 이전하고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선진국의 특허권자들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Rio환경회의는 선진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환경기술이 개발도상국에 이전 또는 이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또는 기타의 지원과 장려를 하도록 제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차원에서 선진국들로 하여금 후진국에의 환경기술의 이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국의 환경기술을 통상의 상업적 조건으로 구입하거나 사용허락을 받아서 개발도상국에 이전하도록 제안하고 있다.⁵⁸⁾

여기에서 선진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환경기술을 통상의 시가에 따라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에서의 환경기술에 관한 지적재산권법적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선진국들로서는 개발도상국과의 경제개발협력의 차원에서 자국에서 상업적으로 취득한 환경기술을 개발도상국들에게 비영리적 또는 비상업적 조건으로(on non-commercial terms) 이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상업적 조건으로 환경기술을 이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의 기술이전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지만, 환경기술을 개발도상국들에게 무상으로 또는 아주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선진국들에 의한 자국의 환경기술의 구입 및 개발도상국에의 이전과 병행하여 또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일정한 자금을 지원하여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환경기술을 도입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도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의 부담이 환경기술의 이용에 관한 절대적인 장애요인이 되는 것을 피한다는 것이

58) Rio환경회의의 Agenda 21, Para. 34.18(e)(iii).

다. 59)

또한 동시에 Rio환경회의에서는 환경기술의 개발과 이전 또는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그리고 그들의 관련 업계와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 사이에 장기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합의되었다. 특히 UN 등의 국제기구는 각국 정부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위에 언급된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에는 특정기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 및 기업들에게 각종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환경관련기술의 개발·이전·이용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그러한 국제적 차원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은 대략 연간 미화 4억5천만달러 내지 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은 특히 선진국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환경기술의 개발도상국에의 무상이전이나 그와 유사한 기술 지원에 대부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⁶⁰⁾

VI. 向後 對策

이상에서 환경기술의 개발 및 지원 그리고 그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Rio환경회의 내용과 우리 나라의 관련 법률안 등을 살펴 보았다. Rio환경회의에서는 환경기술의 이전을 위한 선진국의 여러 가지 노력에 합의한 바 있지만, 선진국의 기본입장이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최대한으로 보호하면서 환경기술의 이전을 활성화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 실현에 상당한 국

59) Rio환경회의 Agenda 21, Para. 34.18 (e)(V).

60) Rio환경회의 Agenda 21, Para. 34.29.

제기금을 필요로 하고 그러한 자금의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의문점이 남게 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Rio환경회의를 통해서 환경기술의 중요성과 그에 관한 정보보급 및 접근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국제적 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통하여 환경기술의 개발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면 환경보호와 환경산업의 육성에 많은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第5章

地域的 通商協定과 兩國間 通商에서의 知的財産權

第5章 地域的 通商協定과 兩國間 通商에서의 知的財産權

I.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에서의 知的財産權

1. 北美自由貿易協定の 法的 意味

본래 GATT체제는 최혜국대우(MFN)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어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특혜를 인정해주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이 당해 지역내의 모든 무역을 자유화함으로써 무역창출효과를 가진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그러한 국제규범하에서 특히 유럽공동체의 시장단일화가 가속화되는 등 국제적 무역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사이에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제3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러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회원국의 국내법 특히 회원국의 지적재산권법, 환경법, 독점규제법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당해 협정 내용은 UR라운드 협상이나 아태경제협력(APEC)에서 미국이 취한 기본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⁶¹⁾

61) William A.W.Neilson, "The Impact of Free Trade Agreements on the Legal Systems of Member States : The NAFTA Case", 국제거래법학회 제3회 국제세미나 발표논문, 국제거래법학회, 1993.11.5., 119면.

2. 北美自由貿易協定の 内容上の 特徴

북미자유무역협정은 22개의 장으로 구성된 2,000여 페이지의 막대한 분량의 협정으로서, 제17장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로 되어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UR협정과 거의 동일하다. 예컨대, 저작권보호에 있어서는 베른협약의 내용이 최소한의 기준으로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는 반면에, 저작권의 구체적 보호수준을 들여다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公衆貸與權(rental rights)이 인정되는 대상 저작물의 범위에 있어서, NAFTA협정은 컴퓨터프로그램과 음반에 대해서만 대여권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UR협정은 컴퓨터프로그램과 음반뿐만 아니라 영화필름과 같은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도 대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⁶²⁾

또한 NAFTA협정과는 달리 UR협정은 저작인접권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다만 NAFTA협정에서 볼 수 있는 “암호를 포함한 위성신호”의 보호는 UR협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허권과 상표권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동일한 내용이고 그 구체적인 존속기간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원산지표시에 관해서는 UR협정의 포도주, 위스키 등에 관한 규정이 NAFTA협정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법의 전반적인 집행절차와 특히 세관절차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관해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62) 송상현, 전제논문, 14면.

3. NAFTA協定の 知的財産權 關聯規定

1) 意義

NAFTA협정 제17장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방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장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가지며 저작물에 관한 파리협약 등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조약을 별효시키는 것과 여기에 규정된 것 이외의 내용을 추가적인 조치로서 정하고 있다. 저작권의 관계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등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50년간, 수입, 판매, 대여 등의 허가 및 금지의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상표등록보호는 상품에 추가하여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특허권의 보호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이상, 특허부여일로부터 17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의약, 농업관계의 미생물학의 특허, 집적회로의 디자인 보호,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하여도 특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권리침해에 대한 방지·구제수단, 소송수단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관련조문 중 주목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國際條約(제1701조)

- ① 체약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다음의 국제조약을 발효시킨다.

음반(녹음물)의 무허가복제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저작물에 관한 파리협약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식물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3) 內國民待遇(제1703조)

- ① 締約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실시에 관하여 상호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다만, 본 협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적재산권의 남용, 반경쟁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인정한다.

4) 著作權 保護

- ① 베른협약에서 정한 저작물이 보호대상으로 되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도 보호대상의 저작물이 되도록 하고 있다(제1705조).
저작물의 수입, 판매, 대여, 공중에의 발효의 허가 및 금지의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정하고 그 보호기간은 50년으로 정하고 있다.
- ② 음반(녹음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호가 50년간 부여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1706조).
- ③ 위성방송과 관련하여 비합법적인 수신장치의 제조, 수입, 판매, 리스 및 수신, 재배포를 1년 이내에 금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1707조).

5) 商標, 意匠

- ① 상표등록은 상품, 서비스에 적용되며, 당초 등록기간은 10년 이상, 갱신은 10년 단위로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다만,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708조).

I.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에서의 知的財産權

- ② 상품, 서비스 그 자체 및 상품, 서비스의 종류를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의 단어를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③ 의장보호도 10년 이상으로 한다(제1713조).

6) 特許(제1709조)

- ① 생명, 환경에의 중대한 손해 방지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분야의 일체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보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② 의약, 농업관계의 미생물학적 특허에 대하여 92년 1월 1일 시점에서 보호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다른 체약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허잔존유효기간 동안 보호를 위한 수단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 ③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상, 특허부여일로부터 17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7) 集積回路의 디자인(제1710조)

- ① 반도체 집적회로에 대하여는 “집적회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약”(89년)에 따라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② 보호기간은 등록일 또는 최초의 상업적 활용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집적회로의 창조로부터 15년까지 보호하지는 아니한다.

8) 營業秘密(제1711조)

- ① 영업비밀(trade secret)의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수단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보호를 받는 영업비밀의 적격요건으로서는

상업적 가치를 가질 것, 문서 및 필름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 누설방지의 수단을 강구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9) 權利行使(제1714조)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침해방지수단, 소송수단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4. NAFTA와 관련된 주요 爭點과 對應方案

1) 著作權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圓形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데이터 베이스)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 제3조에 따르면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 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제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약 가운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조약은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USC)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7년 7월 1일 저작권법의 시행과 함께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해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UR협정은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 부문에서 세계 각국이 베른협약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베른협약은 1866년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지적재산권관련 협약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강도 높은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세계저작권협약은 개발도상국의 문화·경제적 여건에 맞도

I.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에서의 知的財産權

록 국제저작권 보호권을 완화시켜 지난 1971년에 마련되었는데 74년부터 발효되어 현재 90여개국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저작권협약에 기반을 둔 국내저작권법은 베른협약 정신에 맞도록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베른협약은 저작물을 소급 보호한다는 소급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컴퓨터프로그램 영상저작물 음반 등을 제3자가 원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 관련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베른협약은 이 프로그램이 기본체계(source code) 또는 수행체계(object code)로 되어 있는 간에 어문저작물로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AFTA협정에서의 저작권과 관련된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NAFTA협정은 이른바 독점규제법에 의한 지적재산권 관련 거래의 규제를 허용하고 있고, 우리 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국제계약에 포함된 지적재산권 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준이 때로는 남용규제에 충분하고 적절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거나 외국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기준을 담고 있어서 또 다른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요망된다.

NAFTA협정은 저작권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현행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자에게 공중대여권(rental right)을 인정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공중대여권을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음반 등을 이용한 방송과 같은 소위 “음반의 제2차적 이용(secondary uses)”에 관한 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제한은 우리 나라와 같이 외국의 음반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나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제한규정이다. 따라서 한미 FTA체결시 또는 NAFTA

협정가입시 이러한 유사한 제한규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NAFTA협정은 이른바 독점규제법에 의한 지적재산권 관련 거래의 규제를 허용하고 있고, 우리 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국제계약에 포함된 지적재산권 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준이 때로는 남용규제에 충분하고 적절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거나 외국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기준을 담고 있어서 또 다른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요망된다.

2) 商標와 特許

상표권의 보호에 관하여는 NAFTA협정과 동일한 내용의 한미 FTA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우리 나라 국내 상표법 개정 등의 필요가 별로 없고, 오직 문제되는 것은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법집행의 문제와 세관절차에서의 모조상품의 수출방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 고유의 상표를 육성하고 장려하는 방법 등이 전략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FTA에서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발명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국내에서 실시되고 국내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AFTA협정은 또한, 특허발명의 내용이 일정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발명인 경우에, 그러한 특허발명을 침해한 피고가 상당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피고의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우리 나라 특허법과 민사소송법의 입증책임에 관한 일반원칙과 조화될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NAFTA협정과 우리 나라 특허법간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바,

I.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에서의 知的財産權

한미FTA에서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유예기간을 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NAFTA협정의 관련 규정들 가운데 오직 강제실시허락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제1710조제5항)이 우리 나라의 국내법과 모순될 가능성이 있다.

3) 原產地表示

NAFTA협정은 허위의 원산지표시를 금지하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하여 허위의 원산지표시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금지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참조). 원산지표시 보호의 예외에 관하여는, 우리 나라에서도 원산지 표시의 보호를 강화할 경우에 문제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미FTA의 체결에 있어서도 동일한 예외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營業秘密保護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비밀정보의 보호는 우리 나라 민사소송 등의 공개의 원칙 즉, 헌법상 보장된 “공개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모순·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對應方案

미국 정부는 한미통상협상에서 계속적으로 한국에서의 지적재산권침해사범 단속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왔다. 즉 우리 나라 법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형벌부과를 위한 법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소급보호에 관한 규정은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외국 지적재산권의 소급보호는 우리 나

라 헌법과 법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한미FTA에 유사한 규정을 두는 데에는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 나라가 베른협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소급보호를 유보(reservation)하는 유보권 활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한미FTA의 체결에 있어서도 소급보호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AFTA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형태의 소급보호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예외로서 “협정 시행일 당시 문제된 저작물이 특정 계약국에서 일반공중에 널리 알려져 공유물(works in the public domain)이 된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경우의 “공유물”의 정확한 개념과 범위가 무엇인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사후분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체결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은 UR지적재산권 관련 협정의 범위내의 보호수준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미국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수반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의 개정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개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속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국내 지적재산권법의 개정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개정 준비작업은 이론적 분석과 실무적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관련 부처 실무담당자와 학계의 교수 또는 연구자 및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구성된 개정위원회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적재산권법이 실효성을 가지고 집행되고 지적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지적재산권을 집중적으로 관리(collective adminis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할 필요가 절실하다. 저작권 집중

II. 亞太經濟協力(APEC)에서의 知的財産權

관리에 관하여 정부의 지원과 제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련된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하고, 미국은 외국의 저작권자들과 외국 정부도 저작권집중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도록 증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정부 등이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위조상표의 범람에 있어서도, 상표권자 등이 단체를 결성하여 위조상표의 적발과 단속에 관한 검찰과의 협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에 관해서도 외국 상표권자들의 재정적인 부담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로서는 한미FTA의 체결에 대비하기 위하여 또는 한미FTA의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미리 검토하고 가입에 대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해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문제로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내 지적재산권법의 개정과 관련 국제조약에의 가입 등을 신중히 검토·추진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전문가들에 의한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 亞太經濟協力(APEC)에서의 知的財産權

1. 問題의 提起

우리 나라는 이미 동남아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많은 지적재산권 관련 상품을 수출하고 기술투자하여 당해 지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서, APEC무역자유화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우리 나라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관련된 국가간

분쟁의 해결을 위한 협정체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우리 나라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수출액이 1992년 현재 167억달러로 전체수출액의 21.9%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수출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1992년 현재 27억달러로 전체수출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동남아시아에의 직접투자는 1991년 현재 17억달러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의 38%를 차지하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기술수출도 3천만달러로 약 36%에 달하고 있으며, 동남아에서의 한국상품의 도용문제가 이미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⁶³⁾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이 중요한 내용의 일부로 삽입될 것이기 때문에, APEC협상에 임함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미리 마련해두어야 할 것이다.⁶⁴⁾

2. 豫想되는 協商課題

1) 意 義

UR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APEC무역자유화협상에서도 개도국과 선진국과의 이해대립이 있을 것이고, 특히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에 관한 국가별 입장의 차이, 과학기술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 구체적 협상내용의 집행수단 및 장래 분쟁발생시 효율적인 해결방법 등이 주요 협상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로서는, 국내 지적재산권법의 보호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나라도 동남아시아에 많은 지적재산권 상품을 수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

63) 경제기획원, APEC관련 종합자료집, 1993.6, 30면.

64) 송상현, 전제논문, 15면.

II. 亞太經濟協力(APEC)에서의 知的財産權

분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知的財産權의 存續期間

저작인접권과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을 지나치게 연장하여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업계에 심각한 경쟁제한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에 관한 협상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할 것이 요망된다.

3) 紛爭의 豫防과 解決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는 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WIPO의 전문인력과 경험을 응용할 수 있도록 WIPO중심의 통지 절차와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도록 주장하는 것도 미국 등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4) 遡及保護

UR협정에서와 같이 공유물(works in the public domain)에 대해서 소급보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에서 공유물이라고 볼 것인가 하는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약품질과 농화학물질의 소급보호에 있어서는 미시판물질에 한하여 소급보호를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Ⅲ. 兩國間 通商問題로서의 知的財産權

이상과 같이 지적재산권이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통상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논의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미국 등의 선진국은 자국의 통상법이나 관세법을 통하여 통상문제로서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미국법원들은 특허법 등에 대하여 본래의 영토적 제한(territorial limitations)에 대한 예외로서 그 역외적 효력을 인정하는 새로운 경향을 볼 수 있다.

1. 美國 通商法에서의 知的財産權

미국 통상법은 미국통상대표(USTR)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의 지적재산권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고 실제로 1985년도 이래로 우리 나라의 지적재산권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⁶⁵⁾ 즉, 미국 통상법 제 301조는, 특정 외국의 정책이나 관행이 특정 통상협정하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미국의 상업을 제한한다고 미국통상대표가 판단한 경우에는 일정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⁶⁶⁾ 통상법의 그러한 규정을 배경으로 하여, 약 8년전부터 미국통상대표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을 개정하고 한국에서 미국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 왔다.⁶⁷⁾

65) Patricia I. Hansen, "Defining Unreasonableness in International Trade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1974", 96 Yale L. J., 1987, pp.1122~1145.

66) 19 U.S.C. §2411.

67) 1985년 10월 레이건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한국 등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제조된 상품이 미국이나 제3국에 수출되어 미국의 관련된 산업이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미국 기업들의 수출에 명백한 손해를 가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한다면, 미국 통상법에 의한 미국통상대표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국 등에서 제조된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이 미국에 수출된다는 사실에 관한 별다른 입증없이, 단순히 한국의 지적재산권법 내용이 미국의 그것보다 그 보호수준이 낮다거나 한국에서의 지적재산권법 집행이 미국기업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미국통상대표가 한국의 지적재산권법 등의 개정이나 사법절차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통상대표의 그러한 행위가 역외적관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⁶⁸⁾

2. 美國 關稅法에서의 知的財産權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세관절차에 있어서 미국으로 수입되어 오는 외국상품이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반도체회로배치설계권(mask work)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통관절차를 중지하거나 수입금지를 명할 수 있다(19 U.S.C. §1337.). 이러한 관세법절차는 한국 기업들에 대하여 여러차례 원용된 바 있는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통계를 분석해 보면 약 30%의 사건에서만 지적재산권침해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미국 기업들로서는

사례를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한·미 정부간 협상이 시작되어 1986년 7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었다.
68) 송상현, 전제논문, 17~18면.

상당히 높은 성공확률과 신속성(1년 미만의 결정시한)에 힘입어서 동 관세법절차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⁶⁹⁾

미국의 통상법 운용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세법 적용에 있어서도 한국 등과의 외교적 마찰이 초래되고 근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기존의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 관세법에 따라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외국상품의 미국으로의 수입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국제무역위원회의 권한 행사도 사법적인 심사 또는 사법절차에 준하는 적법절차없이 국제무역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외국의 수출업자 또는 외국의 저작권자 등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⁷⁰⁾

즉, 미국 국내에 등록된 지적재산권자는 국내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를 원용할 수 있는데 반하여, 세관절차에서는 국제무역위원회가 당사자들에게 간단한 소명의 기회만을 제공할 뿐 적절한 방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로 수입금지 등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외국의 수출업자 또는 외국의 지적재산권자는 미국 국내의 지적재산권자보다 훨씬 불리한 대우를 받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캐나다, 유럽공동체 등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그러한 관세법규정이 GATT의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69) Ashoka Mody,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ic Performance,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1990, p.222.

70) 송상현, 전제논문, 18~19면.

rules)에 반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GATT조사위원회(Panel)도 미국 관세법 제337조(19 U.S.C. §1337)가 GATT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⁷¹⁾

3. 美國 知的財産權의 域外的 適用

미국 지적재산권법의 역외적 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미국 특허법규정과 같이 명문의 법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등의 역외적 효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명문의 법규정이 없지만 외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미국 지적재산권법을 역외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일 것이다.

1) 域外的 效力에 관한 特許法 規定

특허권의 효력은 영토내로 제한되어 있고 미국 특허법도 특허권 침해행위의 유형을 규정함에 있어서 미국내에서의 직접침해 또는 간접침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특허발명 기계나 제품의 부품이나 방법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재료나 기구를 판매하는 자가 그러한 부품이나 재료 또는 기구가 특허권침해에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판매행위를 한 경우에, 특허권의 간접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문제되는 부품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기는 하였지만 제조된 모든 부품이 미국 밖에서 조립될 목적으로 모두 외국으로 수출된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⁷²⁾

71) Robert W. Kastenmeier and David Beier, "International Trade and Intellectual Property", 22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1989, pp.285~298.

특허발명제품의 모든 부품을 미국내에서 제조하여 모두 외국으로 수출하여 외국에서 조립하고 외국에서 소비된 경우에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Deep South Packing Company v. Laitram Corp.(406 U.S. 518 (1972))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은 문제된 행위가 미국 특허권의 범위밖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문제된 부품을 미국내에서 조립하여 미국내에서 특허발명제품을 제조하였다면 명백한 특허권침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부품들을 분리된 다수의 박스에 포장하여 외국의 고객에게 수출하여 당해 외국에서 모두 조립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직접침해가 전혀 없고 따라서 간접침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연방대법원의 입장인 것이다.

Deep South사건에서와 같이 특허발명에 관한 부품의 수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연방의회는 1984년에 특허법을 개정하였고, 개정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발명 부품을 공급하거나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미국 밖에서 그러한 부품이 조립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자는, 당해 조립이 미국내에서 이루어지면 특허권침해로 되는 그러한 조립에 해당되는 경우 특허권침해의 책임을 진다.⁷²⁾ 따라서 미국 밖에서 기계가 조립되고 이용되어서 미국내에서 아무런 직접침해가 없더라도 간접침해는 있을 수 있도록 되었다.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제품이 외국에서 조립되고 소비된 경우에도 특허권침해를 의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규정에 의하면 미국법원은 이제, 외국에서의 부품의 조립이나 이용이 특허권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특허발명제품의 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 특허법의 의미는, 부품조립이라고 하는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미국 특허권

72) 송상현, 전계논문, 20~21면.

73) 35 U.S.C. §271(f),

의 역외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인다.

2) 域外的 適用에 관한 判例

(1) 意義

독점규제법 및 증권거래법 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미국연방법원이 외국에서의 외국인의 행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 미국 연방법을 적용해와서 소위 미국 국내법의 역외적 적용을 위한 기준이 판례에 의하여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대해서도 역외적 적용이 논의되어 왔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eep South 판례와 같이 지적재산권은 영토적 제한을 가진다고 판단되어 왔지만, 최근에 이례적으로 미국 상표법 등의 역외적 적용을 인정한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독점규제법 분야 등에서 역외적 적용에 관한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역외적 적용의 상세한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외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요건 또는 기준으로는 ① 외국에서의 행위가 미국의 상업 또는 거래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② 영향을 받게 된 미국의 상업 또는 거래를 보호할 이익 또는 관련정도가 미국 연방법의 역외적 적용을 정당화할 만큼 당해 외국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보다 강한 것인가 하는 점을 들 수 있다.⁷⁴⁾

(2) 商標法 等の 域外的 適用

이러한 역외적 적용의 전통적 기준이 최근에 상표법에 적용된 사례로는 Reebok International Ltd. v. Marnatech Enterprises

74) 송상현, 전제논문, 21~22면.

Inc. 사건이 있다. 동 사건에서 Reebok은 미국과 멕시코에서 신발류와 의류에 관한 자신의 상표를 다수 등록하고 있고 그러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다수의 신발류와 의류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다. 피고 Betch은 미국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멕시코국경도시에서 Reebok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판매하였다. Reebok은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외국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하여 미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지방법원과 항소심판법원 모두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Reebok사건에서 보다 훨씬 더 엄격한 의미에서의 역외적 적용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Baldwin Hardware Crop. v. Franksu Enterprise Corp을 들 수 있다. Baldwin사건에서 피고 Franksu Enterprise는 대만에서 설립된 대만회사이고 그 대표 Franksu씨도 대만사람이고, 문제된 침해상품의 제조 판매도 대만에서 이루어졌는데, 원고 Baldwin은 피고의 대만에서의 침해상품의 제조 및 수출로 인하여 원고 상품의 수출이 감소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침해금지(injunction)의 소를 제기하였고, 미국 연방법원은 의장특허에 관한 연방특허법의 역외적 적용을 인정하였다. Baldwin사건에서는 특히, 원고가 미국에서 의장특허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만에서는 의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피고의 침해상품이 미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대만에서는 의장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대만에서의 침해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것은 또한 지적재산권법의 영토적 특성(territoriality)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⁷⁵⁾

75) 상계논문, 22면.

(3) 著作權法の 域外的 適用을 否認한 判例

상표법 등에 관한 사례에서와는 달리, 미국 저작권법의 역외적 적용을 정면으로 인정한 미국법원의 판결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저작권의 경우에는 상표권이나 특허권과는 달리 출원·심사·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취득하기 때문에(물론 미국 저작권법은 내국 저작물과 베른협약 체약국이외의 국가의 외국인의 저작물(non-Berne foreign works)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저작권침해의 소송제기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17 U.S.C. §411), 우리 나라 저작권법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미국 저작권자가 대부분의 경우에 한국 등의 외국에서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Reebok판결이나 Baldwin판결이 그대로 저작권사건에도 원용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⁷⁶⁾

미국 저작권법의 역외적 적용을 정면으로 인정한 판례는 보이지 않지만, 저작권침해행위의 일부가 미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등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미국 법원이 외국에서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미국 저작권법을 적용한 경우는 있다. 예컨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무단전시행위 자체는 외국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러한 무단전시행위에 관한 계약이 미국내에서 체결된 경우에, 외국에서의 침해행위가 미국에서의 저작권침해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서 외국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미국 저작권법을 적용하고 외국에서의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을 손해배상에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된 바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영토적 제한을 가지고 있고 그 역외적 적용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예컨대, De Bardossy

76) 상계논문, 23면.

v. Puski사건에서 원고인 헝가리 작가는 헝가리와 미국에서 소설을 출판하였고, 당해 출판을 맡은 피고는 미국에서 원고 소설을 제작 판매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허락없이 헝가리에서까지 배포를 해서 원고는 헝가리에서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면서 미국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헝가리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미국의 저작권법을 역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원고는 미국과 헝가리 모두 세계저작권협약(UCC)의 체약국이기 때문에 양국의 저작물은 어디서나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저작권법의 역외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세계저작권협약이 체약국 저작권법의 역외적 적용을 허용하는 협약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오히려 세계저작권협약의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바로 각 체약국 저작권법의 영토내적 효력을 전제로 하여 인정된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다.⁷⁷⁾

또한, Zenger-Miller Inc. v. Training Team GmbH(757 F. Supp.1062) 사건에서, 독일회사인 피고 Training Team은 미국 회사인 원고 ZMI의 허락하에 그 작품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독일에서 배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에는 계약상의 분쟁에 관하여 캘리포니아법이 적용되고 미국의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원고가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하여 미국법원에 제소하자,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하는 준거법조항에도 불구하고 미국 저작권법의 역외적 적용이 당연히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하여 준거법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고, 법원은 더 나아가, 독일에서 이루어진 침해행위가 미국의 대외거래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피

77) De Bardossy 사건은 헝가리에서의 병행수입과 출판허락계약에 있어서의 판매지역제한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이었는데, 미국법원은 미국 저작권법의 역외적 적용을 부인한 것과 맥을 같이하여 재판관할권도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Ⅲ. 兩國間 通商問題로서의 知的財産權

고가 모두 독일인 및 독일회사이고 문제된 계약의 협상과 체결도 독일에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법의 역외적 적용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De Bardossy 판결과 Zenger-Miller 판결 모두 한결같이 저작권법의 역외적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세계저작권협약이나 분쟁당사국사이의 준거법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저작권법의 역외적 적용은 부인된다고 판시한 점이 주목된다.⁷⁸⁾

78) 송상현, 전제논문, 23~24면.

第6章

結 論

第6章 結 論

향후 국제통상의 여건은 모든 분야가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전개된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라운드에서의 대응도 다른 분야와의 연관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토대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과 투자의 자유화는 기술서비스시장의 개방이나 연구개발의 해외활동과 관련하여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며 각 분야간의 거시적인 상호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기술라운드에서의 대응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단계적이고 이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과학기술투자의 총량은 늘리되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이중구조의 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UR타결이후에 EU나 미국등의 경우를 보면 산업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업의 기술 투자를 위축시킨다거나 기술지원을 감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1960년대 이래로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보조적 기능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국내외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술정책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미 중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우리의 경제규모나 산업구조에 비추어 볼 때,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과 산업구조정책의 효과가 소진되고 있으며 이를 대신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개별산업의 기술혁신을 통하여 자생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또한 UR이후의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출드라이브나 특정산업의 지

第6章 結論

원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은 매우 제한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각종 정책수단도 비교적 규제가 약한 기술개발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는 데, 이들 연구개발사업은 UR타결 이후의 국제규범에 대한 고려하에 새로이 입안되거나 추진되어야 한다. 즉, 국제적 상황변화에 따른 유연성과 동태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은 UR규정상에 정부보조금 규제대상에 해당되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개발체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선도기술개발사업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개발사업은 대체로 허용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부 과제의 경우 전체적인 지원비율 뿐만 아니라 과제의 성격과 목표가 지나치게 제품개발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개발기간이 장기인 대형과제의 경우, 개발활동의 준비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의 대상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규제의 대상이 될 소지가 크다. 또한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각종 법제도가 미흡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어 있어, 지원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수단으로 작용하거나 국제환경의 변화에 역행하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민간부문과 관련한 기술라운드의 주요쟁점사항은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기술지원을 규제하고 기술시장의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향후 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술자립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을 위하여는 정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인력수급이나 제도개선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대응방안이라 할 것이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의 확대로 현재 대기업은 일정수준의 기반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아직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정

부지원은 중소기업에 보다 치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TR의 예봉을 피하는 방법으로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연구개발의 해외진출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연구소의 해외 진출의 현황을 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해외부설연구소가 11개(1993년말 현재), 현지법인 32개(1992년말 현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적으로도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설립주체도 대부분 대기업이고 진출지역도 미국이나 일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실시에 즈음하여 지역별 기술정책의 개발과 고유기술의 육성은 기술라운드에 대은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술라운드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의 하나는 국제규범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UR이나 기술라운드의 논의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정성에 관한 기준 즉, 특정지역내에 존재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갖는 특정성 때문에 상계조치가 가능한 지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해당지역 내의 기업들에게만 제공하는 기술개발지원금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제 운용과정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마지막으로 TR의 가장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이며 현재에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본다면, 각국은 자신의 과학기술의 발전단계와 현황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내의 과학기술 수준 및 현황을 검토하여 신중한 입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UR타결이전에는 기존의 국제연합 전문기구인 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특허협력협약, 세계저작권협약, 제네바협약등의 국제협약에 의하여 이미, 보호·

第6章 結論

시행되고 있으나, 이들 관련 국제협약들의 보호수준은 대단히 미흡하였다. 특히 ① 위조상품의 생산, 교역에 대한 포괄적인 협정이 없고 ② 기존협약들이 대부분 지적재산권의 권리보호를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시키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벌칙규정과 제재수단이 결여되어 있으며, ③ 신기술 분야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UR의 타결과 이러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는 GATT체제내로 편입되었으며, 다음 8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② 상표, ③ 지리적 표시, ④ 의장, ⑤ 특허, ⑥ 집적회로배치설계 보호, ⑦미공 개정정보 보호 ⑧ 라이선스계약의 반경쟁적 행위통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관계도 선진국과 후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선진국에 비해 크게 열세인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과 기술적 발명에 관한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최근 기술개발능력의 저하로 지속적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 종전에는 외국기술을 모방하거나 복제하여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크게 변하였다.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시장에 고부가가치상품을 수출하고 후진국에서의 기술투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새로운 통상질서의 형성과 변화를 분석·연구하고 적절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附 錄

主要 國家의 技術關聯法

[附錄] 主要 國家의 技術關聯法

I. 美 國

科學技術政策組織優先法

(1976년 5월 11일 제정, 1982년 12월 21일 개정)

제1장 국가의 과학·공학·기술정책 및 우선권

제6601조(의회의 인정, 우선적 목표) ① 의회는 사회에 대한 과학 기술의 영향 및 과학·기술·경제·사회·정치·제도적 요인의 상호관계를 인정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고 선언한다:

1. 국가의 복지·안보·경제적 안정, 자연자원과 인적 자원의 보존과 효과적 이용 및 정부와 사회의 효과적인 기능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활발하고 지각력있는 과학기술의 지원과 전념을 요구한다.
2. 국가 및 국제적 사건의 진행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의 복잡한 여러 과학기술적 요인은 과학기술적 지식을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과 당면한 계획발전을 포함하여 적절한 대비를 필요로 한다.
3. 미국의 과학기술적 능력은 적절하게 육성·응용되고 지시를 받을 때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중대하고 새로운 국제·국가 및 지방적 문제를 예기하여 해결하며, 국가의 국제경제적 지위를 강화하고 대외정책목표를 조성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附錄：主要 國家의 技術關聯法

4. 과학기술을 위한 연방의 자금지원은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인류의 지위향상(human betterment)에 필수적인 미래의 투자를 의미하고, 국가의 필요성과 기회 및 우세한 경제적 상태에 상응하는 과학·공학 및 기술에 국가에서 계속하여 투자한다.
 5. 과학자, 공학자 및 기술자의 인력풀제는 가능한 한 한도로 이용되는 국가의 매우 귀중한 자원의 구성요소가 된다.
 6. 기술평가 및 계획과 정책수립에 대한 국가의 능력은 연방과 주의 수준에서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
- ② 의회는 과학과 기술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우선적 목표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언한다：
1. 미국의 과학자와 기술자가 인간과 인간세계의 지식에 대한 기여를 증대하고,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초과학을 발견하며, 미국의 국내외정책의 목표를 지원하는데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자유, 존엄 및 행복을 위하여 국제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지도력을 육성하는 것.
 2. 중요한 재료와 생산물의 효과적인 사용을 증대하고, 경제적 기회·안정 및 적정성장에 기여하는 것.
 3.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식품, 재료 및 에너지의 적당한 공급을 보증하는 것.
 4.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
 5. 위생적이고 미적인 자연환경을 보존·육성 및 회복시키는 것.
 6. 해양, 해안지역 및 남북극지역의 보호와 그 지역의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이용에 대비하는 것.
 7. 경제를 강화하고 유용한 과학기술적 혁신을 통한 완전고용을 장려하는 것.
 8. 미국의 모든 주민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
 9. 국가의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의 보존 및 효과적인 이용을 장려

하는 것.

10. 국가의 주택공급·운송 및 통신체계를 개선하고, 도시·시외 및 농촌지역을 통한 효과적인 공익사업의 실시를 보증하는 것.

11. 공기오염과 수질오염, 및 불필요하거나 비위생적 또는 비효과적인 약품과 식품 첨가제를 제거하는 것.

제6602조(의회의 정책선언) ① 의회는 미국이 다음 각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지원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

1. 목표를 달성하고 미국의 정책을 수립하며 주와 지방정부 및 대표적인 공공단체의 견해를 반영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에 근거한 과학기술적 노력의 적합한 범위·수준·방향 및 한도를 정하여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략의 개발 및 이행
2. 성장과 혁신의 방향이 자원의 절약과 신중한 사용 및 온화한 환경의 보존과 양립할 수 있는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협력.
3. 대외정책의 목표를 증진하는 반면에 국내의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활동
4. 적절한 수의 과학자, 공학자 및 기술자의 모집·교육·훈련·재훈련 및 유익한 이용, 및 과학·공학 및 기술에 있어서 인적자원을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연방정부에서 장려.
5. 주와 지방정부 및 민간층의 적극적 참여와 협동관계 ; 정부·산업체 및 대학의 다양한 과학기술능력의 유지와 강화, 및 과학기술혁신의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함과 아울러 그러한 능력에 기초한 창의력의 장려 ; 과학기술정보의 효과적인 관리 및 보급 ; 중요한 과학·기술 및 산업의 표준과 측정 및 검사방

- 법의 설정 : 과학기술의 광범위한 이해증진 등을 포함하여 미국의 과학기술의 확고한 기반을 발전 및 유지
6. 상황변화가 이 장의 정기적인 개정 및 응용을 요구함으로써 연방정부는 그러한 상황변화를 확인하고 설명하며, 이 장의 다음 변화를 달성할 책임이 있다는 인식.
- ② 의회는 이 조 제1항에 선언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언한다 :
1. 연방정부는 공공의 문제와 목표를 확인하고, 중요한 국가문제 해결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자원을 동원하고, 그와 같이 확인된 문제해결에 필요한 적절한 자금지원을 보장하고,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미래의 관심사를 기대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과학기술의 운영을 위한 전략을 고안하며, 연방정부의 과학정책 및 계획을 체계적으로 재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법규개정을 권고함에 있어서 연방정부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중심적인 정책수립요소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 요소는 대통령이 관련된 복잡한 과학기술의 특징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요하는 정책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 기관내의 자문기구를 포함시킨다.
 2. 산업단체 및 기술회사를 포함한 비정부기관에서 수행하는 계획과 같은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확실하고 체계적인 과학기술정보의 전달을 추진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책임이다. 특히 자체의 과학기술정보체계를 조정하여 단일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과학연구를 유용한 과학재료의 영업적 응용과 밀접한 연결을 장려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책임이다.
 3. 공중에게 이익을 주는 성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민간 측에서 지원하고자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과학기술노력

을 지원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적합한 기능이다.

4. 연방정부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과학기술활동은 이익을 주와 지방정부 및 민간측과 분배하는 것과 이를 구별한다.
5. 연방정부는 공학 및 각종연구분야를 지원하고 이용하며 적합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방정부의 정책수립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공학단체(engineering community)를 최대한 이용한다.
6. 국가의 과학기술노력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지원상 필요한 것은 의회가 과학기술의 조건, 지속성 및 자금지원요구, 국가목표의 변경과 과학기술의 관계 및 과학기술과 관계가 있는 모든 면에 있어서 연방정부기관에 대한 법적 수정의 필요성을 규칙적으로 통지를 받는 것이다.

③ 의회는 이 조 제 1 항에서 선언한 정책의 수행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동등한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한다 :

1. 연방정부의 조달정책은 과학기술의 이용을 장려하여 재료·에너지 및 출판승인을 받은 자금의 절약을 촉진하고, 좋은 환경을 보장하며, 생산작업을 향상하는 것이다.
2. 실행가능한 원가대비이익의 원칙을 포함하여 명확한 기준은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에 적합한 응용연구와 기술계획의 종류를 확인하고 그 지원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
3. 연방정부의 과학기술진흥책은 연구의 질을 강조하고, 과학기술관계기관의 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며, 긴급한 일에 대하여서는 결과의 시의성에 대한 보장을 모색한다. 기금은 연방정부의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상태를 특별히 참조하여 필요한 분야의 교육을 장려하고, 미래의 중요한 기술개발을 착수할 수 있는 과학지식의 기초를 제공하며 국가의 문화적 유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를 할당한다.

4. 연방정부의 특허정책은 그 정책의 목표로서 기술혁신에 대한 자극을 주고 공중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익한 기술의 완전이용을 보장하는 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통일된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발전시킨다.
5. 물리학·사회학 및 생의학분야를 포함하여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종사자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유지를 장려한다.
6. 연방정부의 부처와 기관은 효과적인 장비의 취득, 하급의 노후소유물의 처분 및 모든 종류의 고가품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업무를 포함하여 그 기관에서 관리하는 실험시설 및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한다.
7. 주 및 지방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과학기술의 기여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8. 과학기술적 성공으로 국민복지에 크게 기여한 자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다.
9. 연방정부는 가능성이 있는 한 이용의 가능성에 비례하여 적합한 때에 응용과학연구를 지원한다. 다만, 기술의 유익한 결과를 최대화하는 반면에 정부는 예견할 수 있는 불법적인 결과를 최소화한다.
10. 연방정부의 부처와 기관은 그들의 계획에 의하여 개발된 과학자료와 기술재료의 체계적인 상호교환을 그들 사이에 보증하는 절차를 정한다.

제2장 과학기술정책실

제6611조(정책실 설치) 대통령직속기관에 과학기술정책실(이 장에서 이하 “정책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6612조(이사, 이사보) 정책실장은 이사로 보하며, 이사는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받아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자로서 제5편

제5313조의 행정부속조항Ⅱ에 정한 비율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받아 4명의 이사보를 임명한다. 이사보는 제5편 제5314조의 행정부속조항Ⅲ에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로 보수를 받으며, 이사가 정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6613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의 제1차 직무는 대통령 직속기관 내에서 정부고위층에 주의를 요하는 문제에 대하여 과학·공학 및 기술적인 면의 선언을 하는 것이다.

②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는 기타 직무 및 활동과 더불어 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한다 :

1. 제한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경제·국가안보·건강·대외관계, 환경, 및 자원의 기술적 회수와 이용을 포함하여 국가의 관심분야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적 고려사항을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2.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노력의 규모·질 및 효과성을 평가하고 적합한 활동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
3. 대통령에게 연방정부예산과 관계가 있는 과학기술적인 고려사항을 권고하고, 모든 연방정부기관의 예산에 있어서 연구개발용으로 제안된 자금지원을 매년 검토·분석하여 관리예산청을 지원하며, 예산확대과정을 통하여 관리예산청과 연방정부기관을 지원하는 것.
4. 연방정부의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조정을 하여 대통령을 보좌한다.

제6614조(정책기획, 분석, 권고, 자문분과위원회설치) ① 정책실은 연방정책의 주요정책과 기획에 관하여 대통령을 위한 과학기술적 분석 및 판단의 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이 조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한다.

附錄：主要 國家의 技術關聯法

1. 과학기술을 중대하고 새로운 국내 및 국제문제에 적용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부처 및 기관의 과학기술적 책임과 계획의 조정을 촉진하는 일관된 접근방법을 정하려고 모색한다.
2. 이 법 제66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보고서를 준비함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권고한다.
3. 과학기술의 중요한 발전과 경향이 이 법 제6601조제2항에 말한 국가우선목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기에 적합하고 권위있는 정보를 분석 및 해설하기 위하여 그러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4. 미래의 인력수요를 예견하기 위한 적합한 모형의 개발을 포함하여 과학·공학 및 기술의 인적자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data base)의 개발·유지를 장려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정부 및 공공의 주요계획의 영향을 평가한다.
5.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는 중요하고 새로운 국내 및 국제문제의 해결에 이용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연구·분석(구조분석과 기술평가를 포함)을 착수하고 가능한 한 그러한 대안에 대한 비용의 추산액, 이익 및 영향을 결정하며 비교한다.
6. 연방정부의 각종 과학기술계획·정책 및 활동이 이 법 제6601 조제2항에 말한 국가우선목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7. 적절한 제거·수정 또는 쇄신에 대한 권고와 더불어 내부적으로 그리고 민간측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바람직한 기술혁신과 충돌할 수 있는 연방법령과 여러 부처 및 기관의 행정규칙에 대한 정기평론지를 대통령에게 제공한다.

8. 연방정부의 지원을 보증하는 과학기술활동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재조사·수정 및 권고하고, 정부·학계 및 산업체의 모든 수준에서 인적자원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과학기술 능력의 개발과 유지 및 국가의 필요에 대한 그러한 능력의 효과적인 응용을 조장하기 위한 연방정부정책을 권고한다.
 9. 미국의 국내와 국제적 목표를 추진시키는 국제과학기술협력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권고한다.
 10. 과학기술이 국내와 국제문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새롭고 미래적인 분야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11. 이 법 제66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실의 모든 활동과 성과에 대하여 적어도 연1회씩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한다.
 12.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의 성격과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의회에 송부하기 위하여 이 법 제6602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책을 적합하게 수정할 것을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13.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사항에 관한 기타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며, 그에 대한 연구를 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 ② 1. 이사는 정부과학공학기술자문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분과위원회는 과학·공학·기술이 해결하거나 개선함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주·지역 및 지방의 민간인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의 설명에 대한 우선권을 권고하며, 일반인의 필요에 대한 적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구와 개발결과의 전달 및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확인하고 조장함에 있어서 이사에게 권고하고 그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분과위원회는 정책실의 이사 또는 그의 대리인, 주의 관리와

협의를 한 후 정책실의 이사가 임명한 자로서 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10명의 위원 및 국립과학재단의 이사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3. 정책실의 이사 또는 그의 대리인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규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위원장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한다.
4. 분과위원회의 각구성원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여행시를 포함하여 제5편 제5332조에 의하여 일반도표 GS-18에 정한 1일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가정 또는 정상적인 근무지를 떠나서 근무하는 동안에 상근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제5편 제5703조제2항에 의하여 승인된 비용과 같은 방법으로 생계비대신에 여비를 받는다.

제6615조(과학기술보고 및 견해) ① 이사는 1977년재편성계획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연도 1월15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보고(이하 “보고”라 한다.)를 대통령에게 한다. 이 보고는 정책실 또는 국립과학재단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방정부의 기타 부처 및 기관의 적합한 지원을 얻어서 정책실의 지도하에 재단 이사의 협력을 받아 이를 준비한다. 보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국가의 과학기술지도력의 유지를 위한 대통령의 현행 정책에 대한 설명.
2. 보고를 한 다음에 행한 것으로써 과학기술에 관련된 연방정부의 주요결정 및 행위에 대한 설명.
3. 과학 또는 기술적 고려사항이 주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중요한 국가적 문제에 대한 시론.
4. 과학연구로 인하여 또는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새로운

국가의 주요문제 또는 과학 또는 기술적 고려사항이 주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주요문제에 대한 예측.

5. 새로운 현존의 과학기술정보, 능력 및 인력을 포함하여 연방 정부의 계획목표와 국가목표의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자원의 이용을 위한 기회 및 그 이용에 대한 강제에 대하여 시론.

② 정책실은 대통령이 승인한 형식으로 보고서를 인쇄하여 공문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제6616조(이사의 추가직무) ① 이사는 이 장에 말한 기타 임무 및 기능과 더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이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연방과학공학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

2. 국내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이사는 국가안보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안보회의의 요청으로 국가안보에 관계가 있는 과학기술에 관한 사항을 국가안보회의에 권고한다.

③ 이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

1. 현재 또는 지금부터 그에게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직원 및 고용원을 임명하는 것.

2. 제5편 제5332조에 대한 일반도표 GS-18등급에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로 제5편 제3109조에 의하여 승인된 바와 같은 지원을 받는 것.

3. 공공기관 및 사인, 사설단체 또는 사설기관과 연구·분석 및 기타 지원계약 및 기타 협약을 체결하고, 법적인 고려, 이행약정 및 제41편 제5조의 규정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아니하고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불을 하는 것.

제6617조(기타 단체와 조정) ① 이사는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한다 :

1. 국내위원회, 국가안보회의, 환경위원회, 경제고문회의, 관리에 산청, 국립과학위원회 및 연방정부의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하여 일을 한다.
 2. 고문의 지원을 이용하고, 자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가능한 한 주와 지방정부기관, 적합한 직업그룹 및 산업·대학·농업·노동·소비자·보호단체의 대표, 기타 공공의 이익그룹 및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개인과 협의한다.
 3. 국가의 과학기술의 필요 및 경향과 관련하여 이 항 제2호에 말한 기관, 그룹 및 단체와 공중의 의견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가의 각종 부분의 의견을 청취한다.
 4. 협력과 비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동의를 얻어 공사기관과 단체 및 개인의 지원·인원·장비·시설 및 정보(통계정보를 포함한다)를 이용하고, 그러한 인원·지원·시설·장비 및 정보의 이용을 위한 상환금으로 기타 연방정부기관에 이 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전달할 수 있다.
- ② 독립기관을 포함하여 행정부의 각부처와 기관은 이사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그에게 전달할 권한을 가진다.
- ③ 항공우주청의 청장은 요청을 받은 즉시 이 편 제6614조 제1항에 의한 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사를 지원할 권한을 가진다.

제6618조 <폐 지>

제3장 대통령의 과학기술위원회

제6613조(위원회의 설치)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기관내에 대통령의

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632조(위원회의 회원자격) ① 위원회는 이 법 제2장에 의하여 설치된 과학기술정책실의 이사, 이사가 직무를 맡은 날로부터 60 일안에 대통령이 임명한 8명 내지 14명의 기타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이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 :

1. 과학·공학·기술·정보보급·교육·관리·노동 또는 공무 등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 자격이 있고 저명한 자이다.
2. 이 법 제1장에 말한 결정·정책 및 목적과 관련하여 국가의 정책·우선권·계획 및 활동을 엄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위원 1명과 대통령이 정한 기간동안 부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위원 1명을 임명한다.

④ 연방정부의 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각위원은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시행시를 포함하여 제5편 제5332조에 의하여 일반도표 GS-18에 정한 1일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가정 또는 정당한 근무지를 떠나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상근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제5편 제5703조 제2항에 의하여 승인된 비용과 같은 방법으로 생계비대신에 여비를 받는다.

제6633조(연방정부의 과학·공학·기술조사, 보고) ① 위원회는 임무·목적·인원·자금지원·조직·시설 및 일반활동을 포함하여 연방정부의 과학·공학·기술의 노력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검토 및 분석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개인 및 그룹과의 협의를 포함하여 연방정부의 과학·공학·기술계획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및 그룹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한다. 위원회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제1차적으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연방정부의 기관 및 부처급의 기관내에서 주로 연료·에너지 및 재료와 관계가 있는 연방정부의 기관의 등급을 정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비를 포함한 조직개편
 2. 정보보급에 있어서 민간측에 행하는 적합한 역할에 대한 고려 사항을 포함하여 정부기준의 과학기술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현행 구조의 상향.
 3. 연방정부의 행정기관에 있어서 향상된 방법.
 4. 기술혁신, 이전 및 사용을 하기 위한 향상된 방법.
 5. 상호적 목적추구를 위한 연방과 주간의 구조형성을 포함하여 보다 효과적인 연방과 주간 및 연방과 산업체간의 과학기술의 연결과 협력을 자극하는 것.
 6. 기술혁신 또는 그 이용의 기회를 지체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연방정부규칙 및 행정실행과 절차의 축소 및 간소화.
 7. 기초연구의 지원을 보다 광범위한 토대.
 8. 과학기술의 연구·교육을 위한 대학의 능력을 강화하는 방법.
 9. 과학기술 요인을 효과적으로 국내와 국제정책에 통합시키는 방법과 수단.
 10. 공동체와 개인의 필요에 응하기 위한 기술.
 11. 질과 양에 관계가 있는 과학기술인력의 유지.
 12. 연방정부의 과학기술의 수립과 분석을 위한 상향된 구조.
 13. 국가의 주요한 문제 또는 관심사항에 대한 과학기술의 적용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연구·분석 및 계획.
- ② 1. 위원회는 이 편 제6632조제1항에 의하여 활동한 때로부터 12월 안에 현재까지의 그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고, 활동을 행한 때로부터, 24개월안에 필요한 자료와 재료를 포함하여 그의 활동, 결정 및 권고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대통령은 그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안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에 대한 견해, 설명 및 권고를 첨부하여 의회의 각원에 그 보고서를 송부한다.

제6634조(위원회의 연장) ① 위원회는 이 편 제6633조에 의하여 준비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해산된다. 다만, 90일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대통령이 결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대통령이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그 위원은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제6635조(간부 및 고문의 지원) ① 이 편 제6633조 및 제6634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

1. 그의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선발·임명·고용하고 그의 보수를 정하며, 문관근무법(civil service laws)에 의하여 임무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직원 및 고용원을 선발·임명 및 고용하는 것.
2.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일반직원과 군인의 참여를 준비하는 것.

② 연방정부의 부처와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즉시 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 기관에서 이용하거나 취할 수 있는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고, 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정관할구안의 직원을 위원회의 잠정적 임무에 파견한다. 그와 같은 파견은 위원장과 관계기관의

장사이의 협정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제5편 제33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다.

제4장 연방과학공학기술조정협의회

제6651조(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연방과학공학기술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과학기술정책실의 이사 및 농무성, 상무성, 국방성, 보건후생성, 주택도시개발성, 내무성, 국무성, 운수성, 재향군인청, 항공우주청, 국립과학재단, 환경보호청 및 동력성의 각 대표 1명으로 구성된다. 각 대표는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한 정무직급(policy rank)의 직원이다.

③ 과학기술정책실의 이사는 협의회의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의장은 의장의 유고시 그의 임무를 잠정적으로 대행하도록 협의회의 다른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이 조 제2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연방정부 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이해관계가 있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대표의 지명을 요구하고, 기타 사람에게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1개이상의 연방정부기관에 영향을 주는 과학·공학·기술분야와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문제점과 발전을 연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한 정책과 기타 조치를 권고한다 :

1. 연방정부의 과학·공학·기술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계획과 행정을 제공.
2. 추가적인 중점사항을 요하는 분야를 포함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
3. 부당한 중복의 배제를 포함하여 과학·공학·기술자원과 연방

정부기관의 시설의 보다 효과적인 이용의 달성.

4. 과학·공학·기술분야의 국제적 협력의 조성.

⑥ 협의회는 대통령 또 의장이 지정한 기타 관련된 자문임무를 수행한다.

⑦ 협의회에 대표자를 참석시킨 각연방정부 기관은 이 조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그러한 지원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

1. 이 조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의장이 지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협의회에 직원을 파견
2. 의장이 요구하는 즉시 지정된 직무의 범위안에서 협의회를 위한 특별연구를 착수

⑧ 의장이 명령한 연구와 보고를 행하기 위하여 상임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상임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사이에 식량·농업·삼림·연구소위원회를 둔다. 이 소위원회도 국내외의 식량과 섬유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연방정부의 연구·개발계획을 세밀히 조사하고 연방정부의 이러한 연구에 대한 계획과 조정을 촉진하며, 협의회에 숙고를 위하여 식량과 농업과학에 관한 정책 및 기타 조치를 권고한다. 소위원회는 제한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농무성, 국방성, 내무성, 보건후생성, 해양대기청, 동력성, 국립과학재단, 환경보호청 및 테너지계곡개발기관의 각대표를 포함시킨다. 농무성의 주대표가 소위원회의 의장직무를 수행한다.

제5장 총 강

제6671조(지출승인) ① 이 법 제2장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할 것을 승인한다:

1. 1976년 6월 30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는 750,000달러.

附錄：主要 國家의 技術關聯法

2. 1976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1976년 9월 30일에 종료되는 기간에는 500,000달러.
3. 1977년 9월 30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는 3,000,000달러.
4. 다음 각 회계연도에 필요한 액수.
 - ② 이 법 제3장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할 것을 승인한다:
 1. 1976년 6월 30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는 750,000달러.
 2. 1976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1976년 9월 30일에 종료되는 기간에는 500,000달러.
 3. 1977년 9월 30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는 1,000,000달러.
 4. 다음 각 회계연도에 필요한 액수

II. 英國

1965年 科學技術法

(1965 The Science and Technology Act)

(1965년 3월 28일 제정)

제1조(연구위원회) ① 칙령에 의하여 설치된 또는 설치될 다음 각 호의 기구는 이 법의 목적을 위한 연구위원회이다.

1. 농업연구위원회 및 의약연구위원회.
2. 국가가 이 법에 규정된 기구인 과학연구위원회의 천연자원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한 위원회.
3. 과학연구와 관련된 목적으로 설치되고 장관이 임명한 자로 구성되고 이 법의 목적을 위한 연구위원회로서 설치하도록 칙령으로 선언된 기타의 기구.

② 과학연구위원회는 과학연구의 수행, 기타의 기구 또는 사람에 의한 과학연구의 촉진·장려·지원 또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종사하는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한 평가 및 당해 분야에서의 교육에 대한 평가 및 과학·기술지식의 전파 등으로 구성되는 또는 이들을 포함하는 목적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③ 천연자원연구위원회는 지구과학과 생태학의 연구수행, 기타의 기관 또는 사람에 의한 그러한 연구의 촉진·장려·지원 또는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한 평가와 당해 분야에서의 교육에 대한 평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언의 제공 및 자연보호구역의 설정·유지·

관리

④ 칙령안(Darft of the Order) 이--당해 기관의 목적 또는 주 목적을 명기하여--의회에 제출되고 그 안이 각원의 의결에 따라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떤 기관을 이 조 제1항 제3호의 연구위원회로 선언하는 칙령을 제정하도록 국왕에 권고할 수 없다.

제2조(연구위원회의 경비 및 회계) ① 수상은 위원회의 경비와 관련하여 재무부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결정한 금액을 의회가 그 지출을 승인한 재원에서 연구위원회에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이 지급된 금액의 사용, 지출과 관련하여 수상이 동 위원회에 내린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이 법 별표 I의 규정은 연구위원회의 수상에 대한 답변 및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계기록·감사와 관련하여 또한 기타 관련사항과 관련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연구위원회가 영국내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와 관련하여 국가가 또는 국가를 대신하여 공공목적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간주한다.

④ 이 조의 의약연구위원회와 농업연구위원회의 수상에 대한 의무는 칙령으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부과되는 의무에 같음한다. 1956년 농업연구법에 의하여 설치된 농업연구기금은 이를 폐지한다. 전단의 규정의 유보하에 의약연구위원회 또는 농업연구위원회의 설치 인가장에 따라 추밀원의 위원회가 행하는 또는 추밀원의 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사항은 수상이 직접 행하는 또는 수상에 대하여 행하여 지는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또한 연구위원회의 포괄적 기능에 관한 법규의 어떠한 규정도 연구위원회의 활동을 영국 또는 영국의 일정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는 영국내에서 발생한 경비에 국한되는 것

은 아니다. 다만, 농업연구위원회와 의약연구위원회 이외의 연구위원회의 경우, 지급되는 경비에는 당해 위원회와 관련하여 제1조 제2항 또는 제3항 또는 당해 위원회를 연구위원회로 선언한 칙령에 명기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경비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과학연구와 관련된 활동의 재조정) ① 과학산업연구위원회의 활동은 당해 문제에 관계하는 연구위원회와 기타의 정부부서가 인수한다. 따라서 과학산업연구위원회와 과학산업연구국은 이를 폐지한다.

② 국립핵과학연구소의 활동은 과학연구위원회가 이를 인수한다.

③ 자연보호국 및 국립해양위원회의 활동은 자연환경연구위원회가 이를 인수한다. 따라서, 이 법의 제규정 유보하에 자연환경연구위원회는 1949년의 국립공원및전원이용법(the National Park and Access to the Countryside Act 1949)의 제3장 및 동법 제84조,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106조에 규정한 자연보호국에 갈음한다.

④ 상기 제3항은 1949년의 『국립공원및전원이용법』 제24조(자연보호국의 연간보고서) 및 제25조 제2항(동규정에 의하여 자연보호국 점유토지의 총가치는 그 대차계약에 의하여 과하여진 각종 제한에 따라 결정된다)과 관련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기 제3항에 의하여 1949년 국립공원 및 전원이용법 규정을 자연환경연구위원회에 적용함에 있어서,

1. 동법 제25조 제3항(동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당해 토지와 관련하여 정부기관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은 자연보호구역으로서 관리를 받고 있는 토지에 한하여 이를 확대적용한다.
2. 동법 제103조제1항은 계속 효력을 가지되 “수상”(Secretary of State)이라는 규정은 동항에 의하여 토지의 의무적 취득을

허가하는 권한을 가지는 “장관”이라는 규정으로 대체한다.

⑤ 이 법 별표2에 규정한 법규는 계속 효력을 가지되 동 별표에 열거한 제규정(이 조 또는 제2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경미하게 또는 대폭적으로 개정되는 제규정)의 제한을 받는다. 또한 이 법 별표3의 규정은 이 조와 관련하여 잠정적인 효력을 가진다.

⑥ 어떠한 연구위원회 또는 정부의 과학연구관련부서의 활동이 다른 연구위원회 또는 정부부서로 이전되는 경우, 수상은 그에 따른 당해 활동에 대한 책임을 이전함에 있어서 전자의 연구위원회 또는 정부부서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보유, 취득 또는 발생한 재산, 권리, 책무 또는 의무를 법규명령으로 이전시키거나 그러한 이전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연구위원회는 다른 연구위원회 또는 정부부서로 부서의 과학연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책임인수 또는 그러한 책임의 후자에의 인계를 요구하는 수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규정한 책임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상은 그러한 이전에 충분한 효과를 부여하는데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관련 연구위원회 또는 정부부서에 영향을 주는 법규상의 어떤 규정에 대한 폐지·취소를 법규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폐지·취소와 관련되는 잠정규정, 보충규정 또는 부대규정을 둘 수 있다. 다만 당해 법규는 하원의 의결이 있으면 이를 폐지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을 제외한 이 조의 규정은 국왕이 칙령으로 정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그 발효일은 개개의 규정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규정에 대하여도 개개의 목적에 따라 다른 발효일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원자력청의 연구기능의 범위) ① 영국 원자청의 기능에는 기술부장관이 원자력청의 자문을 얻어 요구하는 원자력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문제에 대한 과학연구의 임무도 포함된다. 1954년 원자력청법 제2조제2항은 원자력과 관련된 연구와 동일하게 그러한 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1954년 원자력청법 제4항에 의하여 의회가 승인한 재원으로 부터 지불되어야 할 금액이 상기 제1항으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도 의회가 승인한 재원으로 부터 인출되어야 한다.

③ 상기 제3조제6항 및 제7항은 이 조에 의하여 영국원자력청이 수행하는 또는 수행하여야 할 활동에 대하여도 정부부서의 활동과 동일하게 이를 적용한다.

제5조(수상 및 기술부장관의 기타 권한) ① 수상과 기술부장관은 의회가 승인한 재원으로부터 재무부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과학연구의 수행 또는 지원, 또는 과학연구 성과의 보급
2. 과학연구 성과의 실제적용의 장려
3. 과학연구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하여 수상 또는 장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한 보수, 수당 또는 연금과 관계된 경비

② 기술부장관은 상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타당하는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 또한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1947년 거래통계법(Statistics of Trade Act)제1조에 의하여 주무당국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법을 동법 제17조제3항의 주무당국과 동일하게 기술부장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1948년 방사능물질법(the Radioactive Substances Act 1948) 제6조의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수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전문·기술기관(및 인)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당해 위원회의 위원의 사임통지는 수상 또는 위원회(당해인이 위원장이

附錄：主要 國家의 技術關聯法

아닌 경우에 한함)에게 행하여야 하며 수상은 위원회의 위원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그 비서로 임명한다.

다만 이 항은 이 조가 발효하기 이전에 행하여진 임명 또는 통지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보충규정) ① 이 법에서 “과학연구”라 함은 과학(사회과학을 포함) 상의 또는 기술상의 연구·개발을 말한다.

②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연구위원회의 설치인가장을 개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국왕의 새로운 설치인가장을 부여하는 권한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이 법이 통과된 후에 행하여진 개정 또는 설치인가장 수여의 효력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별표4에 규정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Ⅲ. 프랑스

技術研究開發基本方向및計劃에관한法律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

(1982년 7월 15일 제정)

제1편 기술개발에 대한 공공연구 및 활동방향

제1조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은 국가의 우선사항에 속한다.

제2조 ① 기술연구개발비에 할당된 국내총생산의 부분이 1985년도에는 2.5퍼센트에 이를 수 있도록 잠정계획으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기술연구개발예산에 책정된 예산액을 1985년도까지 17.8퍼센트 증액시키고 공공연구에 투입된 인원수를 연평균 4.5퍼센트 증원시킨다.

② 국가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목표 및 전략상 이 법률로 정한 기본방향을 수정하게 된다.

제3조 ① 민간기술연구개발예산으로 다음과 같은 4개의 활동을 행할 수 있다 :

1. 개발을 보장하는 기본연구 ;
2. 문화적·사회적·경제적인 필요성에 따라 관계성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행하거나 지원하는 응용연구 및 최종연구 ;
3. 수행할 기술개발계획 ;
4. 다른 활동분야의 지원을 요하는 수개년동원계획(les programmes

mobilisateurs pluriannuels). 이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고려하는 국가이익이라는 거대한 목적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 대학실험실, 국영기업, 연구원 및 사기업에서 취하는 기타 방법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사용한다.

② 동원계획은 관계당사자와 협의를 하고 고등연구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에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4조 ① 국가의 기술연구개발노력의 실태는 매년 의회에서 경제적 균형상태와 이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국가의 연구에 대한 우선권을 고려하여 이를 재검토한다.

② 예산안의 제출시에 연구기술담당상은 매년 정부명의로 의회에 기술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보고서에는 연구원 및 사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이 법률에 의하여 정한 목표를 달성한 상태를 기재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조치를 취한 사항, 전망, 난점 및 필요한 수정사항을 부각시킨다.

③ 이 보고서에는 특히 국가의 기술연구개발노력에 대한 기업체들의 개별적인 공헌, 민간인의 기술연구개발예산 그리고 특히 군사·대학 및 전기통신부문에 있어서의 공공재정사항을 명시한다.

④ 연구기관설립에 관한 법률(1967년 1월 3일 제67-7호로 제정) 제5조는 이를 폐지한다.

제2편 기술연구개발에 대한 기본방향

제1장 총 칙

제1절 국가정책

제5조 연구기술개발정책의 목적은 지식의 증대, 연구성과에 대한

Ⅲ. 프랑스

가치부여, 과학기술정보의 보급 및 프랑스어로 과학용어화하는 것을 촉진하는데 있다.

제6조 ① 연구에 대한 질적 평가는 직원·팀·프로그램 및 결과에 대하여 동시에 행하는 정기적인 평가절차에 따라서 이를 행한다.

② 이 평가절차는 교차심사(l'examen contradictoire)를 원칙으로 하고 상급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제7조 학교교육, 고등교육 및 공공라디오와 TV 방송은 연구·혁신·창조의 정신을 장려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임무에 참여한다.

제8조 장기연구정책은 모든 지식분야를 망라한 기초연구의 발전을 근거로 한다. 특히 인체 및 사회과학분야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과학과 사회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정부는 구라파에 있어서 상호이익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제국가들에 대한 관계설정을 두고 과학 및 기술의 교환과 협력에 대한 모든 정책을 확정한다.

제10조 ① 연구활동의 계획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은 과학관계 단체 및 사회·경제 단체와 면밀하게 협의한 후에 이를 선정한다.

② 연구기술담당상밀에 고등연구기술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연구관계자 및 단체와 협의한 즉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모든 선정사항 특히 민간인의 연구기술개발예산의 할당 그리고 계획의 준비시에 과학기술의 전망과 분석의 보고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③ 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명령으로 정한다. 연구기술담당상은 이 위원회를 주재하고, 과학기술단체와 연구단체를 대표한다.

제2절 지역정책

제11조 ① 지역당국은 지역별계획 및 시설의 지방분산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첨단기술을 확정하여 개발하며, 지역의 이익을 위한 수개년계획을 결정한다.

② 지역당국은 국가의 연구기술정책의 수립에 참여한다.

③ 지역당국은 특히 새로운 기술 및 과학기술정보의 보급과 개발, 현기술의 개선, 연구범위의 비분류 및 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개발의 조정을 감시한다.

제12조 지역당국은 제11조에 정한 지역의 이익을 위한 수개년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한된 기간에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국가·공사립연구기관·고등교육기관·기술원·기업체들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또한 1개 또는 수개의 지역과 관계가 있는 협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지역간의 연구계획을 착수할 수 있다.

제13조 ① 각지역에는 지역위원회산하에 지역기술개발연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사회적업단, 지역기술연개발자문위원회내의 대표적인 기구 및 그 단체와 기구가 그들의 지원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조건은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 이 자문위원회는 기술연구개발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④ 지역의 이익을 위한 수개년계획안은 자문 및 공공연구예산의 배분을 받기 위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제도상의 방법

제1절 공공연구에 관한 규정

제14조 ① 공공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1. 모든 지식분야에 있어서 개발 및 연구의 진행 ;
2. 연구결과에 대한 가치부여 ;
3. 과학지식의 보급

② 공공연구는 공공기관 특히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및 공기업에서 이를 행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상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기관이거나 행정 또는 과학기술관계의 기관이다.

제15조 ① 과학기술관계의 공공기관은 행정 및 재정의 자율권이 부여된 공권적 법인체이며, 그 기관의 주된 목적은 상공업과 관계가 없다.

② 이 공공기관의 임무는 제14조에 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다.

③ 공공기관은 고등연구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에 명령에 의하여 이를 설립한다. 그 기관에 대한 감독을 행하는 성은 이 명령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16조 ① 과학기술관계의 기관은 이사회에서 이를 관장하며, 이사회는 노동 및 경제계를 대표하는 인사들 중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이 기관은 특히 직원의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평가청구위원회(Ieconseil scientifique et des instances d'évaluation)를 포함시킨다.

③ 감독 및 책임의 직무는 등급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동안만

이를 부여한다.

제17조 과학기술관계공공기관의 직원은 일반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대통령령(1959년 2월 4일 제59-244호로 제정)을 적용하여 정한 특별법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다.

제18조 ① 행정적 성격을 가진 공공기관의 행정·예산·재정·회계제도는 제20조에 규정된 명령에 의하여 정한 적용방법을 유보하고 과학기술관계 공공기관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그 기관에는 감독기관에서 지급하는 운영 및 시설비를 관리하는 연구단위기관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과학기술관계공공기관에 있어서 재정통제방법은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19조 ① 과학기술관계공공기관은 필요한 범위안에서 관여하고, 지부를 설치하고, 단체에 참여하며 외국기관과 체결한 연구계약의 집행으로 인한 소송의 중재를 의뢰할 권한이 있다.

② 과학기술관계공공기관의 이사회는 매년 관계기관의 지부를 포함한 장기회계보고(comptes consolidés)와 각 지부의 회계보고를 받는다.

제20조 과학기술관계공공기관의 조직방법 및 운영규칙은 명령으로 이를 명시한다.

제2절 공익단체

제21조 ① 법인격 및 재정적 자율권이 부여된 공익단체는 연구 및 기술개발활동을 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그 기관들 중의 1개 또는 수개와 일정기간동안 연구 또는 기술개발활동을 하거나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공동이익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1개 또는 수개의 공법인 또는 사법인 중에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공익단체는 이익을 현금화하거나 분배하지 아니하며, 자본없이 설립될 수 있다. 그 구성원의 권리는 유통증서(titres négociables)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 ③ 공법인, 국영기업 및 공공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법인은 모든 사항을 그 법인들이 지정하는 단체의 총회 및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투표로 처리한다.
- ④ 단체의 장은 이사회에서 임명된 자로서 이사회 및 이사장의 명을 받아 단체를 운영한다.
- ⑤ 정부에서는 정부위원을 임명하여 단체에 주재시킨다.
- ⑥ 단체설립의 협정은 공보를 담당하는 행정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협정에서는 구성원의 참여방법과 구성원이 단체의 채무에 책임을 진다는 조건을 정하고, 특히 단체에서 유급직원을 임의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지시한다.
- ⑦ 공익단체는 1967년 6월 22일 제67-483호로 제정된 법률 제 6-1조의 정한 바에 의하여 회계감사원의 통제를 받는다.
- ⑧ 기타 법인을 공익단체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운 법인을 설치하거나 해산할 수 없다.

제3장 연구직원

제1절 연구를 위한 훈련 및 연구를 통한 훈련

제22조 연구를 위한 훈련 및 연구를 통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교육 담당자에게 부여된 책임의 범위안에서 과학분야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사회전체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그 훈련은 교육기관, 행정기관 및 기업체에서와 같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자들에게 이를 개방한다.

② 이러한 훈련은 대학, 기술학교, 대학의 기술연구소, 주요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체의 실험실에서 행하여진다. 그 훈련의 이수를 인정할 수 있는 졸업장 및 학위는 국민교육상이 정한 조건에 따라 이를 수여한다.

제23조 ① 국가의 연구노력의 증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연구를 통한 훈련의 대중화 및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서는 과학 또는 기술관계자격의 기준에 따라서 개별적인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② 그 특별수당을 받는 자는 보통법상의 사회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자들은 모든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간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계약체결의 자격을 가진다.

제2절 연구직원의 임무 및 규약

제24조 연구직업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임무와 일치한다. 이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지식의 개발 ;
2. 기업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분야에서 그 지식의 전달 및 적용 ;
3. 모든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과학기술정보 및 문화를 보급 ;
4. 최초의 훈련 및 계속적인 훈련에 참여 ;
5. 연구행정.

제25조 ① 연구직원에 대한 규약 또는 그들의 직무규칙은 공적연구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과학활동의 자율권, 그들에게 부과된 작업의 평가에 참여 및 항구적인 훈련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Ⅲ. 프랑스

② 연구직원에 대한 규약은 사상의 자유로운 전파를 장려하며, 그들의 직업을 침해함이 없이 동일기구내의 각종 연구직간에 모든 종류의 공공기관간에 상이한 공공연구기관 및 고등교육기관간에 그리고 그러한 기관과 기업체간에 직원들의 이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연구직원에 대한 규약은 연구원이 제2항의 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면서 일정기간동안 공공 또는 민간연구소와 협력하여 특별응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제17조에 정한 연구직원에 대한 일부사항에 있어서 규약은 특히 다음 사항을 허용할 수 있다 :

1. 자격 및 업무에 의거하여 실시될 수 있는 경쟁모집의 원칙에 대한 예외 ;
2. 과학 또는 기술관계기관에서의 능력평가를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공무원의 법규에 의하여 정한 성적평가 및 승진의 절차에 대한 예외 ;
3. 프랑스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들로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 노력할 수 있는 자들의 모집 ;
4. 자격을 증명하는 자들(일등급)의 제1차모집의 원칙에 대한 예외 ;
5. 일반공무원의 법령에 의하여 정한 지위제도에 따른 조정, 및 연구직과 그에 대하여 협력하는 기관사이에 인원과 연구단의 자유로운 순환을 장려하기 위한 인사이동에 관한 규칙의 예외.

제27조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기본방향은 다음 사항을 위하여 기업체의 과학관계직원의 고용조건을 정하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참고한다 :

1. 기업체의 다른 직원들의 조건과 비교할 수 있는 고용 및 직업 활동조건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증하는 것 ;

附錄：主要 國家의 技術關聯法

2. 연구를 통한 훈련 및 연구직근무의 덕택으로 얻은 취업자격을 인정하는 것
3. 기업체 내부 또는 외부 특히 공공연구소에서의 이동근무가능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증하는 것

제28조 노동부 제432-1조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

“기업위원회는 매년 기업체의 연구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29조 연구단에 소속된 공무원이 상공관계공공기관 및 민간기구에서 연구원 또는 기사로서 근무를 완료하는 기간은 퇴직공무원 및 군인연금법에 관한 연금권의 행사조건을 평가하기 위하여 5년까지로 한다.

제30조 ① 국가의 연구 및 기술개발노력은 이 법률에 부속된 보고서에 의한 계획 및 기본방향에 따른다.

② 이 법률은 국가의 법률로서 시행한다.

IV. 日本

1. 高度技術工業集積地域開發促進法

(1983년 5월 16일 제정)

제1조(목적) 이 법률은 공업집적의 정도가 현저하게 높은 지역 및 그 주변지역 이외의 특정지역에 대하여 고도기술에 입각한 공업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당해 특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생활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고도기술에 입각한 공업개발”이란 다음에 계기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추진되는 공업의 발달을 말한다.

1. 입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ㄱ) 또는 (ㄴ)에 해당하는 기업에의 성장을 도모하는 조치

(ㄱ) 기술혁신의 진전에 대응한 고도의 공업기술(이하 “고도기술”이라 한다)을 개발하는 기업

(ㄴ) 고도기술을 제품개발 또는 생산에 이용하는 기업

2. 고도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의 입지촉진을 도모하는 조치

제3조(지역) 이 법률에 의하여 고도기술에 입각한 공업개발을 촉진하는 조치는 다음에 계기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강구하도록 한다.

1. 공업의 집적정도가 현저하게 높은 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서 정령으로 규정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일 것.

2.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으로 보아 일체적으로 고도기술에 입각한 공업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일 것.

3. 그 지역에 고도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제품의 개발 또는 생산에 이용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상당수 있을 것.
4. 공업단지, 공업용수 및 주택단지의 확보가 용이할 것.
5. 그 지역 또는 그 근방에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도시가 있을 것.
6. 그 지역 또는 그 근방에 고도기술에 관계되는 교육 또는 연구를 하는 대학이 있을 것.
7. 고속자동차국도 공항 기타 고속수송에 관계되는 시설의 이용이 용이할 것.

제4조(개발지침) ① 통상산업대신, 건설대신, 농림수산대신 및 국토청장관(이하 “주무대신”이라 한다)은 제3조에 규정한 지역에 대하여 고도기술에 입각한 공업발달 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개발지침에는 다음에 계기한 사항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개발계획지침이 될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1. 고도기술에 입각한 공업개발을 하려는 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고도기술에 입각한 공업개발의 목표설정 에 관한 사항
3. 전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존에 대한 배려사항 기타 고도기술에 입각한 공업개발에 관한 중요사항

③ 주무대신은 경제사정의 변동 기타정세의 추이에 의하여 필요가 생긴 때에는 개발지침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주무대신은 개발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대신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주무대신은 개발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

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개발계획) ① 도도부현은 개발지침에 따라 당해 도도부현내의 지역으로서 제3조 각호에 제기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도기술에 입각한 공업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무대신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개발계획에는 제1호에 제기한 사항과 제2호에서 제6호까지에 제기한 사항의 대강을 정한다.

1. 고도기술에 입각한 공업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
2. 고도기술에 입각한 공업개발의 목표
3. 기업에 대한 자금유통의 원활화 기타 고도기술에 입각한 공업개발에 필요한 업무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행하는 자 및 당해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다음에 제기한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가) 공업용지
 - (나) 공업용수도
 - (다) 주택 및 주택용지
 - (라) 도 로
5. 전호 (가)에서 (라)까지에 제기한 시설정비에 필요한 토지확보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농용지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고도기술에 입각한 공업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 도도부현은 개발계획을 작성하려고 할 때에는 관계 시정촌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무대신은 제1항의 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신청에 관계되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자치대신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주무대신은 개발계획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해야 한다.

1. 그 개발계획에 관계되는 지역이 제3조 각호에 제기한 요건에

해당하고 또 개발지침에 적합한 것일 것.

2. 제2항제2호에서 제6호까지에 계기한 사항인 경우에는 개발지침에 적합한 것일 것.

3. 그 개발계획에 관계된 공업개발이 당해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경제적 효과를 미치는 것일 것.

4. 기타 개발계획에 비추어 적절한 것일 것.

⑥ 주무대신은 개발계획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려고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도도부현은 개발계획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6조(개발계획의 변경) ① 도도부현은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5조제3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자(민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가 행하는 동항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이고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개발계획에 관계되는 기금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조세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의 특례가 적용된다.

제8조(고정자산세의 불균일과세에 따른 조치) 지방세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공단체가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개발계획에 관계된 지역에서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개발 혹은 생산에 관련된 실험연구 또는 고도기술에 관한 개량·고안 혹은 발명에 관련된 실험연구용에 제공되는 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한 것에 대하여 당해 설비중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타의 상각자산

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고정자산세에 관계된 불균일한 과세를 한 경우에 그 조치가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될 때에는 지방교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각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은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당해 각년도분의 감수액중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당해 각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으로 될 액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국가의 원조) 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개발계획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정비에 노력하고 당해 개발계획의 실시상 필요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 지도 기타의 원조를 실시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공공단체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개발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 하기 위하여 기채하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금자성 및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상황이 허용하는 한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농지법의 허가)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개발계획에 관계된 지역내의 토지를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하는 시설에 제공하기 위하여 농지법 기타의 법률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신청받은 때에는 당해 개발계획에 정한 고도기술에 입각한 공업개발이 촉진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부 칙 <생 략>

2. 新技術開發事業團法

(1961년 5월 6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신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행하는 오에, 신기술의 창조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기초적 연구를 행하고 이러한 개발 및 기초적 연구의 성과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관) ① 이 법률에서 “신기술”이라 함은 국민경제상 중요한 과학기술(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시험연구의 성과로서 기업화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개발”이라 함은 과학기술에 관한 시험연구의 성과를 기업적인 규모로 실시함으로써 기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제조”라 함은 과학기술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함으로써 그 성과로서의 신기술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신기술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고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 사업단은 주된 사무소를 동경부에 둔다.

② 사업단은 필요한 지역에 從된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 ① 사업단의 자본금은 3억엔과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자가 있는 것으로 하는 금액과의 합계액으로 하고 정부가 그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정부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사업에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③ 사업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자가 있는 때에는 그 출자액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정관) 사업단은 정관으로써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및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회의에 관한 사항
6. 개발심의회 의 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된다.

제7조(등기) ① 사업단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8조(명칭의 사용제한) 사업단이 아닌 자는 신기술개발사업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44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및 제50조(법인의 주소)의 규정은 이를 사업단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10조(임원) 사업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이
사4인 이내 및 감사1인을 둔다.

제11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① 이사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사업단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보좌하며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며,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직
무를 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 및 전무이사를 보
좌하고 사업단의 의무를 총괄하며, 이사장 및 전무이사의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이사장 및 전무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④ 감사는 사업단의 업무를 감사한다.

⑤ 감사는 감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장 또는 내각총리대신(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청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 및 감사는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② 전무이사 및 이사는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 이사장이 임
명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4년
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재임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결격조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무대신, 국회의원,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
2.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비상근자를 제외한다)
3. 물품의 제조자, 판매자 또는 공사의 도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사업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이러한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임원(명칭이 어떠한 것인가는 묻지 아니하고 이와 동등이상의 직권 또는 지배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4. 제3호에 제기한 사업자의 단체임원(명칭이 어떠한 것인가는 묻지 아니하고, 이와 동등이상의 직권 또는 지배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① 내각총리대신 또는 이사장은 각각 그 임명에 관계되는 임원이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은 이를 해임하여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 또는 이사장은 각각 그 임명에 관계되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또는 그 임원이 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임원은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때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계되는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 되거나 스스로 영리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대표권의 제한) 사업단과 이사장 또는 전무이사와의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러한 자는 대표권을 가지지 못

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사업단을 대표한다.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 및 전무이사는 이사 및 이사단의 직원중에서 사업단의 종된 사무소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9조(직원의 임명) 사업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20조(비밀보지의무) 임원, 직원 또는 이러한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임원 및 직원이 공무원이 되는 성질)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별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본다.

제3장 개발심의회

제22조(설치) 사업단에 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권능)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사장은 미리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때
 2. 개발을 실시할 신기술을 선정하는 때
 3. 신기술의 개발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그 성부를 인정한 때
 4. 신기술의 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기초적 연구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때
 5.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총괄책임자를 지정하는 때
- ② 심의회는 제1항 각호에 제기한 경우외에, 이사장의 자문에 따라 신기술의 개발 및 신기술의 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기초적 연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24조(조직) ① 심의회는 위원 15인이내로써 조직한다.

② 심의회에 회장 1인을 두고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회장은 회무를 총괄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중에서 회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25조(임원의 임명) 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2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제27조(준용규정) 제15조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은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업무

제28조(업무의 범위) 사업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기업화가 현저하게 곤란한 신기술에 대하여 기업 등에 위탁하여 개발을 실시하는 것
2. 신기술의 창제에 도움이 되는 초기적 단계의 기술에 관한 지식을 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적 연구(이하 단지 "기초적 연구"라 한다)를 행하는 것
3. 상기 제2호에 계기한 업무에 관계되는 신기술의 개발 및 기초적 연구의 성과를 보급하는 것
4. 신기술의 개발에 대하여 기업 등에 알선하는 것
5. 전기 각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제29조(업무방침서) ① 사업단은 업무를 개시함에 있어, 업무방침

서를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방침서에 기재할 사항은 총리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개발의 위탁 등에 관한 인가) ① 사업단은 기업 등에의 위탁에 의하여 신기술의 개발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을 실시하고자 하는 신기술 및 개발을 위탁하고자 하는 기업 등의 선정 및 당해 개발규모의 결정에 대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사업단은 신기술에 대한 개발의 성과를 기업에 실시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성과를 실시하게 하는 기업에 대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제30조의2(기초적 연구의 실시) ① 사업단은 기초적 연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주제를 정하고, 당해 주제별로 그 실시에 필요한 기간을 설정함과 동시에 필요한 연구자를 고용하여 이러한 연구자에게 당해 기초적 연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초적 연구를 지휘하게 하는 총괄책임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당해 기초적 연구에 종사하는 다른 연구자의 고용에 관하여는 당해 총괄책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은 기초적 연구를 하기 위한 시설을 취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5장 재무 및 회계

제31조(사업연도) 사업단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31일에 종료한다.

제32조(사업계획, 자금계획 및 수지예산) 사업단은 매사업연도개시 전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자금계획 및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제33조(결산) 사업단은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다음 사업연도의 5월 31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제34조(재무제표) ① 사업단은 매사업연도에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이하 이 항에서 “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결산의 완결후 2월이내에 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각총리대신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에 수지예산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첨부하고 재무제표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의 의견을 붙여야 한다.

제35조(이익 및 손실의 처리) ① 사업단은 매사업연도에 경영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손실을 보충하고도 그래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은 매사업연도에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감액하여 정리하고도 그래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그 부족액은 이를 이월결손금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36조(차입금) ① 사업단은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 단기차입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차입금은 당해 사업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상환할 수 없는 금액에 한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 이를 차환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환한 단기차입금은 1년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7조(여유자금의 운용) 사업단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채 기타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2. 은행에의 예금 또는 우편저금
3. 신탁업무를 행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제38조(재산에 대한 처분 등의 제한) 사업단은 총리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사업단은 그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제40조(총리부령에의 위임) 이 법률 및 이 법률에 의한 명령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사업단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리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감 독

제41조(감독) ① 사업단은 내각총리대신이 감독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2조(보고의 징수) 내각총리대신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출입검사) ① 내각총리대신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원에게 사업단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이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잡 칙

제44조~제45조 <생략>

제8장 벌 칙

제47조~제50조 <생략>

부 칙 <생략>

3. 基盤技術研究圓滑化法

(1985년 6월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민간에서 행하여지는 기반기술에 관한 시험 연구를 원활히 하고 민간의 기반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국제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기반시설”란 광업, 공업, 전기통신업무 및 방송업(유선방송업을 포함한다)의 기술 기타 전기통신에 관련된 전파의 이용기술중 통상산업성 또는 우정성의 소관업무에 관련되고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의 기반의 강화에 상당한 정도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국가재산의 이용 등

제3조(국유시설의 사용) 정부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반 기술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는 자에게 국유시험연구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민간의 기반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 대가를 시가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제4조(국제공동연구에 관련된 특허발명 등의 실시) 정부는 외국정부, 공공적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민간의 기반기술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행한 기반기술에 관한 시험연구의 성과에 관련된 국유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중 정령에서 정하는 것

에 대하여, 이러한 자 기타의 정령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의 허락을 행하는 때에는 그 허락을 무상으로 하거나 그 허락의 대가를 시가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제3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민간에서 행하여지는 기반기술에 관한 시험연구를 원활히 하고 민간의 기반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기반기술연구촉진센타

제1절 총 칙

제6조(목적) 기반기술연구촉진센타는 민간에서 행하여진 기반기술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법인격) 기반기술연구촉진센타(이하 “센타”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8조(수) 센타는 1개소를 설립한다.

제9조(자본금) ① 센타의 자본금은 그 설립에 즈음하여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금액을 합계액으로 한다.

② 센타는 필요한 경우 통상산업부대신 및 우정대신의 인가를 받아 그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타가 그 자본금을 증가하는 때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센타에 출자할 수 있다.

제10조(지분반환의 금지 등) ① 센타는 출자자에 대하여 그 지분을 반환할 수 없다. ② 센타는 출자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을 수 없다.

제11조(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출자자의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에 대하여 제45조(출자자원부) 제2항 각호에 계기한 사항을 출자자

附錄：主要 國家의 技術關聯法

원부에 기재한 후가 아니라면 센타 기타의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2조(명칭) ① 센타는 그 명칭중에 기반기술연구센타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센타가 아닌 자는 그 명칭중에 기반기술연구센타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등기) ① 센타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라면 이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4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44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및 제50조(법인의 주소)의 규정은 센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절 설립

제15조(발기인) ① 센타를 설립함에는 기반기술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1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될 것을 요한다.

② 발기인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정부 이외의 자에 대하여 센타에 대한 출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통상산업성령 및 우정성령에서 정한다.

제16조(설립의 인가 등) 발기인은 제15조 제2항의 모집이 끝난 때에는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통상산업대신 및 우정대신에게 제출하고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 ① 통상산업대신 및 우정대신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의 운영이 건전하게 행하여지며 민간에서 행하여지는 기반기술에 관한 시험연구의 촉진에 기여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의 절차,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때
 2.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되지 아니한 때
 - ② 통상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기인이 추천한 자중에서 센타의 회장, 이사장 또는 감사가 될 자를 지명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회장, 이사장 또는 감사가 될 자는 센타의 설립시에 각각 제23조(역원의 임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 이사장 또는 감사에 임명된 것으로 한다.
- 제18조(사무의 인계) ①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될 자가 지명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회장이 될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이 될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인계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정부 및 출자의 모집에 응한 정부 이외의 자에 대하여 출연금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9조(설립의 등기) ① 회장이 될 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납입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센타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설립한다.
- 제20조(정관기제사항) ① 센타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주소지
 4. 자본금, 출자 및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附錄：主要 國家의 技術關聯法

6. 평의회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② 센타의 정관변경은 통상산업대신 및 우정대신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임원) 센타에 임원으로서는 회장 1인,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이사 4인 이내 및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제22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① 회장은 센타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센타를 대표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센타의 업무를 처리하며 회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 회장이 결원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③ 부이사장은 센타를 대표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장 및 이사장을 보좌하여 센타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장 및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 회장 및 이사장이 결원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장, 이사장 및 부이사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 회장,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결원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⑤ 감사는 센타의 업무를 감사한다.

⑥ 감사는 감사결과에 기초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장 또는 주무대신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임명) ① 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통상산업대신이 임명한다.

② 부이사장 및 이사는 통상산업대신의 인가를 받아 회장이 임

명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재임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결격조항)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비상근 인 자를 제외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6조(임원의 해임) ① 통상산업대신 또는 회장은 각각 그 임명에 관련된 임원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기에 이른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② 통상산업대신 또는 회장은 각각 그 임명에 관계된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임원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수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③ 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장 또는 이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산업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대리권의 제한) 센터와 회장,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은 대표권을 갖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센터를 대표한다.

제28조(평의원회) ① 센터에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는 평의원 20인 이내로 조직한다.

③ 평의원은 기반기술에 대하여 학식·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④ 회장은 평의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임명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附錄：主要 國家의 技術關聯法

제29조(직원의 임명) 센타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30조(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질) 센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의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본다.

제3절 업무

제31조(업무) ① 센타는 제6조(목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간에서 행하여진 기반기술에 관한 시험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대부를 행한다.
2. 정부 이외의 자에 대하여 기반기술에 관한 시험연구를 국가의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알선하는 것
3. 정부 이외의 자의 위탁을 받아 기반기술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는 것
4. 해외로부터 기반기술에 관한 연구자를 초청하는 것
5. 기반기술에 관한 정부를 수집·정리 및 제공하는 것
6. 기반기술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계기한 것 이외에 제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행하는 것

② 센타는 제1항 제8호에 계기한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업무방법서) ① 센타는 업무의 개시전에 업무방법서를 작성하고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업무방법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주무성령에서 정한다.

제33조(센타의 자주성 존중 등) 정부는 센타의 사업에 관하여 그 자주성을 존중함과 아울러 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이 도모되도록 필요한 배려를 한다.

제4절 재무 및 회계

제34조(사업연도) 센타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5조(예산 등의 인가) 센타는 매사업연도의 예산,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전에 통상산업대신 및 우정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제36조(재무제표) ① 센타는 매사업연도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이하 '재무제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후 3월 이내에 통상산업대신 또는 우정대신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통상산업대신 및 우정대신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이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예산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출자자에 대한 서류의 첨부) 센타는 제35조(예산 등의 인가) 또는 제3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당해 인가 또는 승인에 관련된 예산,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서류 또는 재무제표를 정부 이외의 출자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이익 및 손실의 처리) ① 센타는 매사업연도의 손익계산에 있어서 이익을 발생시킨 때에는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손실을 상계하고, 그 잔여가 있는 때에는 그 잔여액에 정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附錄：主要 國家의 技術關聯法

② 센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을 행한 후 그 잔여가 있는 때에는 통상산업대신 및 우정대신의 인가를 받아 그 잔여액을 출자자의 출자에 대하여 각각의 출자액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

③ 센타는 매사업연도의 손익계산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을 감액하여 정리하고 그 부족이 있는 때에는 그 부족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39조(차입금) 센타는 자금을 차입(차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산업대신 및 우정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여유자금의 운용) 센타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채 기타 통상산업대신 및 우정대신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보유
2. 자금운용부예의 예탁
3. 은행 기타 통상산업대신 및 우정대신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의 예금 또는 우편예금
4.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제41조(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센타는 역원 및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산업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제42조(통상산업성령 및 우정성령에의 위임)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센타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성령 및 우정성령에서 정한다.

제43조(감독) ① 센타는 주무대신이 감독한다.

② 주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4조(보고 및 검사) ① 주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타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그 직원에게 센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 재산상황 또는 장부나 서류 또는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절 보 칙

제45조 내지 제47조 <생 략>

제4장 잡 칙

제48조 <생 략>

제5장 벌 칙

제49조 내지 제51조 <생 략>

부 칙 <생 략>

4. 中小企技術開發促進臨時措置法

(1985년 8월 제정)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최근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 및 수요구조의 현저한 변화에 대처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향상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진흥과 우리 나라의 산업기술의 조화있는 발달을 도모하고, 또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중소기업자”란 다음에 계기한 자를 말한다.

1. 자본액 또는 출자총액이 1억엔이하인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백인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서, 공업, 광업, 운송업 기타 업종(2호에서 계기한 업종 및 제3호의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2. 자본액 또는 출자총액이 천만엔이하인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50인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서, 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제3호의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및 자본액 또는 출자총액이 3천만엔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백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도매업(제3호의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3. 자본액 또는 출자총액이 그 업종마다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그 업종마다 법령에

서 정하는 수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그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4. 기업조합

5. 협업조합

6.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기타 특별법률에 의해 설립한 조합 및 그 연합회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자.

② 이 법률에서 “조합 등” 이란 전항 제6호에 계기한 자 및 민법(明治 29년 法律제89호)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중소기업자를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함)이라고 하는 자(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를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기술개발이란 다음에 계기한 행위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제1항 6호에 계기한 자를 제외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2항, 제6조 제1호 및 제11조에서 같다)가 기술(생산, 판매 또는 근로의 제공기술로서, 기술혁신의 발전에 부응하고 또한 현저한 신규성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당해 중소기업자가 당해 연구개발성과의 이용을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조합 등이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당해 조합 등 또는 그 구성원이 당해 연구개발성과의 이용을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중소기업기술개발지침) ① 통상산업대신은 기술개발에 관한 지침(이하 기술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기술개발지침에는 다음에 계기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의 대상이 될 기술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자 및 조합 등이 채택할 기술개발의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술개발에 있어 배려하여야 할 중요사항
- ③ 통상산업대신은 기술혁신의 진전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에 의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기술개발지침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④ 통상산업대신은 기술개발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과 협의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근대화심의회 의견 청취하여야 한다.
- ⑤ 통상산업대신은 기술개발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개발계획의 인정) ① 중소기업자 및 조합 등은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고자 할 때는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그 주소를 관할하는 都道府縣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계획에는 통상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기재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사업의 목표
 2. 기술개발의 대상으로 하는 기술의 내용, 기술개발의 실시방법,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설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내용
 3. 기술개발사업의 실시시기
 4.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액 및 그 조달방법
 5. 조합 등이 기술개발사업에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그 구성원에 대해 부담금의 부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의 기준
- ③ 都道府縣知事は 제1항의 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신청에 관련된 동항의 계획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라고 인정하

는 때는 그 인정을 하여야 한다.

1. 전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계기한 사항이 기술개발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 때
2. 전항 제4호에 계기한 사항이 기술개발사업을 확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인 때
3. 전항 5호에 규정한 부담금의 부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과 기준이 적절한 것인 때

제5조(기술개발계획의 변경 등)① 제4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자 및 조합 등은 당해 인정에 관련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都道府縣知事の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도 동일하다.

② 都道府縣知事は 제4조제1항의 인정에 관련된 동항의 계획(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이 있는 때는 그 변경후의 계획. 이하 “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이 동조 제3항 각호에 계기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동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자 또는 조합 등이 기술개발계획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실시를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는 기술개발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정에 준용한다.

제6조(자금의 확보) 국가는 다음 계기한 자에 의한 기술개발계획(제2호에 계기한 자는 그 자를 구성으로 하는 동호의 조합 등에 관련된 기술개발계획)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이하 “기술개발사업자금”이라 한다)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자 및 조합 등
2. 전항에 규정한 조합 등(이하 “인정조합 등”)의 구성원인 중소기업자

제7조(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특례) ①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는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1963년 법률 제101호) 제5조 제1항 각호에 제기한 사업 외에, 제6조 각호에 제기한 자(이하 “인정중소기업자 등”이라 한다) 가운데 자본액이 1억엔을 초과하는 주식회사가 기술개발계획(인정조합 등의 구성원인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인정조합 등에 관계되는 기술개발계획, 이하 같다)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및 당해 인수에 관련된 주식, 전환사채(그 전환에 의해 발행된 주식을 포함한다)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보유를 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및 당해 인수에 관련된 주식, 전환사채(그 전환에 의해 발행된 주식을 포함한다)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보유는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으로 본다.

제8조(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① 중소기업신용보험법(1950년 법률 제264호) 제3조의7제1항에 규정하는 신사업개척보험(이하 “신사업개척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에서 기술개발관계보증(동항에 규정하는 채무의 보증으로서 기술개발사업자금에 관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동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중 “1억5천만엔”은 “2억엔(중소기업기술개발촉진임시조치법 제6조에 규정하는 기술개발사업자금(이하 “기술개발사업자금”이라 한다)이외의 자금에 관련된 채무의 보증에 관련된 보험관계에 관하여는 1억5천만엔”으로, “3억엔”은 “4억엔(기술개발사업자금이외의 자금에 관련된 채무의 보증에 관련된 보험관계에 관하여는

3억엔)”으로, 동조 제2항중 “1억5천만엔”은 “2억엔(기술개발사업자금이외의 자금에 관련된 채무의 보증에 관련된 보험관계에 관하여는 1억5천만엔)”으로 한다.

② 신용보증협회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하나의 무담보보증(기술개발관계보증에서 그 보증에 대하여 담보(보증인의 보증을 제외한다)를 제공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하나의 무담보보증에 관련된 무담보보증보험관계(신사업개척보험의 보험관계에서 무담보보증에 관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험료의 액은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금액에 年 백분의 2이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중소기업자에 대한 무담보보증보험관계의 보험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하나의 무담보보증에 관련된 무담보보증보험관계의 보험료의 액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9조(과세의 특례) ① 인정조합 등이 기술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부과의 기준에 기초하여 그 구성원인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당해 기술개발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기술개발사업에 관련된 시험연구(이하 “기술개발계획에 관련된 시험연구”라 한다)에 필요한 기계장치(공구, 기구 및 비품을 포함한다)를 취득하거나 또는 제작하기 위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당해 중소기업자가 당해 부담금을 납부한 때는 조세특례조치법(1958년 법률 제2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담금에 대해 특별상각을 행할 수 있다.

② 인정조합 등이 기술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부과의 기준에 기초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기술개발계획에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그 구성원이 당해 부담금을 납부한 때는 조세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해 부담금에 관하여 시험연구비의 액이 증가한 경우 등의 과세특례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인정조합 등이 기술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부과 기준에 기초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부과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기술개발계획에 관련된 시험연구의 용도로 직접 이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제작한 때는 조세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 조치를 강구한다.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한 조치) 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및 인재의 양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② 국가 및 도도부현은 인정중소기업자등에 대하여 기술개발계획에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의 정확한 실시에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행한다.

제11조(보고의 징수) 도도부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자 및 조합 등에 대하여 기술개발계획에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의 실시상황에 따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벌칙)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십만엔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행한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동항의 형벌을 과한다.

부 칙 <생략>

연구보고 95-10 技術라운드(TR)의 展開와 法的 對應

1995년 12월 25일 印刷

1995년 12월 30일 發行

發行人 白 南 辰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 한국컴퓨터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값 5,400 원

